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연구·조사·변론활동 등을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만들어졌다.

민변은 그동안 비민주적 법률과 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을 변호해 왔다.

최근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나라 법률가단체들과 연대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보호제도를 이용하는 등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9-8 현대오피스텔 404호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1993
·
창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단상 ▶ '유서대필' 유감/김창국

한중 수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리영희

특집 ▶ 국제시대의 인권운동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인권상황/천정배

제네바에 펼쳐진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신혜수

한국·일본의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토론회 보고서/박찬운

국제인권활동 견문 편년록/박원순

세계의 인권단체 ▶ 국제사면위원회/Clare McVey

판례평석 ▶ 대우조선 파업사건/문재인

'노가바' 저작권법 위반사건/박성호

논문 ▶ 비합법적인 초국가적 법률집행/James M. West

PKO법 제정의 경과와 내용 및 문제점/山本眞一

선상폭력과 선원인권/하영석

정신보건법과 인권/유선영

-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 유헌석 변호사의 법조회고
- 우리말로 바로잡아본 헌법
- 서평
-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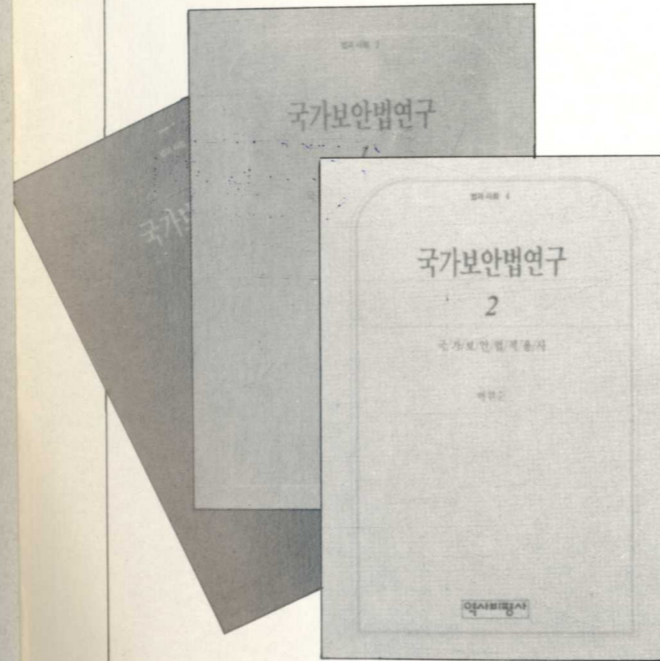
역사비평사

‘막걸리 국가보안법’을 아십니까?

법과 사회

국가보안법연구 1·2·3

박원순



8년간 인권변호사로서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저자가 손과 발과
뜨거운 가슴으로 쓴
국가보안법의 산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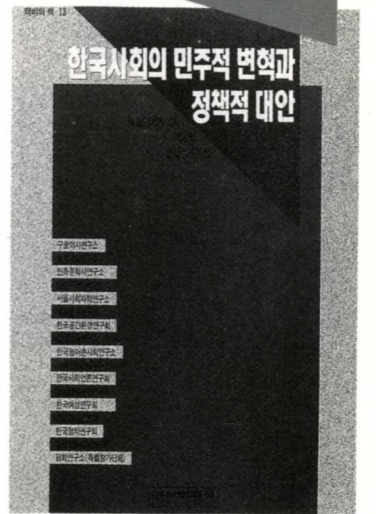
- ① 국가보안법 변천사
1권, 320쪽, 5,300원
- ② 국가보안법 적용사
2권, 605쪽, 9,800원
- ③ 국가보안법 폐지론
3권, 259쪽, 5,300원

역사비평사 서울 중구 필동 2가 120-1
전화 (02) 279-0157 ~ 0158

역비의 책
13

학술단체협의회 편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진보적 학술진영의 묶은
과연 무엇인가!!



470쪽, 9,500원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영구보관

지금 변화하는 한국사회는 해명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권력의 ‘혁명’ 적 변화가 이룩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현시기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 주로 정책적인 성격을 띤 ▲소득분배 ▲독점 ▲재벌 ▲토지 ▲주택 ▲언론 ▲군축 ▲여성노동 ▲생산 민주주의 ▲교통 ▲사회복지 ▲교육 ▲환경문제 등 12가지 주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 그것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울 중구 필동 2가 120-1
전화 (02) 279-0157 ~ 0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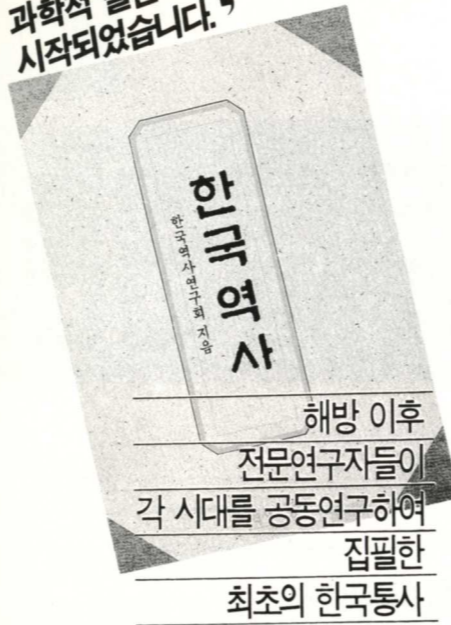
역사비평사

◀ 단상 ▶		
‘유서대필’ 유감 / 김창국		10
한·중 수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리영희		15
◀ 특집 ▶	국제시대의 인권운동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인권상황 / 천정배 <small>- 유엔인권이사회 제 45 차 회의 참관기</small>		24
제네바에 펼쳐진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 / 신혜수 <small>-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의 강제 종군위안부문제 대책활동</small>		53
한국·일본의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토론회 보고서 / 박찬운		70
국제인권활동 건문 편편록 / 박원순		81
◀ 세계의 인권단체 ▶	국제사면위원회 / Clare McVey	101
◀ 판례평석 ▶		
대우조선 파업사건 / 문계인		123
‘노가바’ 저작권법 위반사건 / 박성호		143
◀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 ▶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	10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론**

◀ 논문 ▶		
비합법적인 초국가적 법률집행 / James M. West		172
PKO법 제정의 경과와 내용 및 문제점 / 山本眞一		186
선상폭력과 선원인권 / 하영석		204
정신보건법과 인권 / 유선영		220
◀ 피고인석에서 본 재판 ▶		
‘기독교와 민족통일의 전망’ 강연으로 구속되고 나서 / 박순경		159
◀ 법률산책 ▶	법률가를 위한 문학작품 / 안경환	241
◀ 서평 ▶	법률체계의 민주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 / 한상범	272
◀ 우리 말 바로 쓰기 ▶		
우리 말로 바로잡아 본 헌법 / 이오덕		257
◀ 자료 ▶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록	287
	김보은 사건 감정서 / 김광일	327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 통계 / 민변 편집부	338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과학적 실천적 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전문연구자들이
각 시대를 공동연구하여
집필한
최초의 한국통사

“
민중은 역사를 만들었고
한국역사연구회는
『한국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역사』는
50여 명의 필자,
30여 명의 교열위원이 모여
수차례의 토론과 조정,
수정과 윤문 과정을 거쳐 만든,
한국역사연구회 활동 4여 년의
성과물입니다.
”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한국의 역사

486 쪽 / 7,800 원

역사비평사

1993

창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사비평사

책을 내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활동한 지도 벌써 5년째로 접어든다. 그동안 나라 안팎으로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와 우리 사회의 모순구조들,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우리 회원들은 법정의 안과 밖에서 변론과 토론회, 성명들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밝혀왔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좀더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 기대해왔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법문화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요인의 하나가 서로 다른 생각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토론문화의 부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든 사람들이 관계된 법과 인권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토론에 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에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러한 자세도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다.

지금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비민주적인 법문화를 반성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나가야 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 우리는 법률가를 포함하여 법과 인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과제들에 성실히 대응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믿고 이 책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앞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로 발간될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법과 인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하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격려, 비판을 아울러 기대한다.

우리가 이 책을 만드는 뜻에 동감하여 좋은 글을 써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집필과 번역, 그밖의 준비작업에 노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민변의 목적과 활동을 깊이 이해하고 이 책을 내기로 해준 역사비평사 여러분에게도 우리 회원들의 고마움을 전한다.

199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단상

'유서대필' 유감

김창국

변호사로서의 자부심과 비애를 함께 맞본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앙금처럼 가라앉았던 분노가 다시 피어난다.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아니면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나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유서대필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는 '강기훈사건'에 매달렸던 1년 동안은 내게는 용기와 희망과 사명감에 불타던 한 해이기도 했고, 반면 실망과 분노 그리고 좌절의 참담함을 맛보아야 했던 1년간이기도 했다.

1,059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김기설군이 남긴 20여 종의 필적 자료를 확인하면서 갖게 된 '무죄'라는 확신은, 계속되는 강행군에도 피로를 모르게 하였으며, 사건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반드시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들떠 "강기훈에게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변호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큰소리치기도 하였다.

강기훈의 유서대필 혐의를 굳게 믿고 있던 대부분의 법조출입자들과 검찰관을 방불케 하는 공판진행으로 변호인들을 화나게 하던 재판장도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혐의사실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판이 밤늦게 끝나는 날이면 박연철·이석태 회원과 함께 소주잔을 앞에 놓고 다음 공판준비를 의논하면서도 진실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

았건만, 확신은 없지만 유죄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재판장의 판결이유 설명에는(변호사 10년에 판결선고공판에 입회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작 나를 분노케 한 것은, 확신이 없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였던 제1심 재판부와는 달리 너무나도 확신에 찬, 그래서 고민 같은 것은 아예 내팽개쳐버린 소신있는(?) 항소심 재판부였다.

'혹시나'로 시작해서 '역시나'로 끝난 재판부의 판결

제1라운드에서 패배를 맞본 변호인들이 제2라운드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며 항소심 변론준비를 하고 있을 때 터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등에 대한 감정비리사건은 변호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으니, 강기훈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가 김형영의 영터리 필적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035만 원의 뇌물수수에 관한 자백을 받아 김형영을 구속까지 하면서도 허위감정의 혐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그가 행한 많은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크게 금이 가게 한 사건이었고 언론도 강기훈사건의 항소심과 관련지어 희망적인 전망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변호인들은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의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김형영의 감정에서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그가 1980년 허위감정죄로 1심에서 실형선고까지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동료 이인환의 도움으로 무죄가 된 사건의 감정자료를 입수하여 복사카메라를 이용한 인영감정의 새로운 기법을 동원, 김형영의 당시 감정이 누가 보아도 허위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2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증인으로 출석한 수감 찬 김형영에게 위 자료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려 하였으나 재판장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태도는 너무나 확고해보였다. 유죄의 심증을 내비치는 재판진행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변호인들은 힘이 빠지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는지 '혹시나'는 '역시나'였으며 며칠 후에 받아본 다분히 감정적인 판결내용에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베낀 듯한 대법원 판결은 깊은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유서대필'이라는 사법사상 유례없는 작품 탄생되다

돌이켜보면, 1991년 4월 26일에 발생한 강경대군치사사건은 그동안 지리멸렬상태이던 재야세력들을 다시 결집케 하는 계기가 되어 곧바로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규탄과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라는 긴 이름을 가진 기구가 생겨나고 정부규탄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등이 분신한 데 이어 1991년 5월 8일 오전 8시 7분경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김기설이 또 분신을 하는데 그가 남긴 유서 2장이 엄청난 파문을 가져오게 된다.

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 박종철군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전전긍긍하던 정부당국은, 친야인사라고 여겨지던 어느 대학총장의 즉흥적이고도 무책임한 얘기 즉 "분신자살에 배후가 있는 듯하다"는 발언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 용기백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분신배후 수사'라는 악역을 검찰이 떠맡고 나섰고, "분신의 배후에 무엇인가 있다"는 선입견과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검찰이 김기설의 필적확인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사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서대필'이라는 창작물을 내놓게 된다.

검찰의 실수란 첫째로, 누가 보아도 유서의 필적과는 같다고 하기 어려운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그의 누나에게 선물한 책 표지의 글씨 "누님 우리 혜정이 잘 키워주세요. -삼촌 기설-"이라고 쓴 것이 김기설의 중학교 3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필적이며 미성년자의 필적은 그 특징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유서는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라고 속단한 것이고, 둘째로는 전민련이 검찰에 제출한 업무일지에 세 사람의 필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서와 업무일지는 동일 필적"이라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은 것을 말한다.

업무일지에 3인의 필적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검찰이 그 필적 주인공의 한 사람인 임무영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하여 현상수배 끝에 검거하였다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그를 집시법 위반죄로 구속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소위 '재야운동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그릇된 선입견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서대필'이라는 비상식적인 작

품을 낳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변론요지서의 첫머리에 "유서는 누가 쓰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무엇인가 얘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유서를 남깁니다. 그러나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의 유언장을 대필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자살자의 유서를 대필하여 준다는 얘기를 우리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유서를 쓸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남에게 유서를 대필하여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는 이미 자살을 포기한 사람이며.....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변론의 끝부분에, 프랑스 국민 대부분이 드레퓌스(Dreyfus)의 유죄를 믿고 있을 때 그의 무고함을 확신한 끌레망소가 외쳤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기훈의 승리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승리"라고 썼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레퓌스사건의 교훈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프랑스군 장교 에스페라지가 독일에 프랑스군의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작성한 '명세서'를 정보당국이 드레퓌스의 필적으로 단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었고, 필적감정을 의뢰받은 베르띠옹은 "명세서"를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적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면 두 필적은 같은 사람에 의해 씌어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정함으로써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는 1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강기훈이 재야운동권 인사가 아니었다면, 재야운동권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편견이 없었다면,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상상키 어려운 '유서대필'이라는 작품이 가능하였을까. 그리고 한국의 베르띠옹 선생 김형영의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엉터리 감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 또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찬 소신있는 유죄판결이 가능하였을까. 나는 자신있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강기훈사건을 통하여 보다 자세히 알게 된 내가 본 재야운동권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영악스럽지도 못했으며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사명감에 투철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이 사건의 주인공인 강기훈은 소위 '재야운동권'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래서 두 시간 반에 걸친 긴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혹시 전민련을 포함한 재야운동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과 편견이 진실을 보는 당신의 눈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드레퓔스에 대한 유죄판결이 허위였음을 시인한 프랑스의 양심은 그의 장교 계급장을 박탈한 지 12년 만에 “비견할 데 없이 가혹한 희생을 치른 군인에게 적합한 보상으로”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우리의 불쌍한 강기훈에게는 과연 그러한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인가.

“김형영이 양심선언을 한다면” 하고 부질없는 생각도 해본다.

이제 강기훈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그러나 역사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역사적 판단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의 승리를 위해서.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책임감을 느끼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변호인의 판결 즉 ‘판결의 판결’을 쓸 것이다.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

한·중 수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리영희

한·중 수교가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갖는 의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1992년 8월의 국가관계 수립(수교)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의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사태변화이다. 그에 앞서는 같은 무게의 정세변화는 물론 1년 전의 소련(러시아)과의 수교이다.

한국정부는 이른바 ‘북방외교’의 기본목표를 대체로 달성한 셈이다 중국정부(당)로서는 역시 이른바 ‘전방위외교(全方位外交)’의 구도를 일단 마무리지은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정세를 특징지어온 “심지에 불이 붙은 동양의 화약고”인 한(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심지의 불이 거의 꺼진 상태가 되었다. 아직도 한반도라는 화약고에 연결된 심지의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국가로 북미합중국과 일본이 있다. 두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응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 정세변화는 동북아시아 또는 그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대각선 교차점인 조선반도에서 누가 전쟁을 반대하고 누가 평화를 반대하는가하는 50년간의 해묵은 논쟁의 답변이 되어준다. ‘전쟁애호자’라고 자본주의의 비난을 받았던 과거의 또는 현재의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들은 지역의 오랜 적대관계를 해소하였다. 스스로 ‘평화애호자’를 자칭해온 두 자본주의국가는 이 지역

에 진정한 그리고 확고하고 영속적인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는 사태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남한 국교수립 결정 뒤에 남은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와 이 지역정세의, 말하자면 1992년 가을 현재의 총론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수교당사자인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행동동기(목적)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중국의 의도는 한반도(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지역문제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남한과의 정상관계 수립은, 여태까지 북한과의 연계관계에서만 발언 또는 행동할 수 있었던 중국의 지역정치, 군사적 행동권을 전면화한 셈이 된다. 즉 한반도와 지역문제에서 북한과 함께 묶여 있던 한 손을 풀어젓힘으로써 두 팔, 두 손을 다 쓰게 된 씨름꾼에 비유된다.

같은 '자기구속' 상태였던 '북방의 거인' 러시아가 1년 전에 두 팔을 자유로이 쓰게 된 정세변화는 중국으로서는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니었다. 두 팔을 쓰는 러시아와 동격으로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의 불만이나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남한과의 국교수립이 불가피하였다.

셋째는 중국의 실력자 등소평(鄧小平)의 국제정치철학인 '전방위외교'이다. 중국의 국가적 의지가 지구 표면 국제사회에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도록 하려는 그의 외교원칙은 1991년 인접국가들의 불쾌감을 무릅쓰고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큰 고비를 넘겼다.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그 뒤를 이은 논리적 순서였다.

넷째는 대일본 견제효과이다. 중국으로서는 19~20세기의 역사에서 보듯이 지역외적 열강인 미국과는 우호와 갈등의 관계를 상황(狀況)에 따라서 바꾸어왔지만 일본과는 어찌면 운명적인 대립·갈등의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 마침내 군사대국의 단계에 들어선 일본의 모든 영역에서의 대(對)남한 영향력 강화는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된다. 중국은 이제 남한에 대한 일본의 흡인력을 상당한 정도까지 견제 내지 중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이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미루었지만 중국정부(당)의 외교전략에서 결코 마지막 서열이 아닌 '대만(臺灣)고립화정책'이다. 아시아에서 대만을 '중국정부'로 인정하는 국가는 남한밖에 없었다. 중국은 아시아지역의 '반공주의' 국가들

가운데 대만과의 국교를 고집했던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작년까지 사이에 대만을 버리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과의 수교는 대만의 마지막 지역적 국가관계인 대한민국을 떼어버리는 것이다. 한국 국내에서 서울의 대만대사관 이전문제에 감정적 반응들이 교차하는 보도들이 그 효과를 말해준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두 개 국가'를 주장하고 승인하는 남한정부에게 중국은 분단된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을 승인케 한 것이다. 남한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통일정책과 직결시켜왔던 이 문제에서 40년간의 기본입장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소위 '북방정책'의 목표인 북한에 대한 '포위와 조이기' 고리대의 마지막 고리를 줄라맨 격이다. 물론 한중 수교나 한러 수교가 자동적으로 두 전(前)공산주의 동맹국의 북한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한이 미국과 일본의 보호를 누리는 것에 대응하는 북한의 정치적 보호기구는 해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중 수교가 중국과 북한에 미칠 군사적 경제적 효과

군사적 효과는 단순하지 않다. 남한정부는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61년에 체결한 군사동맹조약(중조호상우호원조조약)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든 셈이다. 중조조약은 남한에서 박정희 육군소장이 1961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하여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선언한 직후인 7월, 남한군사정권의 군사적 도발 위험성을 예감한 북한이 황급히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보호 약속을 받아낸 조약이다. 소련의 군사적 약속은 8월의 같은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

소련(러시아)과 중국이 북한과 맺은 그 조약은 일단 형식상으로는 그대로 있다. 그러나 양국은 이미 남·북한과의 군사적 교류를 공식화했다. 북한에 대한 종래의 군사 무기 지원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과 북미합중국간의 군사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있다. 미국의 핵무기는 철수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증은 없다. 주한미국 지상군·해군·공군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서기 2천 년까지 주둔할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상태를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과의 대응조치 없이 승인하였다. 이 결정(수교)에는 흔히 한국 내에서 주목

받지 않은 문제가 있다. 6·25전쟁을 군사적으로 매듭지은 '휴전체제'의 행방이다. 첫째는 1973년 7월에 서명된 '휴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수행해온 협정상의 군사적 권리·의무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이다. 둘째는 휴전협정 제60조에 규정하고 합의한 "조선반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참전국가들의 정치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군사대립체제를 최종적으로 정상화할 '강화조약(평화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중국은 남한과의 정치적 관계정상화로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되었다는 태도이다. 그렇게 본다면 휴전감시위원단으로서의 중국대표권 행사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한(조선)의 자체적 문제해결"을 바라며 또 그 노력을 지지한다는 중국정부의 발표는 휴전협정 제60조에 근거한 국제평화회담이나 강화조약 체결이 필요없다는 견해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휴전협정의 사실상(de fact) 소멸이다. 이것은 바로 남북민족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평화회담과 강화조약으로 실현하자는 북한의 일관된 문구와 조약 해석을 역시 일관되게 반대해온 남한의 승리라 하겠다. 법(de jure)적으로도 남·북한이 총리회담 형식으로 "상호간 해결" 방법에 합의한 이상, 그 문제는 자연 소멸되었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중국측의 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남한경제와 자본이 노리는 중국시장은 양면의 성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자본·기술이 현재 수준에서는 남한의 그것에 이득의 기회가 되지만 중기(中期) 또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은 위협적인 경쟁대상이라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현재 및 장래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굵직한 문제들은 앞에서 대체로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제도는 이미 과거의 동질성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중국공산당의 공식노선은 "사회주의를 기조로 한다"고 하지만 북한 사회주의와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단계에 이르렀다. '공산주의' 이념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포기했다. 북한의 '개인숭배' 체제와 사회폐쇄정책은 중국인민의 비웃음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정권(당)의 고령의 지도자군과 과거 투쟁경력을 공유하는 중국의 노령층은 대부분 도태되었다. 중국의 당·정부·국가기관들과 민간분야 최고지도층의 평균연령은 50대로 젊어졌다. 이들은 많은 외국교육 경력의 소유자들로서, 북한지도층의 고립적 민족주의와는 세계관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국정부는 세계에 문호를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국민(시민)에게도 세계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보면 중국대륙에서 온 수많은 학자·전문가·기술자·학생 심지어 무직자·노동자들을 만난다. 상업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 한국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華僑)의 영향력이다. 동남아시아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유럽·아랍세계에까지 산재해 있는 화교는 약 4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각 거주국에 깊이 활동의 뿌리를 박고 있고, 그 재력(財力)은 각 거주국의 경제를 쥐고 흔들 정도로 막강하다. 화교들은 자본주의적 체제와 생활환경에서 경제력과 재력을 쌓았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회발전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발사업(특히 외부자본에 의존)은 거의 화교의 투자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중국의 국가 및 사회의 자본주의화, 적어도 '시장경제' 화를 추진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

북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중국은 등소평 집권 20년 사이에 북한과는 거의 이질적인 사회가 되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본래 서구(유럽) 지향적이었던 러시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북한은 그들의 고유전통의 숭상이나 그 지도자들의 과거 항일무장투쟁의 훌륭한 민족주의적 업적을 인정받아 마땅하다. 남한의 주민은 이 점에서 북한을 따를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동맹자는 이제 세계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쿠바 한 나라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쿠바정권 자체가 세계환경의 급변으로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적 원천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 국가의 민족주체성과 사회구성원간의 도덕적·정신적 우애정신은 남한 사회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같은 북한사회의 장점이나 우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유럽공산주의·사회주의 우방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적어도 중국식 사회변화를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국교 수립결정에 대해서 북한은 일체의 비난성명이나 공격적 반응을 삼갔다. 1년 전 소련(러시아) - 남한 수교의 경우에 보였던 격렬한 소련 공격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그 배경은 세 가지로 이해된다. 하나는 물론 북한이 세계사적 대변혁을 현실로 수락

할 수밖에 없게 된 자각이라 하겠다. 둘째는 북한지도부가 자존(自存)의 노선으로 등소평 중국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시사이다.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정치·군사적 해결과 연계시켜온 남북회담의 기본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듯한 1992년 9월 제8차 평양남북총리회담에서의 태도변화가 그 간접적 증시이다. 셋째는 남한과의 국교 수립을 위해서 중국이 북한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했거나 공약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에 관한 공개적 자료는 아직 없다. 북한의 다급한 경제사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원조가 약속되었을 가능성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러시아가 국제가격으로 청산하려는 석유를 '우호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 북한이 소련과 갈등을 빚을 때 중국은 북한을 돕는 방식으로 흔히 염가의 석유공급을 해온 전례가 있다. 군사무기류의 지원은 아마도 북한군 무기와 장비의 현상유지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연결하는 긴 국경선으로 전략요충인 만주(동부 3성) 남부가 북한에 접해 있는 중국은, 미국이나 남한의 군사력에 의해서 그 국경선이 위협받는 사태발생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6·25전쟁에서 중국이 개입한 동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 사정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남한에 대한 견제일 것으로 믿어진다.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남한의 핵무기에도 (미국핵은 물론) 반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다독거리는 동시에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위협적 정책을 쓰지 않도록 견제하는 간접방식이다.

남·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관계 정상화를 전망하며

러시아와 중국과 남한의 관계정상화는 당연히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문제의 전망을 제기한다. 한반도정세의 안정책으로 오랫동안 남한과 미국이 주장하는 해결방식이다. 북한은 남북한과 지역관여 열강들 사이의 이른바 '교차승인' 방식을 민족분단의 국제화·영구고착화정책이라고 반대해왔다. 유엔 개별가입 방안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와 같다.

한중국교 수립은 미국 일본과의 충분한 협의 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어진다. 적어도 미·일 두 정부에게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통고되었을 것이다. 중국은 미·일 양국의 북한 승인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중국정부는 한

반도 지역정세의 균형잡힌 사태전개를 위해서 조선-미국, 조선-일본 수교와 중국-한국 수교를 동시적으로 진행하려 했던 흔적이 많다. 그래야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국제적 권위와 체면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태는 그렇게 진전하지 못했다. 1991년에 있는 미국의 이라크공격전쟁이 압도적 승리로 끝난 뒤에 미국정부, 특히 군부가 상정하는 미국군사력 중심의 세계패권주의 노선 때문이다. 미국의 소위 '세계신질서'라는 구상은 여러 계층의 존재양식의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련의 계승국가인 러시아를 철저히 2등 또는 3등 군사국가로 만드는 제1순위 정책을 비롯해서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몇 개 국가들을 쿠웨이트처럼 전쟁수단으로 굴복시키는 제3순위까지의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다. 미국 군부가 "다음에 때려잡아야 할" 그런 국가나 정권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다른 하나는 쿠바이고, 그보다 좀 덜한 "박멸상대"가 리비아의 카다피정권이다.

북한은 미국의 물리적 힘과 비교하면 허약한 존재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완강히 버티기로는 세계 제1위이다. 미국은 쿠웨이트라는 구실로 이라크를 강타했듯이 어떤 적절한 구실만 있으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타하려고 버리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미국의 호전적 강경정책은 바로 그 단적인 예이다(이 정책과 그 배경요소들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사회평론』 1992년 5월호의 리영희 특별기고 「미국-북한 핵문제의 P.T.S.D.적 구조」를 참고하기 바란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동북아시아 정치·사상·외교·군사·선전·모략의 제반구조가 북한을 말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짜여져왔다. 이같이 경직된 북한적대시정책과 군사전략은 상황변화에 따라 쉽게 자기수정을 할 수가 없다. 조정·조절·수정·재구성...해야 할 정책조치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몇 해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와 정부(그 지도층)는 근육이상비대증에 걸린, 그러나 두뇌는 이상퇴보해버린 기형아처럼 보인다. 아직도 힘의 감각에 도취되어 있다. 변화한 환경조건에 신속성있게 대응할 신경기능을 상실한 공룡과도 같다. 변화하는 환경을 직시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미국의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본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약삭빠르기로 정평있는 일본의외교도 북한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이다. 북한에 대한 국가적 태도수정은 미국측의 양해와 승인을 전제로 한다. 그런 까닭에 일본-조선 수교는 미국-조선 수교 결정을 기

다리거나 그보다 늦을 공산이 크다.

끝으로 남한-중국 수교가 남북한 관계의 개편에 미칠 영향이다. 앞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관계와 한(조선)반도 주변정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월등히 많다. 바로 며칠 전(1992년 9월 1일)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예상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남한은 북한의 군사적 보위 책임을 지던 소련(러시아)과 중국이 등을 돌림으로써 북한 단독의 '남침'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이, 남한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이 '북침'에 동원될 가능성을 억제 해주리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북민족간의 전쟁재발 가능성은 대폭 줄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국-한국 국교정상화의 한반도적 의미이다.

이같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수정에는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40여 년에 걸친 '반공주의'와 '반통일정책'이 현재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데도 여러 해가 걸렸다. 북한의 예상되는 변화는 앞서 검토한 대로일 것이다. 북한은 긴급한 국내 체제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냉전시대의 낭비적인 군비지출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남한의 대폭적인 군비축소가 남은 문제이다.

남·북한 1991년도 군사예산은 110억 달러 대 40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전에 수립된 남한의 막강한 군비증강계획은 그 타성으로 지금도 총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한이 이 군사증강사업을 축소함으로써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이, 한중 수교로 조성된 외부적 평화정착환경을 내부적으로 보완·강화하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양대 교수]

국제시대의 인권운동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인권상황/천정배
—유엔인권이사회 제45차 회의 참관기

제네바에 펼쳐진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신혜수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의 강제 종군위안부문제 대책활동

한국·일본의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토론회 보고서/박찬운
국제인권활동 견문 편편록/박원순

특집 : 국제시대의 인권운동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제45차 회의 참관기

천 정 배

1. 머리말

1992년 7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국제적 토의가 이루어졌다. 유엔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가 7월 13일부터 3주일 동안 계속될 제45차 회기를 시작해 그 의안과 토의 순서를 확정된 뒤 첫날 오후부터 우리 정부의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1991년 7월 우리 정부가 제출했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른 최초보고서"(이하 '정부보고서'라 함)를 검토한 것이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제6공화국이 들어선 뒤에도 나라 안팎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 및 변명이 이어져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비롯한 국내의 인권단체들과 해외의 수많은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비민주적인 법률과 제도를 고치거나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갖가지 개선책

* 인권이사회의 회의록은 번역하여, 이 책 뒷부분에 '자료'로 실었다.

을 제시했다. 그 반면에 정부는 한결같이 제6공화국에서는 거의 모든 인권문제가 해결돼 더이상 나라 안팎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러한 비난을 제기하는 단체들을 편파적이라고 공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불순하다고 매도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는 평행선을 그릴 뿐 눈에 떨 만한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정부측의 공세적 변명에 영향을 받았음인지 그 견해에 동조하는 여론이 상당히 넓게 조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사회의 이번 회의는 그 공식성과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열리게 되었다. 뒤에 살펴듯이 이 회의는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비준해 우리 법체계의 일부로 채택한 국제조약에 따라 열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회의에서 제시되거나 채택되는 권고사항들은 민간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고사항과는 달리 우리 정부가 단순히 참고사항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조약에 따라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회의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이 회의에는 어느 모로 보든지 우리 정부에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참여했다. 뒤에 살펴듯이 이사회는 각 나라 정부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 정부에 의해 지명된 사람 가운데서 선출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가 그 검토 대상이 되었고 이사회의 위원들과 정부의 대표들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의 처지에서 이 회의가 객관성을 잃은 정부 비난의 마당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온 재야 인권단체들로서는 이 회의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없음을 아쉬워해야 했다.

이사회의 위원들은 고매한 인격과 인권분야의 능력이 인정된 사람들로서 세계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명형태를 고려해 골고루 선출된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그 선출 이전에 이미 인권분야의 권위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사람들도 많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적으로 유수한 인권 관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공식적이고 객관적이며 국제사회에서 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중대한 뜻을 지닌 가운데 차분하게 그 시

작을 맞았던 것이다.

2. 회의의 성격

이번 회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인권규약’이라 함)에 따른 것 이므로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규약과 그것에 대한 한국의 비준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¹⁾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인 인권위원회 는 일찍이 1947년 1월 국제인권장전을 기초하기로 하고 그 내용으로 인권에 관한 선언과 법적인 의무를 포함하는 조약 등을 담기로 했다. 그 뒤 유엔총 회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고, 인권위원회의 오랜 작업 끝에 1966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 제2,200호로 흔히 “국제인권규약”이라 불리고 있는 조약이 채택됐으며 이 조약은 여러 나라의 비준을 거쳐 1976년 에 발효했다.

“국제인권규약”은 세 개의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A규약’이라 불 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B규약’이라 불리 는 이번 회의와 관련된 인권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이 그것이다. A규약은 그 자체에 당사국이 그 규 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조치 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당사국의 국민이 그 정부에 대해 즉각 그 권리의 보장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반면에 B규약 (우리가 논의하는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는 그 규약의 효력 발생 즉시 전면적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규약(B규약)은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 주·이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우리 헌 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규약

1) 이하의 논의는 유현석, 「국제인권규약과 법률사무」, 『인권과 정의』 1990년 9월호 및 조용 환, 「국제적 인권보호제도과 이용가능성」, 『법과 사회』 제5호, 창작과 비평사, 1992년 1월 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다.

의 용어는 국내법적 의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뜻 을 지니며 당사국은 그 국내법의 해석을 구실삼아 인권규약상의 의무를 회피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전에 인권규약을 준수할 당사국의 하나로 가입하는 절차를 마쳤고 1990년 7월 10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 소권의 보장, 이중처벌 금지 및 결사의 자유의 보장을 규정한 3개 조항에 대 해서는 그 가입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다. 이 중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하기 위함이다.²⁾

인권규약은 그 실시에 관한 여러 직무를 수행할 기구로서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이사회’라 함)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은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당사국 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당사국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위원은 “고매한 인격 을 지니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 4년의 임기를 가지 며 2년마다 반수씩 새로 선출된다. 이들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면 서 서로 다른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를 대표하도록” 선출되며 정부의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인권규약은 당사국이 그 발효 후 1년 이내와 그 후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에 각각 인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최초보고서 제출 후 5년마 다 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보고서에는 당사국이 “인권규약 에서 정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그런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성 취된 진전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인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것들도 기재해야 한다. 이사회는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에 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일반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 검토가 이루어지는 회의 에는 당사국의 대표가 출석할 수 있다. 그 대표는 이사회에서 제기되는 질문 에 답변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 관해 발언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할 수 있 다. 이사회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반적 의견(such general comment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을 당사국에 보냄과 동

2) 정부보고서 제265항 (b) 및 (c)

시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당사국 정부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케 하고 이사회가 그것을 검토하는 목적은 “규약의 실시에 관해 당사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엔헌장에 따라 국가들 사이의 이해와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 인권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인 1991년 7월 최초보고서(정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사회는 당초 1992년 3월에 열리는 회기에서 그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후 우리 정부가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그 검토 일정을 1992년 7월의 제45차 회기로 연기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이사회가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3. 한국정부와 재야단체의 준비과정과 내용

정부보고서의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고 인권의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직원들로 실무집단이 구성, 작성되었다고 한다.³⁾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법무부 인권과에 소속된 검사들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고서는 1991년 9월 20일자 유엔 간행물(CCPR/C/68/Add.1)로서 영문으로 배포됐는데 목차를 빼고 70쪽에 이르고 있다.⁴⁾ 정부보고서는 1부터 312까지 일련번호를 붙인 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권규약에 따라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서문(Introduction)」 다음에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등을 언급한 ‘일반적 의견(General Comments)’을 제시하고, 이어서 「인권규약의 제1조 내지 제27조의 적용에 관한 정보(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s 1 to 27 of the Covenant)」라는 제목 아래에 인권규약의 각 조문에 관련된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정부의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민변의 관계자들은 정부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것

3) 1992년 7월 13일 이사회에서 정부 대표 박수길 대사가 한 발언

4) 정부는 정부보고서의 한글판도 간행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영문판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 규약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에서 법조문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실제의 인권보장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와 장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변은 이사회가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충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와 우리 정부가 참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교협)와 공동으로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를 작성해 미리 이사회와 그 위원들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했다.⁵⁾

민변과 한교협은 1991년 11월 민변 소속 변호사 10명과 한교협 관계자들로 반박보고서 준비팀을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고 한글판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러 재야단체들에 대해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 취지와 그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외국의 인권단체들이 만들었던 반박보고서들도 수집했다. 준비팀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1992년 2월 초에 보고서의 작성을 끝낼 것을 목표로 작업에 몰두하던 1992년 1월 중순, 정부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검토 일정이 당초 예정되어 있던 3월에서 7월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이에 준비팀은 반박보고서에 작성 완료시기를 1992년 5월 초로 늦춰 더욱 충실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92년 3월 말에 반박보고서 한글판 원고가 거의 마련됐으며 4월 초에는 영문판의 작성에 들어갔다. 영문판 작업에는 기존의 준비팀 이외에도 미국에서 자란 한국 동포 2세대들 여러 명이 가세했다. 이 확대된 준비팀은 마지막까지 이미 만든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쳐서 최선의 보고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5월 초에 이르러서는 밤샘작업을 되풀이한 끝에 마침내 5월 8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해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40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반박보고서’라

5) 인권규약 당사국의 정부보고서에 대해 그 나라 안팎의 인권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작성한 선례가 많이 있다.

함)”라는 이름을 붙인 285항으로 된 122쪽의 영문보고서를 이사회와 그 위원들 앞으로 발송했다. 이어서 5월 중순 반박보고서의 한글판이 완성되었고 민변과 한교협은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⁶⁾

반박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법률과 인권상황에 대해 별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사회와 위원 등 외국인에게 우리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목표 아래 씌어졌다. 그 집필자들은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법률과 그 운용의 실상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반박보고서는 4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1부에서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규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등을 설명한 뒤, 제2부에서는 사법부에 의한 재판의 과정 등 구체적인 기본권의 보장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제3부와 제4부에서는 각각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 정신적 정치적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 등 그밖의 기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민간단체가 법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한 저작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반박보고서는 이런 류의 첫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들은 반박보고서의 준비 당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영문판이 완성된 직후 민변 관계자에게 그것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⁷⁾ 민변은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해 정부당국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하는 선의에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민변과 한교협이 반박보고서를 발표하는 1992년 6월 2일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으로 추정되는 정부당국은 그날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반박보고서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채 추상적이고 적대적인 낱말들을 동원해 반박보고서와 민변을 악의적으로 매도했다. 이에 민변은 같은 날 즉시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당국에 대해 정부보고서의 내용과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자고 공식 제의했으나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⁸⁾

6) 그 후 반박보고서는 1992년 7월 『한국인권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역사비평사에 의해 출판·시판되고 있다.

7) 법무부는 신문보도 등으로 반박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알려지자 반박보고서를 아직 검토하지 못했음이 분명한 시점인 1992년 5월 13일에 서둘러 반박보고서의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발행의 『국제인권보』 1992년 5월 15일자를 참조하라.

민변과 한교협은 이사회와 이번 회의에 참관단을 보내기로 결정해, 민변 소속의 박원순, 조용환 변호사 및 한교협 인권위원회의 김찬국 위원장과 김경남 사무국장 등이 참관케 되었다. 민변의 참관단은 이사회와 위원들이 정부 대표에게 질문해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을 작성해 회의 시작 직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회의에 참관단을 보내기로 결정해 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와 인권위원인 필자가 참관케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참관단은 회의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보고하기 위해 비디오촬영을 했다.

그밖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미국에 있는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Stop Torture in Korea)도 각기 보고서를 작성해 미리 이사회에 제출했다.⁹⁾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대표로 주제네바대표부 박수길 대사와 문봉주 참사관, 법무부 인권과장 유국현 고등검찰관, 외무부 유엔2과 정달호 과장 등을 선정했다.¹⁰⁾

4. 인권이사회 회의의 진행

7월 13일 오후 3시 15분경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장인 포카르(Fausto Pocar; 이탈리아)를 비롯한 14명의 위원과 정부대표단이 정해진 자리에 앉았고, 방청석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및 한교협의 참관단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법률가협회(ICJ) 등 국제인권단체들 및 일본의 장의군 후원회 대표 등이 자리를 메웠다. 그밖에 남북 양측 외교관들과 유럽에 있는 한국유학생 몇 사람도 눈에 띄었다.

필자 등은 사실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우리가 과연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고 회의장면도 녹취할 수 있을까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현지에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해 미리 출입증을 얻어두기

8) 반박보고서를 둘러싼 민변과 정부당국 사이의 논란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92년 6월 4일자 19면에 간략히 보도되었다.

9)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는 “South Korea :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라는 이름으로,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의 보고서는 “Long-term Political Prisoners and the System of Ideological Conversion in Korea”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10) 정부대표단의 준비작업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보』 1992년 8월 15일자를 참조하라.

도 했다. 막상 제네바 유엔센터에 도착해보니 우리의 조바심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출입증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출입문에 있는 경비원에게 한 두 마디 형식적인 말로 용무를 밝히기만 하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으며 회의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데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폐쇄와 통제에 길들여 있었기 때문에 공개와 자율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장의 개회선언과 한국정부 대표단의 소개에 이어 대표단장인 박수길 대사가 약 30분 동안 정부보고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를 했다.

정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1988년 초 민주화를 목표로 설정한 헌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보호 분야에서 이루어진 큰 진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아래에서 민주주의원칙을 구현하고 인권의 보호를 신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됐다. 대통령직선제 채택, 국회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설립, 법률구조의 제도화, 형법 개정 준비,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의회 구성 등이 이루어졌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주주의의 법 지배 아래에서 민주주의의 혜택을 최대한 충분히 누리고 있다.

인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에 따른 긴장이다. 북한이 남한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그 존재이유를 가지며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이다. 인권을 더욱 신장시키기 위해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¹¹⁾에 가입할 계획이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의 마무리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으며 이 기구의 주관하에 체결된 각종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박대사의 보고가 끝나자 출석한 이사회 위원들이 차례로 정부 대표단에게 질문을 했다. 첫 질문자인 안도(Nisuke Ando; 일본)는 정부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와 같은 지역권에 속하는 위원이 먼저 발언하는 것이 이사회 관행이므로 자신이 나서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정부보고서가 잘 만들어졌으며 한국이 인권규약뿐만 아니라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고 인권규약 제41조에 따른 선언을 한 것은, 일본정부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대단한 일로서 높이 평가한다

11)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87년 6월 28일 발효한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인격을 손상하는 처우를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을 말한다.

고 칭찬했다.¹²⁾ 또한 그는 역사적으로 한국에 해악을 끼친 일본의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필자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 안도 위원이 한국에 대한 사과를 입에 올리는 데 대해 내심 언짢아졌다. 그러나 그의 한국정부에 대한 칭찬과 사과는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매서운 비판이 혹시 민족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 비롯됐음이 곧 밝혀졌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매우 정확한 인식을 가진 듯 여러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다양한 질문을 했다(이하 위원들의 질문을 그 순서대로 요약해 일련번호를 붙여 소개하며 중복된 질문이라도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것은 되도록 그대로 기술하기로 한다).

① 인권규약이 국내법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인권규약보다 늦게 만들어진 법률이 인권규약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② 한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밖의 다른 이유, 예컨대 정치적 견해에 의하여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

③ 여성 차별의 실제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한 경우와 한국 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혼한 경우를 비교해볼 때 그들 사이의 자녀의 국적 취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부부재산제도에 관해 한국정부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④ 인권규약 제4조 제2항은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될 권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한국법률상 어떤 것들을 그러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가?

⑤ 고문과 가혹행위에 관해 본인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몇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한다. 정부보고서에 언급된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 때문에 임의성없는 자백을 하고 검찰에서 그 강요된 정신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같은 자백을 한 경우에 검찰에서 고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례에

12) 선택의정서 가입과 인권규약 제41조에 다른 선언의 의의에 대해서는 조용환, 앞 논문을 참조하라.

관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바란다.

⑥ 정부보고서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수사기관의 실제관행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를 말해달라. 구속된 자의 가족이 얼마만에 구속사실을 알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형사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나이는 몇 살인가?

⑦ 남한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가?

⑧ '보트 피플'에 대한 한국의 법률과 관행을 설명하라.

⑨ 변호인접견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을 설명하라.

⑩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만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데 어떻게 어느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가?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상소할 수 있다면 왜 다른 덜 무거운 형을 받은 자는 상소를 못하게 하고 있는가?

⑪ 국가보안법에 관해 본인은 한국전쟁의 잔재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은 변했고 또한 변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환영하지만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여전히 그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몇몇 조항은 너무 모호하다.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인이 가진 정보에 따르면 사람의 신념을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시도가 때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인이 보기에 이것은 매우 지나치다. 사람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의 신념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인권규약 제18조에 위반된다. 이 점에 관해 언급해달라.

⑫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이 된 뒤 교원의 노동조합을 해산하려는 등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⑬ 미성년자를 더욱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는가?

⑭ 언론인에게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어서 디미트리제빅(Vojin Dimitrijevic; 유고슬라비아)은 정부보고서가 사회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불리한 국제사정 탓에 생기는 권위주의 등으로부터 사회를 자유롭게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여러 곳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말하고 정부 대표단이 법률보다 실제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한 뒤 질문에 들어갔다.

다음은 그의 질문 요지이다.

⑮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⑯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얼마나 되는가?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리스트를 제출하라.

⑰ 어떤 조건에서 낙태가 허용되는지 알려달라.

⑱ 국가보안 사범의 경우 법원의 몇몇 판결들은 오직 자백에만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백을 하도록 만드는 처우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라.

⑲ 일반 범죄의 구속기간이 최장 30일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에 그것을 50일까지로 연장하고 있는 것은, '비밀경찰' 또는 '정치경찰'이 다른 수사기관보다 더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처럼 긴 기간에 대한 정확한 세부규정과 그 기간을 변경하려고 고려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라.

⑳ 인권규약의 조항에 관련된 중심적인 요점은 국가보안법이다. 개정된 법도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부터 모호하며, 바로 이 점이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싶다.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정의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㉑ 국가보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범죄에 종전의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개정 법률의 규정은 헌법과 인권규약 제1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㉒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반국가단체가 그토록 넓게 정의되며, 공산주의나 그와 비슷한 것의 범주에 드는 표현물을 지니고 읽어 정보를 얻는 것이 금지된다면 참으로 문제가 있다. 정부보고서는 한국에 검열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달리 금지목록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모른 채 처벌받게 될 위험에 빠져 있다. 제반 공연, 영화, 정기간행물 및 서적 등과 관

런된 검열 가능성이 있는지와 출판, 판매 또는 소지를 금지한다는 형식으로 서적에 대한 예방적 검열의 가능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라.

㉓ 국가보안법에 따라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는 인권 규약 제17조와 제19조에 비추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길라(Francisco Jose Aguilar Urbina ; 코스타리카)는 정부보고서가 잘 만들어져 있으나 실제적인 한국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㉔ 국가보안법이 사실상의 헌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민간단체의 비판이 있는데 이 점에 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라.

㉕ 외국인은 예외없이 공무원이 될 수 없는가?

㉖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형벌법규는 무효로 선언된다는 규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㉗ 감사의 권한행사에 대해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㉘ 매춘을 위해 부녀를 획득하는 행위도 처벌되고 있는가? 법률전문직과 정치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는 법률이 있는가?

㉙ 헌법상 비상사태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에 이르기까지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듯하다.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인권규약보다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규약이 헌법에 우선해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만일 그렇다면 인권규약은 직접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비상시의 권리 제한을 규정하는 헌법의 조항들은 어느 정도 인권규약에 합치되는가?

㉚ 정부보고서는 형법과 “그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수 있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만 사형선고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그 규정과 범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국가보안법이 50개나 되는 범죄에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도에게도 사형을 과하고 있다. 사형선고

를 받은 자를 구금하는 것은 그에 대한 형의 집행을 확보키 위함이라는 정부 보고서의 설명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

㉛ 세 종류의 전염병 환자의 권리는 실제상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가?

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 기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다는 데 이에 대해 설명하라.

㉝ 납치행위는 처벌되는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정부보고서의 언급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라.

㉞ 한국에 정치범은 몇 명이 있는가? 약 1,300명이라는 정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에 대해 설명하라.

㉟ 재소자에 대한 등급분류제도가 있는가? 재소자의 사상전향에 따라 그 등급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독거 수용을 규율하는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라.

㊱ 주민등록법과 그것의 보안관찰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라.

㊲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의 실제 효과는 무엇인가?

㊳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그에게 소송준비를 할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는가?

㊴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 듯한데 이 점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라.

㊵ 한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한 사람이 있는가?

㊶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인권규약에 어느 정도 합치되는가?

㊷ 행위무능력자로 선언된 자에 대한 정치적 행위의 제한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하라.

㊸ 교사와 언론인의 정당 가입이 금지되고 있다. 해산된 정당과 같은 정치적 강령을 지닌 정당의 설립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어떤 정당들이 금지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밖에도 아길라는 위에 본 질문 ①, ②, ⑤ 및 ㉒ 등과 비슷한 질문을 했다.

샤페이(Omran El Shafei ; 이집트)는 한국의 인권규약 가입을 환영하며 정부보고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사회에 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억압적인 국가였는데 이제 이 자리에 나옴으로써 하나의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기를 희망한다고 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④④ 인권의 옹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특정한 국가기구가 있는가?

④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 법원은 법률이 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폐기할 것인가?

④⑥ 법관의 채용, 임기 및 해임 등에 관한 조치를 포함해 법원의 독립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라.

그는 마지막으로 장래의 정부보고서에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보안관찰법, 노동쟁의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가 포함되기를 기대하며 이들 법률은 한국의 역사에 비추어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왔으나 앞으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한국 대표단도 동의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마브로마티스(Andreas V. Mavrommatis ; 키프로스)는 다른 위원들이 거의 모든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인권의 신장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남·북의 차이, 장기복역 정치범, 공정한 재판, 무죄추정, 표현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인권규약에 위배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보고서가 매우 훌륭하지만 한국의 실제 상황이나 법 집행의 실제와 난점에 관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그는 인권규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평등권, 사형 사법권의 독립 및 군사법원과의 관련 등을 언급했다.

필러슨(Rein A. Myullerson ; 러시아)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최근 한국이 보인 노력에 감사하며 정부보고서가 유용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④⑦ 민족자결권이란 독립된 국가를 세울 권리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신들의 경제·사회·정치·문화체제를 결정함을 뜻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④⑧ 남북 통일에 관해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조건은 무엇인가?

④⑨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가?

⑤⑩ 비상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는가?

⑤⑪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다. 구속기간의 연장 규정은 무죄추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⑤⑫ 군사법원의 재판대상이 되는 범죄는 어떤 것들이며 그 재판을 규율하는 '비상법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밖에 그는 위에 본 질문 ②, ⑦ 및 ④⑥ 등과 비슷한 질문을 한 뒤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평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는 이해할 수 있으나 최근의 전반적인 상황변화는 이 법을 덜 필요하게 하고 있으며 이 법은 북한과 연루된 사람뿐 아니라, 맑스의 저작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투옥하는 등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자에게도 사용했다.

사디(Waleed Sadi ; 요르단)는 한국이 정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며 특히 대표단에 법무부의 인권과장이 포함된 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⑤⑬ 인권규약을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인권규약을 채택한 이래 달라진 상황이 있는가? 인권규약에 입각한 판례가 있는가?

⑤⑭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⑤⑮ 대법원은 계엄의 적법성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듯한데 사실인가?

또한 그는 한국이 인권규약의 일부 규정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가입유보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샤네(Christine Chanet ; 프랑스)는 정부보고서가 헌법상 인권보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인권 신장에서 부딪치는 일상적인 장애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일부 규정 유보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⑤⑯ 한국정부는 인권규약의 규정과 정신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⑤⑰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관계행정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한 예는 얼마나 되는가?

⑤8 문화적 영역에서 '합리적 차별'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 '합리적 차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⑤9 비상시에 생명권과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근본적인 권리가 사실상 유보되는 일은 없는가?

⑥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어떤 것들인가?

⑥1 국가안전기획부의 역할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라. 안기부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가?

⑥2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재판없이 매우 장기간 구금되는 예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법률상 구금기간의 제한이 있는가?

⑥3 국가보안법 제4조에 규정된 간첩죄의 경우 대법원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보를 기밀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그 기밀의 범위가 극히 모호하다. 이런 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규약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⑥4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박기래라는 사람이 고문을 못이겨 행한 자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⑥5 방송법의 목적 가운데 '여론형성'을 돕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⑥6 세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공을 증진하려는 노력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사실인가?

그밖에도 그녀는 위에서 본 질문 ①, ② 및 ④와 비슷한 질문을 했다.

이상 위원 8명의 발언이 끝났을 때 이미 예정된 산회시각인 오후 6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의장은 즉석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당초 예정에 없던 다음 날(7월 14일) 오전 회의를 제안해 양해를 얻은 뒤 산회를 선언했다.

7월 14일 오전 10시 10분경 회의가 속개되자 헤른들(Kurt Herndl; 오스트리아)이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정부보고서가 훌륭하고 그것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실상은 회의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한국의 인권규약 가입, 특히 선택 의정서 가입을 축하한다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⑥7 권리구제수단의 하나로 되어 있는 청원은 어떤 의의를 가지며 청원과 동시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가?

⑥8 검사가 인권을 옹호할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검찰

내에 설치된 인권상담센터의 임무는 무엇이며 그것과 검사의 소추업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⑥9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권의 적용범위는 인권규약 제26조보다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의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⑦0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를 보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부에 종사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5년의 징역에서부터 사형까지 넓은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는가? 국가보안법 제12조는 무고나 위증을 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조항에 정해진 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만일 귀하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해 무고나 위증을 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⑦1 정부보고서는 자백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 아래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보장받는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는 말인가?

⑦2 정부보고서는 재소자의 교화에 해로운 때를 제외하고는 재소자가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장의관을 비롯한 사상범의 경우 그러한 접견이 거절되었다. 그렇다면 사상범이란 무엇이며, 사상이 교화와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것인가?

⑦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형벌 법규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⑦4 한국에는 소수민족이 없다는 정부보고서의 언급은 사실인가?

그밖에도 그는 위에서 본 질문 ⑥과 비슷한 질문을 했다.

히긴스(Rosalyn Higgins; 영국)는 정부보고서가 훌륭하지만 공식적인 정보와 현실을 결합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주로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겠다고 한 뒤 다음 요지의 질문을 했다.

⑦5 이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이사회는 논평을 어떻게 한국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인가? 선택의정서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이사회가 밝히는 의견을 한국정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⑦6 일부 인권규약 규정에 대한 한국의 유보조치를 철회해야 하지 않겠는가?

- ⑦⑦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에 관해 경찰에 어떤 지침이 내려져 있는가?
- ⑦⑧ 법 집행 공무원에게 고문을 하지 말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정부보고서의 언급과 관련해, 국제적인 인권보장 의무에 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⑦⑨ 공무원 29명이 고문혐의로 구속됐다고 했는데 몇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어떤 형벌이 선고됐는가? 누가 그러한 혐의 사실을 조사하는가? 그 공무원이 속하는 기관과 독립된 수사기관이 있는가?
- ⑧⑩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라.
- ⑧⑪ 국가보안법의 어떤 조항의 경우에 구속기간이 너무 길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50일의 구속기간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불과 며칠로 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 ⑧⑫ 과거에 고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장기수들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라.
- ⑧⑬ 검찰에 공안부를 두고 노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처럼 상당히 넓은 범위의 범죄를 처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관행은 무죄추정에 반하는 작용을 하는 분위기를 자주 만들어낸다.
- ⑧⑭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처리에서 무죄추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⑧⑮ 형사재판이 종종 구치소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인가?
- ⑧⑯ 많은 나라에서 변호사의 부족 때문에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방어준비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가족 또는 친구와의 비공개접견이 매우 중요한데 가끔 그런 접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 ⑧⑰ 아직도 미전향정치범이 대전교도소에 약 40명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람의 견해와 사상을 전향시키겠다는 것은 인권규약에 위반된다.
- ⑧⑱ 최근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것은 좋은 일이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법은 정부나 국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되며 정치적 반대세력과 노동조합주의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자주 행사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에 대해 논평하라.
- ⑧⑲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왜 사전허가를 요하며 얼마나 자주 그런 허가가 거부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가 기계적으로 거부된다는데 사실인가?

⑨⑩ 형 집행을 완료했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1989년에 제정된 보안관찰법을 다시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인권규약과 합치되는지 설명하라.

발레호(Julio Prado Vallejo ; 에쿠아도르)는 한국의 인권규약 가입을 환영하고 정부보고서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국내법과 현실간에 많은 괴리가 있는 듯하고 법을 실제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장애를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인권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뒤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 ⑨①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협상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 ⑨② 한국에서 고문에 대한 많은 고소가 제기됐으나 수사가 지연되어 왔다.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이 있는가? 고문 주장이 제기된 때 적십자와 같은 독립된 기관이 재소자를 접견해 사실 여부를 결정할 길이 있는가?
- ⑨③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공공복리'란 무엇을 뜻하는가?
- ⑨④ 최장 구속기간은 얼마이며 구속적부심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 ⑨⑤ 한국에 정치범은 얼마나 있는가? 30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사상범 가운데 감형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공산주의자가 사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승인된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밖에도 그는 위에서 본 질문⑥과 비슷한 질문을 했고, 북한사람과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투옥할 수 있고 그 구속기간도 50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웨너그렌(Bertil Wennergren ; 스웨덴)은 정부보고서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문을 했다.

- ⑨⑥ 행정소송의 경우에 행정관청의 심판이 있고 나서 막바로 대법원에 제소되는 것인가?
- ⑨⑦ 18세 미만자에게도 사형을 과할 수 있는가? 사형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는가?

⑨8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허용된다는데 '우생학적 사유'란 무슨 뜻인가? 태아에 대한 진단법이 있는가?

⑨9 징역형의 정의를 구성하는 '노역'은 무엇인가?

⑩0 행정법에 언급된 '방성구'는 무엇인가?

⑩1 재소자에 대한 독거수용의 조건과 그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라.

⑩2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데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가?

⑩3 행정법 제1조가 그 목적을 "건전한 국민사상을 함양한다"고 함은 사상 주입이나 세뇌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전한 국민사상'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상과 같이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오전 11시 10분경 의장은 휴회를 선포했다. 니디아예(Ndiaye; 세네갈)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한 명이었지만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사회는 7월 15일 오후 3시 15분경부터 정부보고서의 검토를 위한 회의를 속개했다.

먼저 위원들이 이를 동안 제기한 질문에 대한 정부대표의 답변이 있었다. 박수길 대사가 일반적인 논평을 한 뒤 유국현 과장이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 1시간 30분 남짓 계속된 발언에서 정부대표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식의 공격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민주주의는 실현되었고 정치범은 없다"는 것이었다. 박대사는 민변과 한교협의 반박보고서를 겨냥하는 듯 "어느 민간단체의 문건이 한국에서 맑스와 레닌의 저서뿐 아니라 카(E. H. Carr)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저작들도 금서라고 한 것은 최고로 어리석은 짓(the height of absurdity)이며 자신도 학생시절에 이런 책들을 읽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보았으며 한국 법체계에서 단순히 책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상식 이하의 사실 왜곡을 하기도 했다. 지면 제약으로 말미암아 정부대표의 답변에 대한 더이상의 소개는 생략한다.

이어서 정부대표의 답변에 대한 위원들의 논평이 시작되었다. 위원들의 발언순서에 따라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평에 대해서도 편의상 일련번호를 붙인다.

① 한국 헌법이 양심의 자유는 언급하고 있으나 사상의 자유와 의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서 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권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② 인권규약 제9조 제3항은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별도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법관의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의 관련법규 개정을 고려하라.

③ 국가보안법 및 그것에 따른 구속에 대한 통제와 관련해 특수한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이상 웨너그렌)

④ 정부대표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공산주의 등 비민주적인 국가의 건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자유로운 수단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음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폭력의 사용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법률로써 대처해야 한다.

⑤ 보안관찰법에 관해서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⑥ 간첩의 개념에 관해 국가기밀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그 남용이 우려된다.

⑦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⑧ 경쟁적인 이념에 대한 교육과 논의가 재소자의 교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념을 이유로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규정에 어긋난다.

⑨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는 있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고려하라.

⑩ 국가보안법의 경우에 구속기간이 길고 그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려할 문제이다.(이상 허킨스)

⑪ 북한방문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 사용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이 선전하고 있는 이념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⑫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는 일반형법으로 다룰 수 있으며 특별법은 필요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매우 광범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⑬ 정부대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선전을 처벌할 수 있다고 했으나 어떤 선전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단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법 규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이상 필러슨)

(그밖에도 그는 위에서 본 논평 ⑦과 비슷한 논평을 했다.)

⑭ 한국의 복잡한 정치상황이 법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한 정치상황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항상 최선의 정책은 정상으로 돌아가 다른 나라가 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법률로써 당연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다루려는 문제를 일반 형법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다.

⑮ 경찰의 활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⑯ 국가보안법은 국내법 전반을 침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법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이상 헤른들)

(그밖에도 그는 위에서 본 논평 ⑦ 및 ⑩과 비슷한 논평을 했다.)

⑰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정치범이 있다고 하는데 우려스럽다. 정부대표는 '정부 전복의 기도'를 언급했는데, 정부 전복이란 모든 야당의 합법적인 목표이며 민주주의 절차의 본질적 부분이다. 그것을 위해 폭력이 사용될 때에만 비난할 수 있다. 정치범을 가두어두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를 투옥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기 위해 언급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은 매우 한탄할 일이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도 테러리즘의 피해를 입은 바 있으나 그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인권 규약은 비상사태에 약간의 권리제한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⑱ 국가보안법 제4조와 제7조는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지에 관해 의문을 떨칠 수 없으며 이는 인권규약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이상 샤페)

(그밖에도 그녀는 위에서 본 논평 ③, ⑥, ⑦ 및 ⑩과 비슷한 논평을 했다.)

⑲ 남녀간의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⑳ 사상전향제도는 부당하다.

㉑ 교사와 언론인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㉒ 국제노동기구의 많은 조약들이 장래 정책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㉓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반국가행위에 관한 매우 모호한 용어와 넓은 범주는 특히 위협하다.

㉔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더 좋은 것임을 설득하고 독재체제와 분명하게 대비되도록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자본과 노동조합의 대립 등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인 까닭에 다른 민족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인권의 추구는 관용과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과거와 단절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음이 분명하다.(이상 안도)

(그밖에도 그는 위에서 본 논평 ⑩과 비슷한 논평을 했다.)

㉕ 국가보안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법으로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얻을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인권규약을 극악하게 위반하고 있다.

㉖ 국가보안법이 50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㉗ 사상전향제도는 인권규약 제14조에 합치하지 않는다.(이상 아길라)

㉘ 비상사태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고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㉙ 국가보안법은 해석과 적용에서 남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정치범과 양심수에 대한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대우는 부당하다.(이상 발레호)

㉚ 전체주의의 위협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이 인권규약의 근본이념을 벗어나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러한 논리는 과거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

㉛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보안관찰 및 사상전향제도는 부당하다.(이상 디미트리제빅)

③② 인권규약에 맞추어 인권을 신장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 한국에는 인권문화의 맹아가 이미 존재한다. 이 결정의 실천이 경찰과 국가안보 등의 분야에 아직 완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어 교육이 요청된다.(이상 사디)

③③ 한국은 인권규약에 더욱 합치하는 법체계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이상 느디아에)

③④ 특히 헌법재판소 활동의 결과로, 지난 4년 동안 많은 적극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③⑤ 위원들은 국가보안법, 사형, 집회의 권리 등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회기 말에 채택될 서면의 논평만이 공식문서에 반영되는 의견으로 간주되며 그 논평이 한국의 입법과 법률 개정의 반영되리라 확신한다.(이상 포카르 의장)

위원들의 논평이 끝난 뒤 박수길 대사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그는 공격적 자세를 잃지 않고 위원들의 의견에 찬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재확인한 뒤, 위원들의 논평을 정부에 적절하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녁 6시 20분경 의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이번 회의는 사흘 동안 합계 약 7시간에 걸쳐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스럽지만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법과 인권옹호의 일반원칙에 터잡아 날카로운 비판과 적절한 충고를 제시하는 대다수 위원들의 자세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방청석에서 회의내용을 열심히 듣고 기록하는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의 모습에서는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중요한 회의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기관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의견서 요지

이사회는 7월 29일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 의견" (Comment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을 문건으로 채택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 문서의 번호는 CCPR/C/79/Add.6이며 1992. 7. 29. 이사회 회의 제45차 회기 중

1173회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머리말

이사회는 정부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고 잘 정리된 데 사의를 표한다. 정부보고서는 법령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인권규약의 시행에 관한 실제 사정과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장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긍정적 측면

최근 한국이 인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며 인권규약 제41조에 규정된 선언을 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현재 한국이 인권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가입유보조치의 철회를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주목한다. 법률구조의 제공에 있어, 또한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있었다. 현재는 내부의 정치적 반대가 종전보다 더 잘 용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구로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규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남북한의 관계는 여전히 한국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인 듯하다. 최근의 남북합의서의 채택은 긍정적인 진전인 듯하나, 한국정부는 아직도 불안과 무력도발의 위협이 실재하므로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주요한 관심사

- ① 한국의 헌법은 인권규약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조항은 인권규약 제2조 및 제26조에 비해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들은 헌법 제37조에 따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경시될 수 없다는 주장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다.
- ② 국가보안법의 지속적인 적용에 관해 이사회는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특수상황이라는 영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이사회는 정상적인 법률, 즉 일반형벌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몇몇 규정은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참으로 국가안보에 해롭다고 할 수 없는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광범위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다.
- ③ 이사회는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 행사 정도 및 특히 북한방문과 관련된 인권규약 제12조의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이사

회는 재소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들이 정상적인 의미의 교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강요행위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인권규약의 규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간첩의 정의와 관련된 광범위한 국가기밀의 정의 또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④ 이사회는 여전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수가 많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강도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규약 제6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기소 전의 긴 조사기간은 인권규약 제9조 제3항에 위반된다. 그밖의 관심분야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지속적인 투옥, 여성에 대한 차별, 인권규약 제15조가 다루고 있는 형벌원칙 및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 등이다.

제안과 권고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인권의 존중에 관한 긍정적인 발전을 고려해 이사회는 한국이 그의 입법을 인권규약에 더욱 합치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줄이고 형법을 인권규약 제15조에 더욱 합치하도록 하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인권규약 제14조에 대한 광범위한 유보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인권규약과 그 선택의정서를 국민에게 잘 알리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맺음말

이번 회의에서 이사회의 위원들은 대체로 그동안 나라 안팎의 단체들이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해 지적해온 사항들이 단순히 편파적인 주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위원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및 사상전향제도, 사형문제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진지하고 예리한 비판과 함께 우정어린 권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보인 정부대표들의 자세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나 실망스러웠다. 정부가 정식 가입한 인권규약의 규범력을 승인하고 그 일반원칙

에 따라 국내법규와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도리어 인권규약을 한국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해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정부와 법원,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가 남·북의 긴장이라는 현실상황에 압도되어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를 긍정한 뒤 그것에 맞추어 헌법을 해석하는 본말전도 행위를 해온 것이 생각났다. 정부는 이런 낡은 관행을 국제무대에서까지 확장하려고 했지만 이사회에 의해 단호히 거부된 것이다.

민변과 한교협이 작성한 반박보고서는 이번 회의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대표의 발언내용이 정부보고서에 비해 훨씬 충실해진 것은 반박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예컨대 반박보고서는 정부보고서가 인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는데 정부대표는 이번 회의의 첫날 그러한 사항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위원들이 한국의 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도 반박보고서가 도움이 된 듯하다. 몇몇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반박보고서를 꺼내놓고 참조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위원들이 권고하거나 시사한 사항들을 우리의 법체계와 그 운용과정에 반영해 우리나라의 인권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위원들의 발언은 그 마디마디가 주옥 같은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언급된 바를 폭넓게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전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회의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재야인권단체 사이에 그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측은 이사회가 제6공화국 이후의 민주화에 따른 인권신장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위원 중 일부는 여러가지 지엽적인 질문과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¹³⁾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할 수 없지만 정부가 비록 '지엽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믿는다. 특히 이사회의 공식의견에서 제기된 제안과 권고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인권규약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서도 인권선진국임을 위장하기 위해 인권규약에 가입했다는 나라 안팎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며 국제노동기구의 각종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13) 유국현,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한국 인권」, 『법률신문』 1992년 8월 20일자 및 8월 24일자 참조

하고 있고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부대표의 발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시바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현실이 서로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과 인권의 일반원칙 또는 발전방향 이미 확립되어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경제체제가 다른 나라들에서 온 위원들은 그러한 일반원칙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분석하고 논평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얻은 값진 교훈은, 현실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세계사의 발전방향에서 벗어난 시대착오적 발상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이다. [변호사]

제네바에 펼쳐진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의 강제 종군위안부문제 대책활동

신혜수

1992년 8월 9일부터 23일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서 4명의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하여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고 돌아왔다. 필자가 혼자 먼저 출발하고, 일주일 뒤인 8월 16일에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정진성 정신대연구회회장, 그리고 실제 피해자인 황금주 할머니, 이렇게 세 분이 합류하였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처음 참석하는 것이라 그 구조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준비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떠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한다. 2주간의 짧은 일정 동안에 우리 대표단은 '인권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공식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주재 기자단과의 회견, 그리고 민간단체들을 초청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신대문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특히 배상문제 특별조사관과의 회합에서 그를 한국으로 초청하였는데, 북한을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긴 하였지만, 그의 수락을 받아냈다. 이는 앞으로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정대협에서 정신대문제를 국제기구에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초부터이다. 정신대문제를 알리는 문건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사례, 재판 소장 등

을 번역한 것과 함께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제출하였다. 동시에 정대협 공동대표인 이효재 교수가 2월에 미국 뉴욕으로 가서 유엔의 관계 실무자를 만나고 정신대문제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다. 또한 유엔에서 발언할 수 있는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가진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정신대문제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였고, 다른 많은 단체에 편지와 자료를 보낸 바 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구조

이번에 우리가 참석한 유엔 소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소수민족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제44차 회의로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의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속한 소위원회이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2월, 그리고 소위원회는 매년 8월에 모인다. 유엔의 모든 기구가 다 비슷한 구조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과,¹⁾ 유엔의 회원국가, 유엔의 다른 기구, 전문기구,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참석한다.

현재 인권소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26명(교체위원은 인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24명)이다.²⁾ 아프리카에서 7명, 중남미 5명, 서구 6명, 동구 3명, 그리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요르단의 5명이다. 전체 26명 중 여성위원은 7명이다(미국, 영국, 나이지리아, 그리스, 콜롬비아, 알제리, 모로코).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첫번째 의제로 위원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의장과, 1인 또는 그 이상의 부의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임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제44차 회의의 의장은 쿠바의 위원인 마티네즈씨(Mr. Miguel Alfonso Martinez)가 선출되었다. 두번째 의제로 회의순서를 채택하고 나면 실제 인권문제에 관련된 각종 의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회의장의 구조는 의장단이 앉은 연단이 정면에 있고, 의석이 반원형으로

1) 위원(member)들은 전문가들로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 위원이 미국의 입장에서 쿠바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쿠바 국가대표의 심한 반발을 받았다. 위원에 덧붙여 같은 나라 사람으로 교체위원(Alternate)을 한 사람씩 둔다.

2) 26명 중 13명은 1992년에, 나머지 반은 1994년에 임기가 끝난다.

배열되어 있다. 맨 안쪽 줄이 위원석, 그다음의 여러 줄이 불어의 알파벳순으로 회원국가 대표들 좌석이고,³⁾ 그다음에 ILO, WHO, IMF 등과 같은 전문기구 및 다른 국제기구로 배열되어 있다. 민간단체 대표들은 맨 끝의 두 줄에 앉도록 되어 있다. 모든 발언은 유엔 공식언어(영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만 하게 되어 있고, 이어폰을 통해서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어폰은 양쪽 귀에 걸도록 되어 있고, 책상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돌려서 원하는 언어를 고르게 되어 있다.

3시간 동안 휴식없이 계속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의장이 사회를 부의장에게 넘기기도 한다. 의장이 여자로 바뀐 것을 모르고 발언자가 의장을 Mr. Chairman으로 호칭했다가 “아, 의장이 바뀐 줄 몰랐습니다. Mme. Chairman이군요”하는 바람에 모두 웃은 적도 있었다. 3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는 사람은 드물고, 위원들도 중간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자리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대단히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회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는데, 필요할 때는 연장해서 저녁 9시까지 하기도 했다. 매일 매일의 회의 순서 및 회의에 관련된 다른 자료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의 세 가지로 제공되며, 원하는 대로 모두 문서실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전날의 진행내용이 요약되어 보도자료(press release)로 회의장 뒤편에 있는 책상에 놓여 있으므로 이것도 아무나 집어갈 수 있다. 회의 내용은 또 모든 발언이 요약되어 유엔의 공식문서로 발간되는데, 우리의 발언도 수록되었다.⁴⁾

회의는 한 의제가 상정될 때마다 대개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에

3) 한국과 북한대표부는 좌석 하나만 걸러서 배치되어 있다. 정신대문제를 가지고 남·북한 대표부가 모두 발언을 한 데다가 의석까지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혹시 두 나라가 싸고 한다는 인상을 일본이 받을까봐 한국대표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4) 유엔의 모든 공식문서에는 번호가 매겨진다. 예를 들면, 8월 10일의 내 발언이 요약 수록된 회의기록은 E/CN.4/Sub.2/1992/SR.7로 표시되어 8월 13일자로 발간되었다. 요약문서는 회의(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한 회의이므로 하루에 두 번씩(별도 발간되는데, 원본은 영어와 불어로 번갈아 발간된다. 즉, 8월 10일 오전의 8번째 회의 요약은 불어로, 오후의 9번째 회의는 영어로 발간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소위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을 수록한 보고서도 2개월 정도 후에 발간된다.

대한 사무국 담당관(secretary)의 소개가 있을 후, 전문위원의 발언, 국가대표의 발언, 국제기구 대표의 발언, 그리고 민간단체의 발언순으로 진행된다. 발언시간은 전문위원이 35분, 국가대표는 20분, 그리고 민간단체 대표는 10분까지만 허용된다. 이 중 전문위원은 어느 때든지 발언할 수 있으며, 한 위원이 다시 발언할 때는 두번째 허용시간이 줄어든다. 민간단체는 한 의제에 대해 한 단체가 한 번씩만 발언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격(consultative status)을 얻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대협의 경우 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원해주는 세계교회협의회 이름 빌어 그 대표로 참석하였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모든 전문위원, 국가대표, 민간단체대표들의 이름이 수록된 명부⁵⁾에도 우리들의 이름은 세계교회협의회 의 참가자로 기재되어 있다. 민간단체에서 회의에 참석할 대표들의 명단을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름표를 만들어주며, 유엔에 드나들 때는 항상 이 이름표를 부착해야 한다. 의제에 대한 발언신청을 회의장 안에 배치된 실무진에게 마감기간 내에만 하면 순서대로 접수되어 10분간 발언기회를 얻게 된다.

발언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개인의 이름을 전혀 내세우거나 거론하지 않고 최대한 형식적인 예의를 갖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지칭할 때 "의장(Mr. 혹은 Mme. Chairperson)", "××국가 대표(the distinguished representative of ××)" 등으로 표현한다. 또한 자기주장을 펼 때도 전문위원 이외에는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국가나 단체의 이름으로 말한다.

발언순서가 되어 의장이 단체 이름을 호명하면, 의장을 안심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손을 들어 표시한 후, 좌석의 책상에 붙어 있는 흰 단추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면서 마이크가 작동하게 된다. 민간단체의 발언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원고내용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영문으로 single space로 해서 3페이지 이내).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이 발언하려고 원고를 막 빨리 읽었는데, 통역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내는 것을 보았다.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대표들이 발언한 원고를 얻고 싶을 때는 발언 직후 발언자의 좌석으로 바로 가서 원고를 입수한다. 따라서 어떤 발언에 대한 관심도나 지지의 정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고를 받

5) 이 명부의 자료번호는 E/CN.4/Sub.2/1992/Misc.2. GE.92-13239

아갔느냐로 가능되기도 한다.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때는 의장이 회의를 방해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기도 한다.

인권소위원회에 제기된 정신대문제

인권소위원회가 다루는 20개 가까운 의제들⁶⁾ 중에서 정신대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관련의제는 의제 16: "현대형 노예제(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와 의제 4⁷⁾ 중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Compensation to the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이었다. 의제 16을 위해서는 소위원회 전문위원 26명 중에서 5명으로 '실무회의(Working Group)'⁸⁾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회의'의 의장 겸 보고자는 요르단의 알카소네씨(Mr. Awn Shawkat Al-Khasawneh)이다. 실무회의는 소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5월 4~13일에 이미 모였고, 그 보고서가 이번 소위원회에 제출되었다(문서번호 E/CN.4/Sub.2/1992/34).

이 '실무회의' 때 우리의 정신대문제는 이미 제기되었다.⁹⁾ 이효재 공동대표가 미국에서 접촉했던 단체 중의 하나인 '여성의 인신매매 반대 국제연합

6) 여기서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개만 들면, "인종차별 철폐", "신국제경제질서와 인권의 신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현", "수감자의 권리", "인권과 과학·기술의 발달" 등등으로 다양하다.

7) 의제 4는 "인권소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온 분야의 진전상태에 대한 개관(Review of Further Developments in Fields with Which the Sub-Commission has been Concerned)"으로서 모두 4개 분야를 포함한다. 즉,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배상", "인권과 환경",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 등이다.

8)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는 1974년 5월 17일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되었다.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회의' 이외에도 3개의 실무회의가 더 있다. 즉, '통신에 관한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원주민에 관한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로서 1991년 소위원회에서 설치된 '소위원회의 일의 방법에 관한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methods of work of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이다. 이 4개의 '실무회의'들은 모두 이번 인권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5월, 또는 7월에 4일~12일간의 회의를 했다.

9) 1989~1991년까지의 3년 동안 '실무회의'에서 다룬 중요 업무가 1988년의 인권소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1989년에는 "어린이 매매, 어린이 매춘 및 어린이 포르노의 방지"문제, 1990년은 "어린이 노동착취와 빛으로 팔아넘기는 것의 폐지", 그리고 1991년에는 "인신매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을 통하여 '국제 철폐연맹(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이라는 단체에 의해 정신대 문제가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의 문제로 거론되었다. 또한 일본이 전후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일본인 도즈카 변호사가 '국제교육발전기구(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Inc.)'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정신대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렇게 정신대문제가 이미 '실무회의'에서 거론된 상태였기 때문에 인권소위원회에서 정신대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반 조성은 이미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내가 8월 9일에 갔을 때는 이미 회의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지난 후였다.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8월 3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중요한 회의들이 겹쳐 일정을 잡기가 매우 복잡하였다. 정대협이 주최하는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8월 10~11일에 서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고, 또 이효재 공동대표의 평양방문이 9월 3일로 잡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단기간만 머물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의제 16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토의는 회의 초기 이틀간으로 일정이 잡혀,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논의가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운이 좋게 민간단체들이 요청하여 연장이 되어 있었다. 그동안 이미 '국제교육발전기구', '국제철폐연맹', 한국정부, 북한정부에서 정신대문제에 대해 발언하였다. 남·북한 모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내가 도착한 다음날인 8월 10일 월요일 오전회의에서 의제 16에 대한 토의가 끝났는데,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미리 발원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귀중한 발언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신대,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정대협에서 신고전화를 설치한 일, 신고한 피해자들을 통해 밝혀낸 정신대의 실상, 그리고 정신대의 강제동원에 일본정부와 군부가 직접 관련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인권소위원회에서 정신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단을 설치해줄 것 등 5개항을 요청하였다.

발언이 끝나자 원고를 얻으러 내 자리로 온 20여 명의 국가, 민간단체 대표들에게 다른 자료까지 합해서 나눠주고, 원고를 더 복사한 후, 도즈카 변호사의 안내로 유엔주재 언론사들의 사무실을 한 차례 돌았다. AP, AFP

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 방지"였다. 따라서 정신대문제는 이 중 세번째에 해당한다.

등 사세가 큰 언론사들은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대부분은 2개의 프레스룸에 책상을 하나씩 놓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한국 언론사들은 하나도 없어서 국제사회에 소극적인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마침 AP통신의 여기자가 방에 있어서 회의장까지 같이 와 우리 자료를 주었다. 그리고 통신실로 가서 미리 연락이 되어 있던 브뤼셀주재 한국연합통신 특파원에게 발언원고를 팩스로 보냈다. 그 특파원과는 제네바에 있는 동안 자주 연락하여 우리의 유엔에서의 활동을 한국에 알리는 통로가 되었다. 8월 14일에 의제 16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도 그 내용을 팩스로 보내어 이것이 한국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일본은 의제 16에 대한 토의의 말미에 공식답변¹⁰⁾을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일본정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즉, 이미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사죄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1965년 6월의 한일경협으로 모두 해결되었다. 또 북한과는 외교정상화 회담에서 배상문제를 논의중이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일본정부가 그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느낌을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연구하겠다"고 하였다.

의제 16에 대한 이 모든 논의에 대해 인권소위원회는 14일에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중 정신대문제에 관해서는 "전쟁중의 매춘에 관해 소위원회와 실무회의가 입수한 모든 정보를 배상문제 담당 특별조사관에게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안은 앞에서 언급한 '실무회의 보고서'에 이미 제안되어 있었는데, 한 문구('실무회의')만 첨가하여 실무회의 의장 알카소네씨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은 결의안이 논의되기 전에 도즈카 변호사가 알카소네씨에게 제안하여 동의를 얻고 난 뒤, 도즈카 변호사와 내가 '실무회의' 위원들과 다른 위원들에게도 미리 설명하여 그대로 되었다. 따라서 특정 의제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들과 어떻게 로비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신대 문제의 경우 모든 것이 '현대형노예제에 관한 실무회의'에서 기초가 잡히므로 실무회의의 방향을 잘 잡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주간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틈틈이 다음주에 개최할 기자회견과 민간단체 공청회를 준비하였다.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유엔주재 언론사협회(Association of the UN Press)의 회장과 의논하여 날짜, 시간을 정하고 그

10)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가대표가 답변하는 것을 "right to reply"라고 표현한다.

곳 프레스룸에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캠프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중국인 그룹이 그 주간에 개최하여 참석하였는데, 우리의 행사와 비슷한 형식이어서, 미리 본 것이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청회의 홍보를 위해서는 세계교회협의회(세계교회협의회)의 도움으로 안내전단 500매를 칼라종이에 인쇄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주었다. 그리고 신관으로 가는 지하통로에 있는 민간단체 방(NGOs Lounge)에 들러 단체별 우편함에 한 장씩 넣었다.¹¹⁾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민간단체 인권문제 조직(APTF-HR : Asia-Pacific Task Force on Human Rights)에서 주최한 수요 브리핑에 참석하여 우리의 행사에 대한 광고도 하였다.

공청회 안내전단은 민간단체 대표들에게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과 국가대표들에게도 배포하였다. 전문위원들은 회의장 연단 뒤쪽의 문 밖에 개인 우편함이 쪽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는데, 국가대표들이 문제였다. 원래 회의장 안에서 문건을 배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친해진 미국인 성공회 대표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가의 이름을 오전에 다 적어두었다가, 오후 3시에 다시 회의가 시작하기 15분 전쯤, 즉 사람들이 없을 때 미리 들어가 책상 위에 놓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사회당 모토오카 의원과의 식사가 늦어져서 3시 5분 전에야 회의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서둘러 내가 적어두었던 국가명단을 찾아가면서 쪽 책상 위에 놓았다. 명단에 없더라도 누가 앉아있으면 주곤 하였는데, 거의 다 끝날 무렵 걸리고 말았다. 어떤 남자가 “이런 행동이 허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한마디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권소위원회의 실무진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거의 다 돌렸을 때여서 별 지장은 없었다. 일본대표부에게는 전단이 나오자마자 도츠카 변호사가 바로 주었는데, 내가 그 전단을 돌릴 때 일본대표부 자리를 지나면서 “이것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8월 16일 일요일에 이효재 선생님과 정진성 교수, 황금주 할머니가 도착한 후, 17일에는 모두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다음날 있을 행사에 대비한 준비로 시간을 보냈다. 8월 18일 오전 11시 15분에는 유엔주재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¹²⁾ 미국 ABC와 일본의 지지통신, 교토통신

11) 그 방은 유엔에 등록된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 안에는 복사기 한 대와 타자기가 4대 정도 있었는데, 타자기는 너무 낡고 리본도 없어서 한번 사용하려고 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등에서 1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하였다. 황금주 할머니가 피해당사자로서 증언하는 내용을 내가 통역하고, 정진성교수가 정신대실상에 대한 전체적 설명, 그리고 이효재 교수가 정대협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온 한국인 강제노동 실태조사단 팀이 우리 다음에 연달아 회견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5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질의 응답까지 합쳐 우리가 30분 정도를 소요하였다. 황금주 할머니는 증언시간이 너무 짧아 속이 상해서 눈물까지 흘렸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ABC기자의 요청으로 따로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였다.

연이어 민간단체 공청회를 인권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회의실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개최하였는데,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교육발전기구’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형식을 택하였다. 점심시간 두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50명 분의 점심으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주문하여 준비하였다. 음료수를 따라주고 할 웨이터 두 사람도 같이 왔다. 규칙상 음식을 회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장 문밖에 음식테이블을 차려놓고 먹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점심만 공짜로 먹고 정작 우리 공청회에는 참석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점심비용은 Fr. 750(한화 약 465,000원)으로, 두 단체가 반씩 부담하였다.

공청회는 100명 가까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와 북한, 쿠바, 필리핀 대표부, 그리고 매스컴 기자 등도 참석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보여주었다. 강제노동실태 조사단의 일원인 일본사회당 모토오카 의원의 간단한 인사말로 시작해서, 강제노동과 정신대문제를 담은 비디오관람 그리고 증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기자회견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조사단 쪽은 강제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당사자인 황금주 할머니가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직접(나의 통역을 거치긴 하였지만) 증언한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재일교포팀이 제기한 강제노동문제는 상대적으로 호응을 얻지 못한 감이 있다. 이렇게 큰 두 행사를 하루에 치른 후, 남은 일은 의제 4인 배상문제에 대한 토의였다.

의제 4를 위해서는 인권소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네덜

12) 이 회견에는 주(駐)유엔 언론사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한국대표부 사람들이 진행사항을 보고싶어 모르는 척하고 참석하였다가 언론사협회에서 안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퇴장하였다.

란드의 국제법학자 반 보벤 교수¹³⁾를 1989년에 배상문제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올해 세번째 보고서가 제출되었다.¹⁴⁾ 내년이 마지막 보고서가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정신대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배상문제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8월 20일에는 점심에 그를 초청하여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지원을 호소하였다. 그가 1992년 12월에 일본에 올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를 한국으로 초청하였다. 처음에는 일정이 바쁘다고 하면서 재차 거절하였지만 간절히 청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단, 남·북한에 공정하기 위해서 북한도 방문하는 조건하에 한국에 오겠다는 단서를 붙였다.

의제 4에 대한 토론이 8월 21일 시작될 때, 반 보벤 교수는 배상문제 특별조사관으로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보고의 말미에 특별히 한국의 정신대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회의'의 보고서를 주목해보았으며, 그 '실무회의'에서는 한국여성들이 납치되거나 강제연행되어 일본황군의 성적 노예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실무회의'의 제안사항 중에는 그 희생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미 인권소위에서 결의한 대로 전쟁중의 매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것이며 이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민간단체로부터 축하를 많이 받았다.

13) 반 보벤 교수는 1977~1982년까지 유엔 인권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그 후 1983년부터 지금까지 마스트리트의 림버그대학 국제법교수로 있으면서 인권소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내고, 인종차별 금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인권문제 전문가이다.

14) 1990년의 첫 보고서(Preliminary Report ; E/CN.4/Sub.2/1990/10)에서는 배상문제에 관한 국제적 규범, 특히 인권에 관한 규범 및 배상의 권리, 그 기준 등을 다루었다. 1990년의 두번째 보고서(Progress Report ; E/CN.4/Sub.2/1991/7)에서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인종차별금지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등의 국제인권기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정해왔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를, 그리고 이번의 세번째 보고서(Second Progress Report ; E/CN.4/Sub.2/1992/8)에서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최근 자료의 개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루마니아의 이전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배상에 대한 ILO의 문건 개관 및 그에 대한 의견, 유럽조약(European Convention)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의 배상문제, 전범자에 대한 재판문제, 그리고 부록으로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의 림버그대학(반 보벤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에서 1992년 3월 11~14일에 열렸던 배상문제에 관한 회의의 결론을 담고 있다.

이효재 교수는 배상문제에 대한 발언에서 정신대문제가 여성을 성의 노예화한 일본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일본은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그들은 인도에 관한 죄, 노예방지에 대한 규약, 일본이 1932년에 비준한 강제노동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로정신대의 문제도 제기하여 강제지축을 당한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저축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에 대한 배상, 저축금의 반환 등의 문제를 일본정부에 촉구할 것을 소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효재 공동대표의 발언과 관련하여 가슴졸인 에피소드가 있다. 우리는 처음에 나온 소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맞추어 의제 4에 대한 토의 후 8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귀국하도록 날짜를 정해 놓았는데 일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었다. 금요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주 월요일은 비공개로 위원들끼리 토의하도록 되어 있었고, 발언해야 하는 이효재 교수는 평양토론회 때문에 23일 일요일까지 꼭 귀국해야 한다는 전갈이 한국에서 와 있는 상태고, 귀국하는 비행기편은 1주일에 화요일, 토요일 두 번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우리의 발언순서는 민간단체중 6번째로 접수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 소위원회 실무진에게 부탁하고 또 첫번째로 발언하게 되어 있는 단체의 양해를 얻어 순서를 첫번째로 바꾸었다. 그런데 막상 금요일 오후 3시에 의제 4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전문위원들이 자꾸 발언을 하는 바람에 오후 6시 폐회 전에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무척 가슴을 졸였다. 결국 오후 5시 15분에 민간단체 순서가 되어 첫번째로 발언을 무사히 끝내고 극도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정신대문제 해결에 따른 국제법상의 쟁점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식민지 통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배상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대협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 전공 교수들과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정신대문제는 이

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왔다. 즉, 한일협정 당시에는 정신대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정신대문제는 새롭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는 정신대가 “인도에 관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이며 국제적 관례에 의해서도 “노예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lavery)”에 대한 침해이며, 또한 일본이 1932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규약(Forced Labour Convention 1930)”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왔다.

지금까지 우리의 논지는 모두 일본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용의 문제였고, 실제 배상이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된 어떤 조약도 개인의 권리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정신대 피해자를 포함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 지금 일본 동경지방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으나, 과거 대만의 예로 볼 때 15년이나 걸렸던 재판에서 패소한 만큼 일본의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이런 시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반 보벤 교수의 1992년 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된 마스트리트 회의의 내용은¹⁵⁾ 앞으로 정신대 피해자의 배상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배상(reparation)을 인권침해의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물질적, 비물질적인— 조치로 본다. 보상(compensation)이나 원상회복(restitution), 재활(rehabilitation)은 모두 배상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⁶⁾ 배상의 한 형태인 보상은 현금 또는 물질로 주어지며, 후자의 경우 의료, 취업, 주택, 교

15) Conclusions of the Maastricht Conference on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Maastricht, Netherlands, 11~14 March 1992). E/CN.4/Sub.2/1992/8, pp.21~25에 수록되어 있다.

16)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은 불법이 행해졌을 때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것(예를 들면, 폭행이나 불법구금 등)으로,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농토수용 등)로 인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reparation과 compensation을 이와 같은 구별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더 적합한 번역용어를 찾아야 할 것이다.

육, 토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이다.

비물질적인 배상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 ① 사실의 규명 및 진실을 완전히, 그리고 모두에게 알리는 일
- ②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
- ③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
- ④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을 보호하는 일
- ⑤ 피해자를 위한 추모제를 열고 경의를 표하는 일
- ⑥ 피해자를 보살피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지원하며 피해자를 돕는 요원들을 훈련하는 일
- ⑦ 다음의 방법 등으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일
 - ㉠ 보안군을, 특히 민간의 지휘하에 둬으로써, 통제하는 일
 - ㉡ 군사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
 - ㉢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일
 - ㉣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 ㉤ 구금시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 ㉥ 보안군 및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일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 요구해온 여러가지가 위의 물질적, 비물질적 배상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정신대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 사실을 일본교과서에 수록하도록 하는 일, 모든 역사적 증거의 전시 및 보존,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 그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등이 위의 목록에 모두 들어있는 것이다.

마스트리트 회의에서는 이에 덧붙여, 유엔이 배상방법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배상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치에 도츠카 변호사도 제창하고 있다. 즉,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만이 재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간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제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밑에 설치하여 피해자 개인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점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정신대의 경우 신분을 드러낸 피해

자만이 해당되게 되고, 이는 10만~20만 명으로 추산되어 온 전체 피해자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비물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면서, 물질적 배상을 얻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인 것 같다.

앞으로 남은 문제들

정신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크게 네 방향으로 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에 대한 전략, 두 번째는 국내에서의 과제, 세 번째는 아시아의 다른 피해국들과의 연대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엔 등 국제여론의 형성이다.

첫 번째의 대(對)일본전략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일본정부에 대한 성명서, 질의서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도록 하는 것에 덧붙여, 앞으로는 일본 내의 여론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대협이 조사를 위한 여행, 추모행사 등을 하고, 또 일본 여성들의 초청을 받아 정신대 할머니와 동행하기도 하고 해서 증언회, 강연회 등에서 발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 부문의 사람들이 일본인들과 연대하여 일본 내 여론을 우리의 입장에 맞게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들은 일본의 변호사들과, 여성단체는 일본 여성단체들과, 또 교수들은 일본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일본의 우익적 여론을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일본 내에는 양심적인 인사들이 적잖이 있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룹들이 존재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정신대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층이 더욱 넓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 내에서의 시급한 과제는 모금이다. 일본정부는 정신대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면 될수록 망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 될 입장에 놓여있다. 그래서 최근 보도된 대로, 일본 적십자사에 기금을 조성하여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¹⁷⁾

17) 이 교섭을 위해 일본 외무성의 이케다 국장이 10월 11~13일 내한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이 제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선거 전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 돈을 받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그르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돈을 받으면 정신대는 성적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매춘하러 간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대 할머니들의 사정은 그 돈을 뿌리치지 못할 형편이다. 할머니들 중에는 극빈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정신대의 상처로 인해 건강도 엉망인 분들이 대부분이다. 반 보벤 박사와의 오찬회동시 그가 황금주 할머니에게 정신대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배상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느냐고 물었을 때, 황금주 할머니는 “나 자신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할머니들 중에는 배상을 더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대답하였다.

최근에는 일본인들 중에 할머니들에게 일본에서 전화하거나 또 찾아와서 여러가지 말로 부추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200만 엔을 받으려면 일본에 와서 시위를 해라”거나 “왜 아시아 다른 나라까지 끌어들여 문제를 확대시키느냐?, 그러면 돈 받는 것이 늦어진다”는 식의 말과, 심지어는 정대협과 할머니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대협에서는 정신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초조한 이 할머니들의 말년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범국민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이 할머니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일본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만 1965년의 한일협정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정대협이 8월에 서울에서 개최했던 ‘아시아 연대회의’의 후속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의 과제이다. 정신대 피해자가 직접 나타난 다른 아시아 국가는 현재까지 북한과 대만과 필리핀이다. 북한에는 130여명의 정신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20명 정도만 신분을 드러내고 나머지는 알려지기를 꺼린다고 한다. 1992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평야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시 정신대 피해자 4명의 증언을 들었으며, 이들의 증언내용은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된 바 있다. 대만은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왔으나 이 중 분명하게 확인된 13명에 대한 분석자료를 지난 연대회의에서 발표하였고, 필리핀의 경우 공개된 할머니 한 사람 이외에 7~8명이 더 나타났으나 아직은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도 한국의 예에 따라 일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법원의 이름, 변호사의 명단, 우리의 요구, 관련 자료 등을 정대협에 요청해와서 보내주었다.

한국 이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성운동이 강한 필리핀에서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펼쳐져왔다. 피해자가 발굴되기 전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였고,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부를 통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들 나라에서 피해자가 밝혀진 것 자체가 한국에서 벌인 운동의 여파이고, 한국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피해당사국과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대처해나가면서, 직접 정신대 피해자는 없지만 일본 군국주의로 인한 피해를 본 다른 아시아 국가의 지지도 획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엔 등을 비롯한 국제여론의 호응을 받아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배상문제 특별조사관 반 보벤 박사의 한국방문 조사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는 1993년의 제45차 인권소위원회에 배상문제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를 내기로 되어 있다. 도즈카 변호사의 회담대로, 그가 일본에 관해 별도의 보고서를 낸다면 이는 큰 성공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내년 2월의 인권위원회에서 이번 소위원회의 결의안이 논의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작업하는 일 등, 유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계속해나가는 일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적어도 1~2년은 계속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회의',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 담당 특별 보좌관' 이외에도, 인권위원회 내에서 인종차별이나 여성문제를 다루는 분과의 위원들과 접촉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에서 영향력 있는 민간단체들¹⁸⁾과 교섭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해 발언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할 때 회의장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접촉하여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유엔에서의 일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

18) 이번에 우리를 도와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와 함께, 세계법조인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도 영향력 있는 민간단체라고 한다.

야 되는 것 같다. 이번에 인권소위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5년 이상씩 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모든 것이 속전속결인 우리 풍토에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으나, 앞으로 점점 세계가 좁아지는 추세에서 국제여론의 영향력은 더 커지리라고 믿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의 도움만 받는 지금까지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인권 소위원회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우리에게 대표권을 주고 황금주 할머니의 왕복여비와 체재비를 부담하는 등 우리 활동을 모든 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일본인인 도즈카 변호사는 한국사람으로 오인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진작부터 활동하였고, 이번에도 유엔에 생소한 우리들에게 반 보벤 박사를 비롯하여 여러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기자회견이나 공청회 개최를 주선해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 거대한 건물 속을 헤매며 생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익히느라고 몇 배나 고생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우리 한국의 유엔에서의 위치와 관련하여 긍지와 동시에 느꼈던 안타까움이다. 중국에서의 강제노동캠프나 인도네시아의 동(東)티무르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 여러 번 비판이 나오는 것을 들으며,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한번도 한국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역설적인 의미에서의 긍지이다. 아직도 양심수가 많지만 과거 유신시절이나 제5공화국 때와 같은 무지막지한 인권 침해는 훨씬 덜한 데서, 그동안 그래도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진척된 데 대해 감사하였다. 우리 정부의 외무부와 주(駐)제네바 대표부로부터도 여러가지 도움을 받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대표부와는 그저 정중한 인사말밖에 나누지 못하고, 특히 일본에서 온 같은 동포들이 조총련계라 하여 접촉을 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비극적인 분단 현실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정신대문제야 말로 남·북한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도 말이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호전되어 국제회의에서도 자유롭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해본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협력위원장]

특집 : 국제시대의 인권운동

한국·일본의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토론회 보고서

박 찬 운

1. 총괄개요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일본의 민주법률가협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일본의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토론회"가 1992년 9월 26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참가자들 일부는 토론회가 끝난 9월 27일 경주관광에 나서 양국 변호사간의 우의를 다졌다. 이 토론회는 한·일 양국의 진보적 법률가(변호사)들이 최초로 양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공식적이고도 본격적인 토론을 하였다는 데 큰 뜻을 지닌다 할 것이다.

민변이 이번 공동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1991년 9월 동경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법률가회의(일명 COLAP II)에 참가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진보적 변호사들과 교류하게 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즉 민변은 1991년 9월의 COLAP II에 참가하기 전인 1990년 11월 동경 예비회의에 천정배 변호사가 참가하였는데(이때 민주법학연구회의 임재홍, 이창호씨도 함께 참가), 아마도 이 모임이 민주(진보)적 법률가들의 국제교류로서는 최초라고 생각된다. 뒤이어 1991년 5월 25~26일 민변 제4차 정기총회가 서울교육문화회관

에서 열렸을 때 COLAP II 실행위 소속 일본측 변호사 후지모토(藤本正), 아쓰사와(梓澤和幸), 다나카(田中重仁), 구와하라(桑原有明), 와타루(濟水勉), 하야시(林和男) 변호사 등이 참가하여 "한국·일본의 진보적 변호사 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내용으로 간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뒤 1991년 9월 26~30일 동경에서 열린 COLAP II에 황인철 변호사(당시 대표간사)를 비롯하여 19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21개국 및 몇몇 국제기구에서 온 500여 명의 법률가(변호사, 교수 등)가 참석하였는데 민변의 참가인원은 개최국인 일본을 제외하고는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진보적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심이 많은 법률가였고, 회의내용 또한 국제평화·환경 및 정치적, 시민적 자유 등과 관련된 제반 인권문제를 다루었다. 민변의 COLAP II 참가는 민변활동의 지평을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평가와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외국의 법률가, 특히 일본의 변호사들과 교류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COLAP II를 통해 알게 된 민변과 일본의 법률가들은 그 뒤에도 연락관계를 유지하여 1992년 2월에 아쓰사와 변호사로부터 한·일 변호사 공동토론회를 갖자는 제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 제의를 민변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1992년 3월 토론내용, 시간, 장소에 대한 가안을 만들어 일본측에 보낸바, 일본측은 1992년 4월 초 한국측 가안에 동의하고, 일본 민주법률가협회가 교류의 주체가 된다고 회신해왔다. 그러므로 이번 경주모임은 한국의 민변, 일본의 민주법률가협회가 공동주관한 세미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민주법률가협회를 소개하면 동 협회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당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1961년 민주적인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현재 회원수는 약 1,500여 명(일본변호사 총수의 약 10%)이고, 사법제도, 헌법,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및 운동을 전개하며 월1회 잡지, '법과 민주주의(法と民主主義)'를 발행하고 있다.

이번 모임은 한국민변에서 48명, 일본측에서 14명이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참가자(일본측 포함)는 1992년 9월 26일 서울에서 모여 버스 2대에 분승하여 경주까지 갔는데, 6~7시간의 지루한 여행이었지만 양국의 변호사들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우의를 다지는 한편, 이날 토론할 주제에 대하여 깊은 대화를 가졌다. 토론회는 9월 26일 오후 4시경부터 시작되었는데 먼저 민변의 홍성우 대표간사의 인사말과 후지모토 변호사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분과별 토론에 들어갔다. 분과별 토론은 같은 시간대에 3개 분과로 나누어 동시에 이루어졌다. 제1분과는 “인신구속제도”에 관하여 한국측에서는 박찬운 변호사, 일본측에서는 고이케(小池振一郎) 변호사가, 제2분과는 “노동자의 단결권”에 관하여 한국측은 김선수 변호사, 일본측은 미야사토(宮里邦雄) 변호사가, 제3분과는 “공해병과 손해배상”이란 주제로 한국측은 윤종현 변호사, 일본측은 반동(坂東克彦)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뒤이어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어 저녁식사를 한 다음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30분여 동안 전체토론이 벌어졌는데 주제는 “중군위안부와 일본의 책임”이었으며 한국측은 박승욱 변호사가, 일본측은 하야시변호사가 발제하였고 바로 이어 전체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발제 변호사들에게 워낙 많은 질문이 쏟아져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어서야 끝났다.

2. 제1분과

제1분과는 “인신구속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발제자들의 발표와 뒤이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민변측 발표자 박찬운 변호사는 「한·일구속제도 비교연구」라는 발제를 통하여 양국의 구속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측은 한·일구속제도를 개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구속사유는 그 요건이 대부분 유사하나 한·일구속제도의 기본적 차이는 체포장제도에서 나온다고 진단하였다. 즉,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금을 위하여 체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반면, 일본은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의자의 구속(拘留)을 위해서는 체포장에 의한 체포가 선행되어야 하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 한 번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한국의 영장제도 보다는 체포장 발부 단계, 구속영장(拘留狀) 발부 단계를 거쳐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일본의 영장제도가 인권보장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일본의 구속질문제도(拘留質問制度: 구속영장 발부시 법관이 체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가 바로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원형이라 설명하고, 한국에서도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다음으로 구속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설명하면서

한·일간의 제도적 차이는 약간 있지만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양국간에 이론이 없다고 진단하였다. 한국측은 최근 접견교통권과 관계하여 민변변호사들의 활약상, 즉 접견침해시 그간 민변회원이 한 준항고, 헌법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측은 구속기간, 구속장소, 구속피의자에 대한 석방제도, 위법수사와 공소제기의 효과 등 인신구속제도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제도를 분석 비판하였다. 한국측의 발표 중 일본측의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기소 전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사명에 대한 부분이었다. 형사재판이 형해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한일 양국의 공통적 현상이라는 공통인식하에 수사단계에서 변호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일본의 당변변호사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당변변호사제도와 같은 기소 전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한국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려면 어떠한 준비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본측의 조언을 부탁하였다.

한국측의 발표가 끝난 후 곧바로 일본측 고이케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다. 일본측의 발표문은 “일본의 국제인권규약실시상황”이라는 주제로 작성된 일본의 전반적 인권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이 발표문은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가 1991년 11월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40조에 기하여 일본국 정부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3회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국제인권(자유권)규약이 일본에서 실시되는 상황에 관한 보고 2」를 요약한 것이었다. 발제자인 고이케 변호사는 바로 그 보고서 작성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일본측의 발표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형사소송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적으로 크게 개선되어 고문의 절대적 금지,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부정 등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이 확정된 4건의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일본에서는 오판과 고문의 온상이 대용감옥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대용감옥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일변연의 폐지운동을 소개하였다.

셋째, 변호인은 구속질문시 입회권이 없고, 국선변호제도가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피의자 접견시 검사의 지정제도에 의해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퇴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넷째, 체포, 구금시 재판소의 감시기능 소홀로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체포나 구류에 대한 불복제도가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준항고나 구류취소제도가 있으나 인용된 예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하였다.

그외에도 일본측은 형해화되고 있는 형사재판절차와 상소심·재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일본의 제도와 현실의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특히 일본측은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입법과 관련하여 10여 년 전부터 일본정부측에서 제안한 소위 구금2법안(형사시설법안, 유치장 시설법안)의 문제점이 많아 일변연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금법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양국 발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자유토론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은 형사절차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과 답변을 하였는데 한국측에서 일본측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변호인 접견권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측에서 일본에서도 변호인 접견이 침해되었을 때 변호사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일본측은 그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고 설명하여 한·일 양국의 법률제도, 현실의 공통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였다. 인권보장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소 우월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일본에서 변호인 접견시 검사의 지정제도에 의하여 접견시간·장소가 제한되고, 접견시에는 아직도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에 투명유리로 차단된 상태에서 접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한국측을 놀라게 만들었다. 민변 변호사들은 앞으로 한국정부가 이러한 일본식 제도나 관행을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토론 결과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적 제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와 너무도 유사한 인권침해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한국측 발표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각론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특히 관심 많은 일본의 당변변호사제도에 대해서는 그 운용의 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그러나 일본측은 발표문의 원문인 일변연보고서와 당변변호사제도에 관한 책자를 한국측에 배포함으로써 우리의 요망사항을 대개는 충족시켰다).

3. 제2분과

제2분과는 “노동자의 단결권”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일본측에서 미야사토(宮里邦雄) 변호사가 「일본노동자의 권리의 현상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이어 한국측의 김진수 변호사가 「노동자의 단결권」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뒤 참가자들 사이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일본측이 발표한 위 제목의 발표문은 이번 방문단(일본민주법률가협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일본 노동변호단 소속 변호사(藤本正: 일본노동변호단 부회장, 宮里邦雄: 동 부회장, 飼良助: 동 간사장, 水口洋介: 동 상임간사)의 공동집필문이었다. 참고로 일본 노동변호사단을 소개하면 이 단체는 패전 후 설립된 노동조합의 전국적 조직인 총평의 노동쟁의사건을 맡은 변호사단체(총평 변호단)로 출발(1957년)하여 1988년 총평의 해산과 함께 명칭을 현재의 그것으로 바꾸었다. 오직 일본 내의 노동관련 사건만을 취급하며 노동관계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로서 회원 1,3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측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본 노동자들의 권리의 현상과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전후 일본의 노동계는 총평 주도하에 전투성을 발휘하며 경영주와 대항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경영자들이 노조를 기업에 종속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노조는 노사협조조합으로 성격이 변질되었다. 급기야 1989년에는 노사협조조합 성격의 ‘연합’이 결성(전체노동자수 1,200만 명 중 약 3분의 2인 800만 명)되고 총평은 해산되었다.

둘째, 일본기업의 노사협조주의는 ① 기업내 조합, ② 종신고용, ③ 연공서열형 임금이라는 세 가지 특징적 제도에 의하여 유지되어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기업에 종속의식이 강해지고 자신은 희생되어도 기업을 위해 일한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노조의 조직력은 점점 낮아지고 파업참가자는 수백만에서 수만 명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노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는 오히려 미국 노동자보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에 충성하면 생활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셋째, 일본 노동자들의 현실은 서비스산업, 과로사, 단신부임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의 노동을 뜻

하는데 50% 정도의 노동자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로사는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와 피로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연간 1만 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한다. 단신부임은 스트레스에 따른 심신장애, 부부관계 파탄, 자녀폭력·비행화 등 심각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측은 일본 노동재판 및 노동위원회의 현상과 문제점을 소개하였는데 노동사건에 관하여는 재판소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그 제도와 절차는 우리와 대부분 유사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불복에 대해서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 등의 순서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은(따라서 5심제) 우리(4심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노동판결의 경향은 1973년 최고 재판소의 공무원 파업금지 합헌판결 이후 반노동자적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한국측의 김선수 변호사가 「노동자의 단결권」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리 노동법의 문제점을 망라하여 소개한 것이며, 노동자들의 단결권의 실태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한 것이었다. 발표문의 충실함과 내용의 방대함은 일본측의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한국측의 발표문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노동법 체계와 현재의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노동법 개정운동과 1991년 ILO 가입에 따른 법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둘째, 노동법상의 노동자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위 반민주악법 규정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즉,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한 노동조합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교원의 단결권을 박탈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5조,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을 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의 해당규정,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부당한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6조, 제30조, 제34조 등 각각의 문제점, 위헌성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였다. 법규정 이외에도 노동부 등 행정관청에 의한 실질적 개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최근의 총액임금제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였다.

셋째, 한국의 노동자단결권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조직 형태에 대한 법률규정의 변천과정과 현재의 노조조직 현황을 설명하였다. 특히 조직에 대한 설명에서는 한국의 노동진영은 일반적으로 노총진영과 민주노조진영으로 나누

어진다고 설명하고, 민주노조진영으로는 전교조, 전노협, 업종회의, 연대회의 등을 열거하며 소개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자유토론이 전개되었는데, 한국이나 일본 양측은 공허노동위원회제도의 운용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측은 일본의 ILO 가입 후의 법개정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 또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와 같은 악법 규정이 일본에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본측에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ILO 가입 후 2차에 걸친 투쟁이 있었고, 제3자 개입금지 규정 같은 것은 금시초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4. 제3분과

제3분과는 “공해병과 손해배상”이라는 주제로 한국측에서 윤종현 변호사가 「한국의 공해병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고, 이어 일본측에서는 반동 변호사가 발제문 대신 간단한 메모를 발표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하여 일본의 공해피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한국측의 윤변호사는 한국의 공해병으로 그간 사건화된 두 개의 사건, 즉 1985년에 발생한 ‘온산병’과 관련된 소송사건과 1986년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발생한 ‘상봉동 진폐증’ 사건을 소개하고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측은 발표를 통하여 공해병 소송의 향후 과제로 신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유치청구의 도입, 피해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입증하기 힘든 현실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포괄적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일괄 또는 포괄청구의 시도 필요성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본측의 반동 변호사는 니이가타 미나마타병 변호단의 단장으로 지금까지 약 27년간 미나마타소송을 진행해온 공해병 소송의 전문가로 알려진 변호사라고 한다. 반동 변호사는 일본 공해소송의 간단한 경과와 공해소송의 유형(식품공해와 약품공해까지 포함), 특히 미나마타소송의 과정과 결론을 설명하였고, 슬라이드의 내용은 주로 미나마타 환자의 모습이나 공해로 파괴된 자연 등으로 공해피해를 다룬 것이었다. 슬라이드의 상영으로 한국측에게 현장감 있는 느낌을 주었으나, 반면에 당초 한국측이 기대하였던 4대 공해소송의 경

과와 특징, 그에 대한 문제점 등 법률전문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못하여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공해소송에 한발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정리된 경험을 듣고자 하였으나 일본측의 준비부족으로 불발에 그치고 만 것이다.

발표가 끝나고 자유토론이 전개되었는데 한국측 참가자들이 일본측에 질문한 내용은 공해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직업병 소송은 없었는지, 미나마타병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얼마였는지, 미나마타소송에 국가를 피고로 하여 청구한 근거는 무엇인지, 일본에도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측의 한국측에 대한 질문은 상봉동 진폐증사건에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였는지 또 그 소송의 하급심 판결에서 환경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등에 대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반동 변호사는 공해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향후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토론은 끝을 맺었다.

5. 전체토론

위의 분과토론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밤 8시부터 약 2시간 30분 가량 참가자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전체토론이 전개되었다. 주제는 “중군위안부와 일본의 책임”이었으며 먼저 일본측 하야시 변호사가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어 한국측 박승욱 변호사가 「정신대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하였다.

일본측 하야시 변호사가 먼저 중군위안부 문제가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온 것은 일본정부 및 일본국민의 책임이라면서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일본의 전후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군위안부제도의 실태를 실증자료를 토대로 설명 소개하였다. 하야시 변호사의 발표 중 참가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한국측 발표자 박승욱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중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재판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문제였다. 하야시 변호사는 배상청구권 문제는 일본국 국가배상법의 국가무책임(國家無答責)의 법리(1947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와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 모두가 국가배상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특

히 1965년 양국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소위 한일협정)의 청구권 포기조항이 난관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전후 국제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중군위안부 문제는 국제군사재판소 규정(뉘른베르크 및 동경전범재판) 등에서 인정한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내법에서 범행 당시 그 범행이 적법하다고 하였어도 여전히 위법하다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국가무책임의 법리를 비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야시 변호사는 중군위안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송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며 결국 한국과 일본 나아가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보상에 관한 특별입법을 제정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측의 박승욱 변호사는 먼저 일본의 전후보상문제와 정신대문제가 일본측에 새롭게 제기된 과정과 동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밝혀진 자료의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죄악과 책임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박변호사의 발표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일본정부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소송에서 전후배상문제는 소위 1965년 한일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이미 법적으로 끝났으며, 민법상으로도 불법행위의 시효소멸은 이미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 가능한가의 부분이었다. 박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첫째, 한일협정 체결에서 근로정신대와 중군위안부 문제는 다루어진 바 없으므로 그 배상청구권은 위 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둘째 만일 이 위 협정에 정신대에 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일본도 가입)에 의하여 최소한 청구권 포기조항은 국제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며, 더욱 동 협정의 적용범위는 국가의 배상청구권에 한정되는 것이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 나아가 소멸시효 완성문제도 1968년 국제연합에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협약이 채택되었는바, 이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일본 국내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시효완성 주장은 국제법적 견지에서도 이유없는 것이라 주장하며 일본의 배상책임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국 발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약 1시간에 걸쳐 참가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자 수가 너무 많고, 그 내용이 다양하여 도저히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치 못하게 질문 중 몇 가지만 골라 답변하는 정도로 토론을 끝내야만 했다. 질문의 내용은 일본국에 제기되어 있는 소송

의 전망, 양국 변호사가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토론을 마치면서 한국측 참가자들은 오히려 이 문제만큼은 일본측이 한국측보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왔음을 발견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6. 결론

이번 경주토론회는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한·일 진보적 변호사간의 교류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변활동의 지평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넓혀가는 일은 인권문제의 해결이 국내적인 활동만을 통해서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인 연대도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이번 모임을 정리하면서 향후의 모임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남기고자 한다.

첫째, 민변의 교류상대자로서 일본측 단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번 모임에 참가한 일본측은 일본 민주법률가협회라고는 하지만 참가변호사들의 면면은 그 소속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많은 수가 노동변호단 소속의 직함으로 소개되었고(방문단장이라고 소개된 후지모토 변호사는 노동변호단의 부회장으로 소개되었음), 또 작년 민변 정기총회에 청년법률가협회 회원으로 참석한 변호사도 있었다. 아마도 이번 일본측 방문단은 각각 일본의 민주적 법률가단체(예, 청년법률가협회, 노동변호단, 민주법률가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혼성으로 편성되어온 듯한데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일본측의 교류주체가 보다 확실해야 할 것이 요망된다.

둘째, 5~6시간의 일정으로 분과별토론, 전체토론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무리였으며, 심도있는 토론이 불가능했다. 이왕 행사로 상당한 시간을 준비한 토론회라면 이들 정도 시간을 갖고 여유있고, 심도있게 토론을 진행했다 라면 더욱 유익한 토론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

국제인권활동 전문 편편록

박 원 순

'무모' 했던 런던행

한 일 년쯤 영국에 가서 세상 견문이나 넓히고 오겠다고 했을 때 주위의 많은 분들은 "참 용기도 좋다"고들 했다. 런던까지 열여섯 시간이나 걸리는 비행기 안에서 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건 정말 무모한 일이었다. 그 복닥거리던 사무실 문을 닫아걸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던 사건과 사람들과의 인연을 모두 끊어버리고 내가 어찌자는 것인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외국사람이 오면 저만치 피해 앓을 정도로 영어 한 마디 할 줄 모르는 주제에 며칠 여행도 아니고 일 년이나 나가 버틸 생각을 했으니 이것은 분명 오만이나 만 용일 터였다. 그것은 아무런 준비없이 "겨울 얼음물에 침병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정말 런던에 정착한 지 한 달쯤 지나니 여기저기 몸이 시름시름 아파왔다. 몸살이 났다가 허리가 아팠다가 복통이 있기도 하였다. 갑자기 너무 편해지니 몸도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법정에 나갈 일도 없고 사건 당사자로부터 시달리지도 않으니 거기에 그래도 적응이 되어 있던 몸과 마음이 잠시 균형을 잃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변호사가 돈 안 벌고 어디 가느냐는 농담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아직도 공부할 게 남았느냐는 어머니의 심각한 만류의 말씀까지.

어떤 선배는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가장 중요한 역사의 국면에서 자리를 비우느냐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가 국회의원 출마할 것도 아니고 또한 어느 시기인들 중요하지 않은 국면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 말을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 있게 하였다. 국내에서 아직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동료 변호사들이나 사회개혁을 위해 분망하던 많은 사람들을 뒤로 남기고 나 혼자 여유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스스로 고민도 되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지적·실천적 고민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는 데 별로 망설임이 없었다. 동구의 몰락을 비롯하여 큰 변화의 획을 긋고 있던 세계사의 흐름 그리고 다른 사회의 현실에 대한 통찰력 없이 내가 누구를 어떻게 변론하겠는가 하는 자괴심이 깊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향해야 할 사회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자하는 열망도 컸다. 벽에 부딪친 듯한 사회의 개혁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전되어야 하는가라는 점도 당시의 내 머리를 무겁게 하고 있었다. 별로 한 일은 없지만 10여 년의 변호사생활은 그 자체로서도 지겨워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벌써 재작년 1991년 8월의 일이었다. 마음먹은 대로 런던에서 1년간 지냈는데도 처음 원했던 것을 제대로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랐고 모든 일에 역부족이었다. 그 짧은 기간에 뭘 해 보겠다는 것 자체가 과욕이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열심히 보고 듣고 느끼려 해 보았고 그것은 앞으로의 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유럽의 울망졸망한 국가들의 살림살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오늘날 국가통합의 경지에까지 와 있는 유럽의 정치·사회·문화 현실을 여행과 책들을 통하여 그 겹겹이라도 더듬어볼 수 있었던 것은 적잖은 행복이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에 체재했던 1년 동안 내가 가졌던 국제적인 인권운동과의 접촉면만을 스케치해보려 한다. 운 좋게도 나는 이 분야에서도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일하는 조직과 그들의 이념, 활동방식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언젠가 다시 이들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는 다만 그 접촉의 인상만을 간단히 소개한다.

런던정착과 일본 강연회 및 아시아지역 변호사대회

난생 처음 외국에 나오니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였다. 살 집을 구하고 영

어학원을 나가면서 한 달을 지냈다. 어떤 영문 여행가이드북을 보니 런던을 '중후한 도시(Imposing City)'라고 묘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았다. 도시건물의 모양을 보나 시민들의 행태를 보나 모두가 어둡고 무거운 인상을 주었다. 런던은 안개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서울을 떠날 때 친구들이 우산을 많이 선물하여 그 중에 몇 개를 갖고 나왔는데, 막상 와보니 영국도 이상기후를 보여 그해 여름과 가을은 내내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그 우산을 별로 써먹지 못해 유감이었다.

영국에는 한국 교민이 5천여 명, 런던에만 3천여 명이 된다고 하였다. 나는 현대지사장 한 분을 잘 알아 그분의 도움으로 정착하는 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거기도 있을 만한 동창회란 동창회는 다 있었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제적되었으니 동창회원 자격이 없는데도 서울법대 런던동창회로부터 나오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 김창준, 이진홍, 이성철 변호사와 서우정 검사 등 법조인과의 가끔 어울렸다. 교민 가운데도 몇 분 선배들과는 친해져서 떠날 때는 정말 서운함을 금할 수 없었다.

1년 동안 다니기로 했던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는 서울법대 안경환 교수님이 교환교수로, 이철우씨가 박사과정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안교수님은 내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귀국하여 자주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으나 1992년 1월에 런던에 다시 들러 영국 법조의 발전이 이루어진 거리와 유적을 산책하면서 가이드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

그해 9월 26일부터 3일간은 일본 동경에서 아시아·태평양법률가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 회의 참가와는 별도로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JNCC)와 장의균위원회의 초청으로 일본의 오사카·교토·도쿄 등지에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9월 20일 미리 런던에서 도쿄로 가게 되었다. 장의균위원회의 주요 멤버들인 야와타, 이토씨 등은 내가 장의균씨를 변론하는 기회에 이미 여러 차례 한국에서 만나 구면이었다. 장의균씨와 함께 잠시 같은 기숙사에서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숙사의 사감부터 숙생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구속당시부터 지금의 석방 운동에 이르기까지 장의균씨의 구원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주로 재일동포 2세로 구성되어 조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김태명씨 등 재일민권협 사람들도 인상적이었다.

오사카에서 한 강연회는 200~300명이 참석하는 성황이었다. 도쿄 강연회

장소는 신농정교회로서 문익환 목사가 방북 후 귀국 직전 강연과 예배를 가졌던 곳이라 나에게도 더욱 감회가 있었다. 강연회뿐만 아니라 장의균씨에 대한 전향문제를 다루기 위한 헌법소원의 학습회에 참석하여 토론을 시키는 등 주최측이 가만히 나를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1주일 동안 관광을 할 여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오가며 재일동포들이 몰려산다는 오사카의 이키노쿠 지역의 시장통거리라든가 도쿄에서 묵었던 '2·8 독립운동'의 산실 재일 YMCA 등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도 나에게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책값이 비싸 별로 책을 사지는 못했지만 고서점 골목으로 가득 차 있는 동경의 간다거리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다. 『세카이』지에 몇 번 쓴 칼럼의 원고료를 받아가라고 해서 『세카이』를 내는 이와나미출판사에도 들렀는데, 그 출판사의 규모나 출판한 책의 종류와 양에 질릴 정도였다. 사회과학출판사들이 망하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별로 팔릴 것 같지 않은 전문서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출판사와 독서대중의 수준을 헤아릴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4일 도쿄에서는 아즈사와 변호사의 소개로 동경변호사회를 방문하여 회장단과 국제인권부 회원들과 좌담을 나눌 기회도 있었다. 25일에는 일본 중의원 국제인권연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여기에서의 내 발언내용은 그 다음날 『아시히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당의 소속을 초월하여 엠네스티를 지원하는 모임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런 날이 있을까?

26일부터 열린 아시아·태평양법률가회의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황인철 변호사를 비롯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반가웠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법률가의 사명"이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인권, 반전·환경·민주주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의 세부주제로 나누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로아시아(LAWASIA)가 아시아지역의 인권활동에 적잖은 업적을 쌓아오긴 하였지만 아시아의 진보적 변호사들이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벌이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그같은 회의를 주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데서 한국측 참가자들은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숨기기 어려웠다. 마지막날 아시아인권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는 코뮤

니케를 채택하였으나 막상 그 위상과 구체적 활동내용은 막연한 것이어서 이 조직의 장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아시아지역에서 인권관련분야의 협력이란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들을 막론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유럽의 EC, 아프리카의 OAU, 아메리카지역의 OAS 등이 자신의 지역적 동맹을 결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를 발전시켜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흔히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부르지만 인권에 관한 한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는 훨씬 저개발의 후진국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먼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이런 연대활동을 벌이고 지역협력의 토대를 쌓는 데 우리도 첫걸음을 내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북한에서도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쪽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북측 대표들은 외교관이든 법률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남한의 국내문제와 인권문제를 들고나왔으나 정도가 훨씬 더 심한 자기내부의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 상호간에 법률제도라든가, 인권상황 또는 법률가들의 앞으로의 남북교류에 대한 가능성 타진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참으로 유감천만이었다. 오히려 그때 만난 재일동포 출신의 김규승씨는 좀 달라보였다. 학자풍의 김씨는 북한의 형사법제도를 전공하고 여러 권의 저서까지 남긴 분으로 북한의 이른바 신행법의 문제점까지 솔직하게 시인하는 등 인간적인 풍모가 그대로 배어나 그나마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회의장 바깥에서 나는 미얀마(버마)인 한 사람을 만났다. 툰 아이(Tun Aye)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치과의사로서 조국의 인권문제를 언급했다가 처형의 위협을 느껴 탈출한 뒤 일본에 머물면서 버마민주주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Democracy in Burma)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버마라는 이름을 미얀마로 바꾼 것도 하도 인권침해국으로 악명이 높으니까 아예 나라 이름이라도 바꾸어 그 인상을 지워보려 한 일이라고 그는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회의장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아시아지역에서 인권이라는 이념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머나먼 길을 가야 하리라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심어주기에 족했다.

학창생활로 되돌아간 LSE의 생활

일본에서 돌아와서부터는 예정대로 열심히 학교에 나갔다. 로잘린 히긴스 교수의 지도로 "아시아지역 인권운동단체들의 역할(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Human Rights in Asia)"이라는 주제의 작은 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원래는 아무런 부담없이 지내려고 하였으나 히긴스 교수는 그냥 1년을 지내는 것보다는 논문을 하나 쓰는 것이 공부하는 계기도 되고 디플로마(Diploma in International Law)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 이 논문을 쓰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아시아지역의 인권문제를 역사적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이 문제에 관한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의 접근방식도 비교해볼 수가 있었다. 특히 이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 때문에 인도, 필리핀, 홍콩 등지의 인권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을 알게 된 것도 의외의 소득이었다.

히긴스 교수는 이미 국제법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학자로서 유엔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위원이기도 하였다. 나는 그녀와 피터 더피라는 젊은 학자(그는 또한 엠네스티 본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변호사이고 유럽 인권재판소의 전문가이다)가 함께 강의하는 '인권의 국제적 보장(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라는 강의를 포함하여 바이쓰 교수(국제기구론 및 전범문제를 전공한 교수. 지금은 암스테르담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음)의 국제조직론 강의, 이웃 SOAS(School of Oriental African Studies)대학의 '개발도상국가의 인권문제(Human Rights in Developing World)'라는 강의를 들었다. 일주일에 3과목의 강의를 따라 가기란 쉽지 않았다. 정해진 주제에 따른 논문이나 판례를 수십 편 다 읽어낼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히긴스 교수의 강의는 굉장히 인기였다. 재미있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온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한 번은 수단에서 왔다는 학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 수단에서 추방되어 할 수 없이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생운동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국회의원하다가 회교근분주의자들에 의한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쫓겨났다고 했다. 대만에서 온 학생 하나도 노조간부를 지낸 경험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가 통했다. 일본의 다키자와라는 여학생은 나중에 아시아지역의 연대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때 LSE에서 석사과정(L.L.M) 코스를 마치고 런던을 근거지로 국제인권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던 도쓰카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은 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나이가 50이 다 된 사람이 그 나이에 L.L.M

을 하기로 마음먹는다는 것이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는 일본의 정신헌법과 구금2법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정신헌문제가 국제사회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최초로 재작년 여름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카렌 파커 변호사와 함께 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 Inc.라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이끌고 있었다. 도쓰카 변호사는 내 논문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여러 차례 코멘트해주었다.

이 LSE대학은 1890년대에 시드니 웹을 비롯한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지금은 런던 시내의 10여 개 대학과 함께 런던대학(University of London)을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독립성을 가지고 유지 운영되고 있었다. 설립자들의 뜻이 살아있어서인지 이 학교의 사회주의적 전통은 지금의 노동당 브레인들을 여기서 주로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사회주의 서클들이 학교 내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번은 톰 킹 국방장관이 학교에 강연을 왔다. 며칠 전부터 사회주의 서클들에서 "톰 킹의 발을 우리 대학에 들여놓게 하지 말자"고 요란하게 써붙여놓고 있어 어떻게 되나 하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강연장에 가보았다. 장관은 비서 한 명 없이 사회자의 안내로 나타나 강연을 시작하였다. 강연 중간에 야유가 자주 있었고 종이비행기를 날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혀 동요없이 강의를 마친 장관은 질문시간이 되자 주로 야유한 집단이 어느 쪽에 앉아 있는지 알면서도 그쪽에도 공평하게 질문권을 주었다. 항의와 맞대응이 모두 토론으로 끝나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대학생활을 단 몇 달밖에 못해보고 감옥을 가고 마침내 캠퍼스를 쫓겨나야 했던 나는 LSE에서 그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다. 가방 들고 기차타고 통학하면서 다시 학창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세월은 속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도서관과 책 속에만 파묻힐 수 없는 현실이 그런 환상을 자주 깨우곤 했다. 인류가 남긴 지식의 틈바구니속을 중형무진하는 젊은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속에서 부러움은 금새 나의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으로 바뀌곤 하였던 것이다.

엠네스티를 비롯한 런던소재 인권단체들과의 교류

그러나 1991년 말까지 몇 달 동안은 학교에서의 생활보다 엠네스티 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자주 출입하다 보니 수위아저씨와 친하게 되

어 내가 가면 언제나 반겨주었다. 테러의 위협 때문에 출입의 통제가 엄격한 곳이 이곳이었다. 나중에는 아예 무시로 출입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었다. 출입증 이야기가 나왔으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하고 지나가자. 1991년 말인지 언제인지 김근태씨의 부인 인재근씨가 엠네스티를 방문하였다. 입구에서 발급해준 출입 딱지를 외국 나온다고 누가 새로 사준 가죽 잠바 위에 붙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접착력이 강한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직원들이 세탁소까지 들고갔는데도 도저히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엠네스티에서는 잠바값을 주겠다고 하고 인재근씨는 받을 수 없다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내가 들어보니 자기들은 그 스티커 제조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내가 법률가 입장에서 잠바값을 받도록 인재근씨에게 권유하여 비로소 결말이 났다. 그 후에 그 잠바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듣지 못했다.

우선 내가 엠네스티에 가서 한 일이란 아시아 디파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프랑스와즈 반데일, 클레어 맥베이 등을 만나 한국관련자료를 번역해주거나 한국 인권상황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구체적 사건의 보완설명 등을 해 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 엠네스티 도서관에서 많은 자료를 구하고 복사할 수 있었다. 나중에 도서관이 협조하여 아카이브에 들어가지 않는 많은 책들을 판매할 때는 너무 싼 가격에 인권에 관한 소중한 책들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프랑스와즈는 책꾸러미를 안고 뒤뚱거리는 나에게 “로이어 박은 인권도서관”을 차릴 것이냐고 농을 걸어오기도 하였다. 정말이지 런던은 책값이 얼마나 비싼지 책을 좀 골랐다가도 나중에 주머니 사정 때문에 몇 권만 골라 나와야 하는 씁쓸한 느낌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른다. 엠네스티는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자료의 총본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은 자료의 빈곤과 늑장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왔다는 엽서를 보여주면서 무슨 뜻이냐고 문기에 보았더니 민미련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어떤 아가씨가 석방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연하장을 보내게 되어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아직 엠네스티의 석방운동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는 아예 한국담당 직원들에게 한글공부를 시켜 한글을 능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우리집 둘째아이가 공부하고 있던 국민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1학기 맨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의 교수방법이 잘못되었는지 한글이 서양사람에게 어려워서 그랬는지 1

학기 교과서를 뎀 후에는 도저히 어려워 못하겠다고 손 들고 말았다. 그러나 덕분에 그 두 사람은 한글을 읽을 줄은 알게 되었고 특히 ‘교도소’ ‘구속’ ‘석방’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의 단어는 잘 쓰기까지 했다.

엠네스티 본부는 런던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옛날 공장이었던 건물을 개조하여 초현대적 경비시설을 갖추고 그들의 용도에 맞게 운용하는데, 내부에 인쇄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건평이 500평은 족히 넘으리라. 1992년 1월 현재 150개국에 걸쳐 11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한 해 예산이 1,1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다. 부러운 일이었다.

국제엠네스티운동은 영국의 유대계 변호사인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에 의하여 1961년 창시되었다. 당시 포르투갈의 살라자르 독재정권의 암흑 속에서 단지 자유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리스본의 두 학생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의 수인’을 석방시킬 수 있는가를 골몰하던 끝에 살라자르정권에 항의편지로 ‘용단폭격’ 하는 방법을 강구해냈던 것이다. 이 대단히 나이브하고 소극적인 방식은 특히 우리 동양인에게는 대단히 낯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엠네스티는 이 방법을 통하여 전세계에 지부를 조직해내고 언론의 협조를 통하여 수많은 양심수를 석방시켜 그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1977년 노벨평화상을 수여받게 된다. 나는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을 여행하거나 여러 회의에 참가하면서 엠네스티의 지부들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 과장이기는 하겠지만 성인 국민의 3분의 1이 엠네스티 회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김성만씨의 모친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교외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갔을 때 한 동네사람들이 한 그룹을 형성하여 모임이 있을 때는 마치 친목계를 하듯이 모이고 있었다.

런던에는 엠네스티 외에도 유명한 국제인권조직들이 많이 있다.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이 이름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가 의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데서 따왔다). 펜클럽본부 등을 들 수 있다. 아티클 나인틴은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인권보고서를 심리할 때 자신들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내겠다고 나에게 자료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아무리 국내의 관련단체에 자료를 요구해도 답변이 없었다. 일부러 로비를 해서라도 그와 같은 작업을 요구할 만한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튼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이 단체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앤 노튼, 산드라 콜리버 변호사 등과 사귀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KEEP (Korea Ecumenical Education Programme)라는 조직은 한국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과 활동을 벌이며 한국의 인권운동가를 초청하기도 하고 자료집 발간, 세미나 개최,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등을 하기도 하였다. 1992년 8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세계인의 기도에도 적극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단체의 주요 멤버들은 패트리샤 헤밀턴 여사와 CIIR (Cathol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의 한국담당자 캐더린 스코트 등이었다. 캐더린은 한국에도 다녀갔을 뿐 아니라 영국에 머물고 있는 고전태일의 동생 전순욱씨와도 아주 친하였다. 이 두 사람과는 특히 친밀하게 지내 여러 번 그분들 댁에 초청받기도 하였고 우리도 이들을 초청하여 한국 음식을 대접하였다. 내가 영국을 떠나기 직전에 만났을 때 이들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깊은 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런던에 있는 동안 몇 차례 한국관련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 강연을 요청받았다. 1992년 3월 21일 엠네스티 한국 코디네이터 모임에 참석하여 강연하였다. 나는 한국문제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전세계에 걸쳐 30여 명이나 참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들 중에는 미국에서 온 에드워드 베이커 선생이나 네덜란드의 반덴 보쉬 여사, 일본의 안자코 유카 등 구면도 있었다. 이들은 공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 회의를 하고 곧바로 각자 돌아가는 진지성을 보였다. 그다음 참석한 회의는 1992년 5월 15일 열린 EUCONET(European Ecumenical Network on Korea) 회의였다. 여기에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한국인권문제를 지원해왔으며 오스나부르크대학 철학 교수로서 그 대학 총장까지 지낸 쿤터 프로이덴베르크 교수, 스웨덴의 코리아 커미티를 꾸리고 있는 라스 오베 린베르크, 영국의 고든 쇼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나는 한국 인권운동가들의 일회적인 초청에 많은 경비를 쓰기보다는 인턴십 형태의 인적 교류, 인권정보에 관한 항시적인 채널 확보 등이 유익할 것이라고 제의하였다.

유럽의회 한국인권에 관한 청문회 참가와 독일지역 인권강연 여행

1992년 2월에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주최하는 한국인권

청문회(Hearing Zur Menchen Rechtslage In Der Korea)에 초청받아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주제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 민가협 김성만 군 모친과 장의균씨의 부인 윤혜경씨가 참석하였고 엠네스티 대표로 네덜란드의 반덴 보쉬, EUCONET의 대표로는 위에서 설명한 캐더린 등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내에서 아시아 지역 인권활동을 벌이는 인사들, 독일·프랑스 등지의 한국민주화를 위해 일해오던 사람들도 적잖게 방청하였다. 그리고 주최측으로부터 듣기로는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주 EC대사도 초청하였다고 했는데 대사관측에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이른바 구주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의 입법부인 셈이다. 헌단체에서 유럽의회는 그 입법권에 제약은 많지만 EC 회원국가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는 곳이다. 이미 EC는 단순한 경제협력체의 차원을 넘어 국가통합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침략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쉴 틈이 없던 유럽 국가들이 과거의 구원을 씻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문회가 열린 스트라스부르호도 독일과 프랑스가 뺏고 뺏기던 알사스 로렌지방의 중심도시이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각국에서 최고 재판소 판결까지 거친 사건의 제소를 받아 심리하는 곳으로서 그 판결은 강제력을 가지고 회원국가를 구속한다. 최근 선데이 타임즈사건, 낙태죄판결 등은 유명하다. 한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인권침해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의 그리스를 회원국들이 무더기로 고발하여 대량의 인권침해를 견제한 이른바 Greek Case는 지금도 많은 논문들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 스트라스부르호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르네 까생이 설립한 국제인권재단(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이 매년 여름 강좌를 개최하기도 하는 곳이다.

이와 같이 확대된 EC는 국제정치의 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며 다른 지역의 인권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의 인권문제가 유럽의회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이미 한국이 EC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유럽 내 교회단체들의 한국네트워크인 이른바 EUCONET, 그리고 유럽의회 내의 다수당인 사회당과 녹색당 등의 문제제기 때문인 것으로 들었다. 독일 녹색당의 유겐 마이어 국제부장 등이 이 청문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고생해왔다고 하였다. 이 청문회의 결과가 회

원국에 구속력 있는 어떤 결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럽의회 의원(MEP)들의 한국인권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론이 비중있게 다루어줌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았다. 재미있는 것은 독일의 유력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타게스짜이퉁』 등에서 모두 보도하고 나섰는데 국내언론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다룬 적이 없어 인권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가 어떠한지 가히 짐작할 만하였다.

이 청문회가 끝난 뒤 민가협에서 나온 두 분과 함께 독일 여러 지역을 돌면서 한국인권에 관한 좌담회, 강연회 등을 가졌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재독한인교회협의회 서남지방 정의·평화·통일위원회 주최로, 보쿰에서는 보쿰지역유학생연합회 주최로, 함부르크에서는 정치적 박해자를 위한 재단(Hamburger Stiftung far politisch Verfolgte) 초청으로 각각 열렸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많은 교회관계자들, 보쿰지역에서는 많은 유학생들, 함부르크에서는 박명철 목사님과 한국인권에 큰 관심과 활동을 기울여온 힐트만 교수, 괴벨린 목사, 클라우스 쉴뢰쓰 판사 등을 만날 수 있었다. 클라우스 판사는 부인이 한국인이어서 그분 댁에서 한국음식으로 저녁을 맛있게 얻어먹었다. 박목사님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목회활동을 해왔는데 고국의 인권문제를 자주 강론하다보니 현지 공관으로부터 미움을 사, 그 공작으로 교회신도의 분열이 있는 등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주변사람들은 말하였다. 지금은 학위논문을 쓰고 있는데 남북한의 통일 후 인권상황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조명하는 내용이어서 그 주제에 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나를 연사로 초청해준 위 재단은 함부르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한국의 김근태씨와 홍성담씨가 이른바 '박해받은 양심수'로 지정되어 그들이 원하는 때는 언제라도 1년간 독일에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 통역을 맡았던 채현덕씨는 철학을 전공하는 유학생으로서 홍성담씨의 석방운동에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그 먼 거리를 자동차로 우리를 계속 이동시켜준 분은 쾰른에서 살고 있던 이영숙씨였다. 간호원 출신인 이여사는 독일인 남편을 뒷바라지하여 공부시킨 다음 이어 자신도 대학공부를 마치는 등 성실하기 짝이 없는 여성이었다. 그리고 독일에서 장기수후원회를 조직하여 모금을 하여 국내에 송금하는 한편 국내인사들의 방독 때는 앞장서서 도와주곤 하였다. 이어 우리는 본으로 내려와 독일의 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인권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독일사민당의

인권위원장과 대외협력위원장 등은 이미 한국 인권문제에는 비교적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인권문제가 이미 모든 국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48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기

나는 독일여행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제네바로 떠났다. 제네바에서는 유엔 제48차 인권위원회가 1월 27일부터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도착하기 이전의 회기 동안은 주로 임원선출, 의제의 채택 등에 관한 형식적 회의였고 도착 이후부터 회의 의제 12항 "세계 각국에서의 기본권침해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 의제 외에도 개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Development), 남아프리카와 쿠웨이트 내 이라크점령지구의 인권침해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일본의 도쓰카 변호사, 미국의 카렌 파커 변호사 등과 함께 국제교육개발(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의 대표로 참석하였다.

여기서는 세계교회협의회(세계)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가한 서승씨와 파스 로마나(PAX ROMANA)라는 카톨릭계통의 NGO 대표로 참가한 박은경씨 등과 동행하였다. 서승씨는 미국 버클리대학의 방문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한국고문희생자원호회(STIK)을 조직하여 유엔을 비롯한 세계고문희생자운동단체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유럽을 방문하던 차였다. 박은경씨는 파리에 본부가 있는 세계카톨릭학생연맹 간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소르본느대학에서 종교사회학 석사과정에 있는 여학생이었다. 이미 제네바에는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데다가 국제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가 여러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어 내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접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내가 도움을 받은 또 한 사람은 재일동포 출신으로 제네바 국제관계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던 신혜봉씨였다. 이 아가씨도 영어,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틈틈이 회의장에 나오거나 우리와 동행하면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었다. 제네바의 물가는 가히 살인적이어서 시내에서 제대로 사먹기가 어려워 슈퍼마켓에서 시장을 보아다가 식사를 만들어 먹었는데 서승씨의 요리솜씨는 재료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하였다. 오랜 감옥생활 속에서 터득한 비결인 듯하였다. 그리고 낮에는 방문한 기관의 식당에서 대충 요기를 때웠는데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식당의 식사가 제일 먹을 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먼저 우리는 팩스 로마나의 사무국장인 빅터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 분은 런던의 CIIR의 집회에서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어 구면이었다. 국제인권활동에 대단히 밝았고 특히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아시아 데스크 또는 아시아지역 활동가들로 구성된 Asia-Pacific Task Force on Human Rights의 의장을 맡고 있었다. 그로부터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아시아관련 인권단체 명부를 얻었던 점과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았던 점은 큰 소득이었다. 인권위원회 회의기간중에 열린 이 Task Force 모임에 초청받아 나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시아지역의 연대를 강조하였다. 스리랑카의 타밀족 분리자치주의자들의 활동과 미얀마(버마), 티베트지역의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그룹의 활동이 눈에 띄었다.

당시 한국 인권문제에 관해 여러 NGO들이 지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우리는 한국의 인권상황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합니다. 한국 국회의 국제인권규약 비준과 제6공화국정부의 민주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자료는 제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 한 해에도 5,186명의 정치범이 구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1년 9월 6일자 어떤 자료에 의하면 1,316명의 정치범이 현재에도 구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노동자와 학생이 74%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많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법률들과 사상의 전향제도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범들이 기본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경제적 상황을 비판하는 시위를 한 것도 심각한 탄압에 직면했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한국정부에 대해서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고 고문 및 잔혹한 처우 금지에 관한 유엔조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국제인권규약하의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의장. 우리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우리 산하단체인 한국기독교학생연맹(KSCF) 전 의장 황인성씨가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

그러나 황인성씨의 구속은 동떨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1,316명의 정치범이 여전히 구속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항의로서 북한과의 국경을 건넜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임수경양의 구속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나라에서 이 나라의 인권상황을 악화시켜온 주요한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41% 가량의 구속자가 이 법률로 구속되었습니다. 더구나 고문이 증거를 획득하고 정치범의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고문을 통해 얻어진 자백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내려져왔습니다.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구체적 사례와 통계숫자에 대하여 전혀 답변을 회피해버렸고 다만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언급하였다. 다음은 제네바 주재 박수길 유엔대사의 발언내용 중 일부이다.

한국에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특히 1988년에 선출된 정부의 출범에 따라 강력히 추구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민들은 더욱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인권에 관한 확신은 국제적인 인권활동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높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 3월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 그리고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어린이 권리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주요한 인권조약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제 국제 사회에서 지구상의 모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 사회의 회원국들은 아직도 존재하는 억압적 정권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세계적 변화의 추세를 이들 국가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마땅히 개발도상국가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의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과 관련하여 정신대문제가 여러 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나와 동행한 도쓰카 변호사가 상당히 진지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였고 일본에서 성명권투쟁으로 유명한 최창화 목사는 이에 관한 장문의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많은 정부대표와 국제적인 NGO 관계자들에게 배포해주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가 국제인권규약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제한된 의제와 절차에 따라 엄격한 법적 검토와 결정을 하는 것에 비하여 대단히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대표든 비정부단체의 대표든 엄격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다양한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그같은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특별연구와 보고자(Special Rapporteur)임명 등을 통하여 국제법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국제조약과 규약을 만들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지난 8월 열린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정신대문제를 포함하여 인권의 대량

침해로 인한 배상문제에 관한 Special Rapporteur로서 유엔인권센터 소장을 역임한 네덜란드의 반 보벤 교수가 임명되어 이 문제에 관한 현상의 연구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나는 이 인권위원회가 만들어낸 많은 규약과 결정들을 검토해보면서 국제법의 원천이 된 많은 원리와 관습법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 성격에 걸맞게 회의장 안에서보다 회의장 밖의 휴게실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대표들, 국제기관 관계자, NGO 활동그룹들이 이리저리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로비를 벌이는 것이다. 나와 서승 선배도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다. 이때 만난 사람들이 유엔인권센터의 Eric Tistounet, Mrs. Kubota, Dr. De Zyes, 세계고문금지운동의 사무국장인 Eric Sottas, 독일교회연합의 인권담당인 Werner Lottje 변호사 Cornelia Fullkrug-Weizel 목사 등이었다. 특히 이때 만난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Legal Officer를 맡고 있던 Dilbur Parakh라는 인도 출신의 여자변호사로부터는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요청받아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토론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한정하여 ICJ의 조사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해주시기로 약속하였다.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를 방문하여 한국담당자, 노조결성의 자유담당자들을 만나 한국의 실정과 ILO의 협조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한국에도 왔다간 적이 있는 Jacqueline Ancel이 나를 메일링 리스트에 올리게 위해 출판 파트에 갔을 때 촌극이 벌어졌다. 그 담당자에 따르면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대사관 이외의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명부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국제기관과는 달리 국제노동기구는 정부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조가 다 함께 공식적인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조관계자나 일반 민간인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정식으로 항의를 한 결과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받았다.

나와 서승씨는 세계교회협의회(OCC)의 오재식 국장 덕에 초청받아 저녁을 잘 얻어먹기도 하였다. 이 단체는 오국장님 외에도 박경서 박사가 버티고 있어 한국문제를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었다. 여기에 근무하는 하퍼 목사, 베리, 모이어 목사 등도 제네바를 여러 차례 방문할 때마다 만나 한국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다시 그해 7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도 변협과 KNCC 대표자들과 함

께 참석하였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의 참관기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다만 이 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정부측 대표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 진실로 국제인권규약의 가입이 한국의 인권분야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일 수 없었던가를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이미 그 규약을 비준한 이상 우리 법체계의 일부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그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 법령의 폐기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아전인수격의 법해석은 국제적인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파리의 '미래의 지구' 회의 참가

1992년 6월 초순에는 파리에서 열리는 '미래의 지구(Terre D'avenir)'라는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CCFD라는 프랑스카톨릭연합단체가 경제개발과 그로 인한 영향, 사회적 비용 등에 관하여 6월 5일에서 7일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각 지역별, 사회·경제·정치·문화·종교 등 각 분야별로 점검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들이 내세운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 다이나믹한 국제포럼은 개발 분야에서 그동안 무엇이 이루어져왔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다소 비판적인 여론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 언론이 자주 개발위기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창조적인 접근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여러 분야, 즉 비정부기구들, 대·소기업들, 지방기업, 국제조직, 재정기관들, 지방자치조직과 미디어들의 활동적인 참석자들을 초청하였다.

개막식에는 막 새로 지명된 프랑스 수상이 개막 연설을 하였고 매일 수만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보였다. 내가 참석한 부분은 "아시아의 용들: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였다. 이 자리에서 태국의 Dr. Seri Phongphit와 프랑스의 Christian Lechervy 교수가 함께 하였다. 경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의 개발독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논리를 비판하면서 한국의 재벌중심, 정부주도, 기본권제한 등 경제개발이 가져온 역기능과 후유증을 설명하였다. 비민주적인 억압과 권위주의적인 사회통제에 의한 경제개발은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는 견해가 일

치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경제개발전략으로 채택한 부분적인 정책들에 관하여 배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모델이 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 회의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프랑스의 여러 지방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속무용과 가요가 소개되었다. 우리 한국도 독일교민 2세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패가 출연하여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전국의 국민학생들도 버스를 전세내어 와서 하루를 놀면서 산공부를 하고 가기도 하였다. 이 행사의 규모와 진행방식, 참여인원 등을 통하여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저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경제개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끊임없는 탐색,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새로운 문명예의 도전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인권장정의 험난한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 사회와 사법현실에 대한 절망의 느낌을 뿌리칠 수 없었다. 우리가 하는 변론이라는 요식적인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회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세계도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관찰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절망적인 구렁텅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민족들도 바라볼 수 있었고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하는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마저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사법적 정의가 왜곡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최근 영국에서 논란된 주디스 워드사건을 보자.

18년 2개월 27일 만에 그녀가 범하지 않았던 IRA 폭파사건으로 감옥에 있던 주디스 워드는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석방은 1970년대 초반 일련의 IRA 폭파사건의 후유증 가운데 억울한 아일랜드인과 영국인을 만들어낸 영국 사법적 정의의 파멸적인 에피소드에 종말을 고했다. 사법적 부정의의 물결에 휩싸였던 18명 가운데 Guild Ford Four, Birmingham Six, Maguire Family 사건에 이어 마지막 석방자가 되었다. (1992년 5월 12일자 영국의 The Independent 지)

어느 사회에나 모순과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인간의 투쟁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실상 서유럽 여러 나라가 그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데도 얼마나 오랜 세월의 피어린 투쟁이 있어왔던가.

나는 지금 '자유'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머물고 있다. 며칠 전 이곳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1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44년 만에 결백을 입증해줌으로써 알지에 히스의 환호성을 일으킨 비디오테이프 증언에서, 러시아의 한 장군은 KGB 아카이브에는 히스가 소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전 지구를 향해 방영된 텔레비전의 시청자들에게 확인해주었다. 전후 시기에 공산주의자박멸운동의 희생양 중 한 사람이 되었던 히스는 나중에 지극히 반가운 순간이며 영원히 자축하고 싶은 분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 러시아 장군에 의한 기자회견은 마치 히스를 냉전초기 리처드 닉슨을 비롯한 이른바 휘트태크위원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을 때만큼이나 극적인 것이었다. (1992년 10월 29일자, Boston Globe 지)

히스사건은 미국의 사법사상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 알타회담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보좌관이었던 그가 과거 한때 공산주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매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절, 소련을 위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닉슨 등에 의하여 주도되던 미 상원의 휘트태크위원회의 기소를 받아 유죄선고를 받고 4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 그 이후 이 재판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끝없는 논쟁이 거듭되었다. 이제 그의 나이 87세, 지금 비로소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진정 살아서 보고 싶었던 순간"이었다고, "그러지 못할까 봐 우려했노라고". 어디 그뿐인가.

로마카톨릭교회가 갈릴레오를 비난한 지 350년도 더 지나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 중의 하나, 즉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이 이탈리아 천문학자이며 물리학자를 기소한 일을 교정하였다. 교황청 과학아카데미의 공식성명을 끝으로, 교황은 1633년의 갈릴레오에 대한 교회의 비난에 관한 13년간의 조사를 정식으로 마감했다. 자신의 발견을 철저히 숨겨 만든 교회의 비난은 그를 1642년, 77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8년간이나 연금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교회와 갈릴레오간의 분쟁은 이성과 도그마, 침묵과 신념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여겨져왔다. 바티칸의 공식적인 과오의 인정은 신앙 문제에 있어 교회가 마지막 결정자라는 수세기에 걸쳐 확립되어 온 제도에 비추어볼 때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92년 10월 31일자, 뉴욕 타임즈 지)

과연 갈릴레오는 살아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350년이나 지나 교회가 드리는 고백성사를 저 천국에서나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관습 속에서 진실과 정의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나는 사회모순의 보편성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가 공동 선을 향한 투쟁의 열기를 잠재우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투쟁은 우리의 동지를 역사와 이웃 속에서 발견하고 확인함으로써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 길은 우리만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 투쟁의 길이야말로 인류가 걸어온, 그리고 걷고자하는 큰 길이다. 인권에 관한 한 국경과 주권의 울타리는 낮아지고 있다. 함께 손잡고 이미 먼길을 온 그들의 경험을 가슴에 새기며 그 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지구상의 곳곳에서 우리와 같은 착한 뜻을 지니고 같은 길을 가는 많은 동지들을 만났다. 자신의 굴레뿐만 아니라 이웃의 고난을 함께 하고자하는 선량한 무리의 인간들이었다. 나는 절망을 느끼며 떠났으나 이들의 모습에 희망을 안고 감옥 속의 '쥬디스 워드', 누명을 벗기를 고대하는 '히스'가 수도 없이 많은 나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이 비록 시지푸스의 끝없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Clare McVey*

민변 편집부 옮김

1. 국제사면위원회의 목표와 목적

국제사면위원회는 전세계에 걸쳐 150개국 이상에서 1,100,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범세계적인 인권기구이다. 이 기구는 유엔인권선언 및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문서와 거기에 표현된 가치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죄수들에 대하여 초점이 모아진 국제사면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양심범들을 석방시키는 것. 이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또는 폭력의 사용을 옹호하지 아니하면서도 신념, 인종, 성, 피부색 또는 언어를 이유로 어디에선가 구금된 사람들이다.
- 모든 정치범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
- 사형을 폐지하는 것과 죄수들에 대한 고문 또는 기타 가혹행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 국제사면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담당 연구원

·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형 및 '실종'을 종식시키는 것

국제사면위원회의 폭력사용에 대한 견해는 때때로 오해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폭력사용 또는 폭력사용을 옹호함을 이유로 투옥된 죄수들의 석방을 호소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는 그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옹호하였든 하지 않았든 간에 모든 정치범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른 범죄에 관계없이 고문이나 사형에 반대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제사면위원회가 지지하는 기본적 인권들이 보편적이며, 모든 정부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수년 동안 정부만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종종 무장한, 그 국가에서 영향력있는 반대집단이 사람들을 구금하고, 고문하며 살해한다. 1991년 최종회의에서 국제사면위원회는 반대집단에 의한 인권남용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활동영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독립성 및 불편부당성은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방법의 핵심이다. 이 기구는 정부와 반대집단간의 분쟁에서 결코 편을 들지 아니하며 어떠한 정치이념이나 종교도 편애하지 아니한다. 이 기구의 자금은 회원 및 후원자들에 의하여 조성되며, 정부의 기부는 받지 아니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광범위한 인권의 양상들 중에서 제한된 수의 쟁점에 대하여만 집중한다고 비판받는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효율성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노력을 특정된 기본적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확신한다.

2. 국제사면위원회의 연구활동

국제사면위원회의 전세계 각국에 대한 연구활동은 50개국 이상에서 온 29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런던의 사무국에서 수행한다.

조사원들은 전세계 각국의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인권침해 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하여 때때로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고문은 대부분 은밀하게 행하여지고, 유괴 및 체포에 대한 증거가 없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가 방문하는 것이 허

용되지 아니하고, 정부나 반대집단은 때때로 검열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전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사면위원회는 광범위한 출처, 때로는 상이한 정치적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희생자거나 학대의 목격증인들,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 그리고 다른 인권집단들로부터 정보를 구하며, 때때로 사실조사의 목적으로 관련국가를 방문하기도 한다. 획득된 정보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의 결정을 돕기 위하여 그 국가의 과거 학대유형과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된다. 모든 경우에 국제사면위원회는 주장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한다. 만일, 국제사면위원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지만 경험상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국제사면위원회는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관련정부에 먼저 통보하고, 사전승인 없이는 그 국가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의 방문허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절한 몇몇 나라는 방문이 불가능하였다.

3. 국제사면위원회의 캠페인활동

국제사면위원회의 주요 캠페인전략은 런던의 사무국에서 수립된다. 사무국은 또한 문서의 발간, 국제소식지 발간 준비,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보고도 담당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기본적인 캠페인활동은 74개국 이상에 있는 약 6,000여 자원봉사자 그룹의 회원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개별적인 회원들은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을 대신하여 함께 활동하는 그룹에 참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그룹에게 어떤 죄수사건이 맡겨질 수 있다. 그 그룹은 그 죄수를 대신하여 그 죄수가 억류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고, 홍보를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요청받게 될 것이다. 그룹들 및 회원들은 함께 자신들의 정부와 다른 나라의 대사들에게 로비할 수도 있다. 그들은 종종 의사, 노동조합원이나 교사들과 같이 관련국가의 상대방에게 로비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의 지원을 구하기도 한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그룹이나 회원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인권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거나 그 정보에 기하여 행동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정부가 사형을 폐지하고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도록 로비하기도 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포함하여 48개국에 국가별 지부를 두고 있다. 지부는 자신들의 국가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소수의 회원을 가진 국가에서는 지부가 없고, 활동은 그룹들의 조직망에 의하여 수행된다.

1992년 한국의 8개 국제사면위원회 그룹들은 인도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나라에서의 인권남용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1961년에 설립된 이래 국제사면위원회는 전세계에 걸쳐 수천 명의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을 대신하여 탄원해왔다. 예를 들어 1992년에는 인도에서의 수감자 사망, 미국에서의 사형 실시, 중국에서의 양심범 석방에 대하여 주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을 옹호하였으며, 필리핀 및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실종' 및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형에 대하여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국제사면위원회의 탄원이 항상 죄수들의 석방이나 법률의 개정을 가져오지는 아니하지만, 전세계에 걸쳐 수천 통의 편지를 받는 정부들은 그들의 행동이 감추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4. 국제사면위원회의 회원

국제사면위원회는 전세계에 걸쳐 인권학대에 대하여 캠페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회원들은 자기 국가에서의 인권남용에 대하여는 활동하지 아니한다). 국제사면위원회에 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대구의 다음 주소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대표자로부터 얻을 수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706-600 Kyeong Buk R.C.O. Box 36
Taegu, Republic of Korea

5. 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사항

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관심사항은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사람들의 구금,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상당수 장기수의 계속적인 구금, 고문 및 부당대우에 대한 보고 및 사형의 실시를 포함하고 있다.

1) 양심수

국제사면위원회는 현재 언론 및 결사에 관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한 것을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생각되는 약 25명의 양심수 석방을 위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양심수라고 여겨지는 약 50명의 다른 죄수들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수년 동안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을 방문하였거나, 북한주민 또는 해외북한공작원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을 만났거나, 북한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람 또는 북한이 채택한 입장과 유사한 견해를 취한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왔다.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988년과 1989년에 북한을 불법적으로 방문한 것을 이유로 5년에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전 국회의원 서경원 및 그의 비서 방양균, 문익환 목사 및 사업가인 유원호. 최근 2년 동안 국제사면위원회는 또한 정부에 의하여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범민련'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된 이해학, 조성우, 김희택 및 이창복 등의 죄수들의 석방을 위하여 캠페인을 벌여왔다. 더욱 최근에는 한국노동당 구성원에 대한 구금사건을 취급하였다.

다른 관심분야는 노동쟁의에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의 시행에 관한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본 조항에 의하여 구금된 여러 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건을 취급하였다.

2) 장기복역중인 정치범

국제사면위원회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체포되어 불공정한 재판 후에 장기형을 선고받은 약 25명의 장기복역수를 대신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그들 중 상당수가 재판 전 구금하에서 고문에 의하여 자백하였다(일부는 60일 이상 외부와의 접견교통이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일부 사건에서 국제사면위원회는 죄수가 정보활동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충분한 사실을 수집하였다. 이 사건은 정보활동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은 김성만에 관한 사건이고, 그는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여 양심범으로 선정되었다. 충분한 정보가 없는 다른 사건에서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의 당국에 대하여 죄수들이 고문받았고, 변호사 및 가족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것은 당국에 대하여 이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된 약 40명 이상의 미전향 정치범사건에 대하여 한국당국에 편지를 썼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계속되는 구금이 그들의 공산주의적 견해(일부는 이러한 견해를 전혀 가진 적이 없다)를 포기하지 아니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 무기징역수는 16년 내지 13년 후에 석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이들 중 일부는 40년 이상 복역하고 있다.

3) 고문 및 부당대우

근래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수형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많은 주장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해왔다. 위 고문의 예로는 자신이 1989년도에 체포된 직후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화가 홍성담씨나 그 중 일부가 1990년도에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사노맹 구성원들을 들 수 있다. 좀더 최근에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1992년 3월 두 곳의 경찰서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다섯 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항상 한국정부에 대해 동 위원회가 접수한 고문과 부당대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는 한국정부의 조사방법이 자주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고문과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대우 및 처벌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제연합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고문 및 부당대우를 근절하도록 촉구해왔다.

4) 사형제도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 및 이미 확정된 모든 사형선고에 대한 감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근래 들어 한국 내에서 사형선고가 증가되는 명백한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5) 한국의 캠페인활동

국제사면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약 70여 명의 수형자에 대한 사건이 세계 각국의 개별적인 국제사면위원회 그룹에 배당되어 있다. 위 모임들은 한국정부에 대해 항의서한을 띄울 것이고, 그들 정부에 대해 로비하며, 그들 나라에서 그 사건을 공표할 것이다. 어떤 모임은 그 수형인의 주소를 안 경우에는 그들에게 편지를 띄울 것이다. 위 모임들은 또한 사형제도와 전향제도 및 고문과 부당대우에 관한 논점에 대해서 캠페인활동을 벌일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출간하고 있다.

6) 한국에서의 출판활동

다음과 같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출판물을 보면 동 위원회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한국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죄수들(ASA 25/25/91)
- 한국 : 국제사면위원회의 관심(ASA 25/14/92)
-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1992

국제사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최근의 출간물이나 우리의 작업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Asia and Pacific Region, Research Department
Amnest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1 Easton Street
London WC1X 8DJ
UNITED KINGDOM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

유 현 석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

1962년 1월 20일 군형법(軍刑法)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의심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률은 6·25전쟁중에 특히 위력을 떨치던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알 길도 없거니와 그 중에 얼마나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하리라. 그런데 그 '국방경비법'이라는 것이 법률도 아니었다고 하면 놀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었다.

1945년 8월 9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자 태평양미국육군 총사령부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군정을 선포하고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1948년 3월 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국회는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 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도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

다.

그런데 법령집을 보면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1948년 7월 5일 공포, 1948년 8월 4일 효력 발생,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써어 있다. 그러나 1948년 7월 5일에 이러한 법률이 공포된 일이 없다.

미군정은 군정법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이외에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창설한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을 인준(認准), 공포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1947년 5월 6일 법률 제1호에서 1948년 5월 19일 법률제12호(조선과도입법의원 해산)까지를 제정하였을 뿐이었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09호(법령 제173호의 개정)가 1948년 7월 3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법령 제210호(동결재산의 해제)가 1948년 7월 12일에 공포되었으므로 그 중간인 7월 5일에 다른 법령이 공포될 수 없고, 더구나 1948년 5월 20일으로써 이미 해산된(법률 제12호)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공포된 일이 없는 법률을 법률이라고 하려니까 그 법률호수는 '미상(未詳)'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국방경비법을 법률인 양 적용했고, 군법 피적용자인 군인·군속 등은 물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의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인 줄 속아서 살아왔고 허구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도시 법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기왕 국방경비법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

원래 국방경비법은 미국의 'The Article of Law'라는, 1776년 독립전쟁 당시의 군법을 서투르게 번역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용병제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봉급을 타기 위해서였다.

국방경비법 제6조는 사기에 의한 임관 또는 입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대 또는 임관에 관하여 자기 신분, 자격을 고의로 사칭 또는 묵비함으로써 군무에 입대 또는 임관하여 급료 또는 수당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이라고 하고 있다. 용병조건을 속이고 입대하여 봉급을 타먹는 것이 죄라는 뜻이고 봉급만 안 타먹었으면 죄될 까닭이 없다. 그런데 6·25 전쟁에 누가 봉급을 타먹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갔겠는가? 용병이 아닌 징병제도하에서 무슨 봉급을 그리도 많이 주었길래 봉급 타먹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 조문에 의하여 처벌받

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다. 참 이상한 일도 많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남로당에 가입하고서도 징병영장이 나왔다고 아무 소리 않고 입대하여 그 알뜰한 봉급을 타먹었으니 사기입대죄다, 이것이다. 정말로 남로당에나 가입하였으면 또 모르지만(그랬으면 국가보안법에 걸렸을 테지만) 국가보안법에도 안 걸리고 사기입대죄에만 걸리니 희한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속아살아왔다.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官報)가 발행된 날로 한다"는 것이 공포식령이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이라는 법률을 개정하여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 피해자가 배상을 못 받게 하거나 받는 것을 까다롭게 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법률을 만들어 1967년 3월 3일 공포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출판물에는 인쇄날짜와 인쇄인의 성명이 인쇄되게끔 되어 있었다. 그런데 3월 3일에 공포하였다고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법률이 실린 관보가 인쇄된 것은 3월 9일이었고 인쇄인은 정직하게 관보에 그 인쇄날짜를 1967년 3월 9일이라고 인쇄하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가배상법 개정법률이 1967년 3월 3일 공포되었다고 우기고 있었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국민에게 덜 배상해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우연히 총무처 무슨 회의에 갔다가 "왜 관보를 그 표시된 날짜에 발행하지 않고 3월 9일 인쇄한 관보를 3월 3일자로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속이려 드느냐"고 장관에게 따졌다. 장관은 "알겠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관보를 인쇄하는 대한공론사에 지시하여 그 이후로는 관보의 인쇄날짜가 관보에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부지런한 국민이면 발행일자에 관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인쇄날짜를 인쇄해서 국민들이, 인쇄도 하지 않은 관보가 어떻게 발행되었다고 하느냐 하는 말썽을 일으키게 하니, 아예 인쇄날짜를 빼버림으로써 언제 인쇄했는지 모르게 하라! 이것이다. 국민이란 속이면 그만이지 무슨 잔소리가 필요하냐? 이것이 명색이 장관이라는 사람의 생각인 것이다. 결국 "국가배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짜는 관보가 실지로 인쇄 발행된 1967년 3월 9일이다"는 대법원판결(1968. 12. 6. 68 다 1753)이 나왔지만 앞으로 국민이 관보의 발행날짜를 어떻게 입증하랴? 이렇게 우리는 속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왔다.

미국인의 사고방식

앞에서도 미군정법령 얘기를 했지만 미국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미군정은 1946년 4월 30일 법령 제78호로 시효의 정지라는 법령을 공포하고 당사자가 1945년 8월 9일 이후 복위 38도 이남의 조선에 부재중인 기간은 모든 청구권이나 소권은 여하한 자에 대한 불문하고 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선포하였다. 이 군정법령은 그 후 폐지된 일이 없으므로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남의 나라를 점령하여 군정을 펴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법령의 필요성에까지 생각이 미쳤을까? 그 당시의 민법(의용 민법)은 취득 시효와 소멸시효를 다같이 시효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니 38 이북에 거주하는 사람 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했다고 판시한 많은 판결들의 효력은 어떻게 될지? 아무튼 미국사람들의 착상이 놀랍다.

우리는 절도죄보다는 사기죄를 더 미워한다. 절도? 여복해서 남의 물건까지 훔쳤잖나! 그러나 사기꾼은 밍다. 살살 거짓말로 그럴싸하게 사람을 피어 등쳐먹다니! 그래서 형법에도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 말한 국방경비법은 미국인이 만든 것이라 다르다. 그 최고형벌표에 의하면 가격 5만 원 이상의 절도는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5만 원 이상의 사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다. 남몰래 훔쳐가는 절도가 명칭히 속아서 내주는 것 가져간 사기보다는 분명히 나쁘다.

미군정은 1948년 3월 20일 법령 제176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그 때까지는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되던 일본법을 썼는데 이 법령에 의하여 구인·구속과 압수·수색의 영장제도, 구속기간, 접견, 변호, 구속적부심사, 필요적 보석, 검사의 유치장 감찰제도 등 현재의 형사소송법상의 인권옹호적 규정이 모두 이때 생긴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불법구속을 한 자는 피구속자에게 하루에 1,000원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하직원이 이 규정에 위반함을 간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검찰지청장, 지방검사장은 즉시 파면되고 2년간 사법부, 경무부의 관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물론, 원심에서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는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절도 초범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역 6월을 선고하던 관례

가 항소만 하면 보석되어 나가니까 징역 7월을 선고하는 것으로 바뀌기까지 하였고 불법구속의 손해배상규정이나 경찰, 검찰책임자의 파면규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싹 빼버렸다. 미국사람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여실히 나타난다. 손해배상의 규정이 아무리 있어도, 파면의 규정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안하면 그만인데 왜 빼는지? 요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임의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다. 그런 자유는 주되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는 말자는 발상이다. 과연 그런 자유가 주어지거나 하는 건지?

사람의 마음

내가 대전지방법원에 부임한 것은 1952년 10월 23일인데 25세 때였다. 당시 대전지방법원에는 원장 1인, 부장판사 2인, 판사 5인이 있었다. 적게는 10년으로부터 많게는 20년이나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나 혼자 동떨어져서 대화할 상대도 없고 사법관시보들하고나 놀아야 하는데 이 시보들조차 나보다 몇 살 위라 참으로 재미없는 판사생활이었다. 하루종일 기록이나 보고 판결이나 쓰다가 퇴근해서는 성당에 가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하루를 3등분해서 8시간은 집에서 밥먹고 자고, 8시간은 성당에서 지내고, 8시간을 법원에서 근무했다. 판사실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법률얘기를 하는 것을 듣노라면 저 사람들이 저것도 모르고 용케도 판사가 되고 판결을 해왔다, 속으로 경멸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었다. 그런데 날이 가고 해가 가니까 내가 부딪치는 것마다 모르는 것뿐이니,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저들을 속으로 얼마나 경멸했던고?

이따금 변호사가 무슨 용무로 판사실에 오면 나보고 영감(命監)! 영감!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판사도 나를 부를 때는 으레 영감이라 부른다. 처음에는 어떻게 듣기 싫은지 저놈의 영감소리 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왜 영감이야? 장가가서 1년도 못되고 엇그제 아이나서 겨우 애기아 버지 되었는데 영감이라니. 그러나 그때는 원장 보고는 장관이라 했고 젊은 판검사가 서로를 부를 때도 영감이라 불렀으니 어쩔 수 없이(그리고 나보다는 모두 연장자였으니까) 나도 영감이라 부를 수밖에. 그러나 날이 가니까 영감소리가 별로 고깝게도, 생소하게도 들리지 않게 되고 끝내는 누가 나보고 영

감! 하지 않고 유판사 혹은 유부장하면 응? 이 사람이 나를 막말로 부른다고 느끼게까지 되는 것을 어쩌랴? 사람 마음 참으로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군대에 간 이야기

내가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있던 1953년 5월 판문점에서는 휴전회담이 지부진 열리고 있었고 전투는 치열하였다. 남북이 모두 쇠진할대로 쇠진해 있었고 남쪽에 와 있던 유엔군(그야말로 다국적이었다)도 북쪽에 와 있던 중공군(중국의용군)도 남의 나라 전쟁에 그만큼 열을 올렸으면 됐지 더이상 회생하기는 싫었으니까 조만간 휴전이 성립될 것은 뻔한 노릇이었다. 미국사람들은 휴전된 뒤에 휴전선을 지키려면 그 휴전선은 가장 짧아야 효과적이니까 휴전회담을 질질 끌면서 동부전선으로는 쳐올라가고 서부전선에서는 슬슬 밀려주면서 38선보다는 짧은 155마일의 휴전선을 형성해갔다. 한국군과 인민군은 그저 화천발전소 하나라도 확보해놓고 휴전하려고 서로 격전을 치르고 있었다. 얼마나 전투가 격렬했는지 수도사단에서는 부사단장이 포로로 잡혀갈 지경이었다. 이럴 때 느닷없이 나한테 제2국민병 소집영장이 나왔다. 현역, 예비역, 보충역 이런 것에는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40세까지 편입되게 되어 있는 제2국민병의 소집영장이다. 물론 1953년 1월 10일 현재 공무원의 직에 있지 아니한 자를 소집할 수 있다는 국무원공고나 나와 있었으므로 나는 소집대상이 아니었지만 영장이 나오니 따질 시간도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대전에서는 법원에서 나하고 검찰에서 검사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소집영장이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무전(無電)으로 대검에 보고하고 대검에서는 국방부에 항의하여 그 영장이 취소되었는데 법원에서는 대법원에 보고하니까 현지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결지인 대구(제1보충대대)에 가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든지 군대에 가든지 해야지 법원이라는 곳은 믿을 곳이 못되었다. 아무리 소집영장 잘못 나왔더라도 누가 그걸 알아주겠는가? 병역기피했다고 기소하면 번번히 징역보내던 판사놈이 제가 영장 나오니까 기피하더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구에 갔더니 오라는 날짜에 온 것은 판사들(나하고 서울지법의 정태원 판사), 사법관시보 셋(서윤홍, 김이조, 윤용섭)뿐이었다. 이놈들 맛 좀 봐라 식으로 군복도 미국군인의 제일 큰 것으로 골라다 입히고 도수교련(徒手教練)부터 한다는데, 무슨 영장 잘못 나왔다고 따지고 지지고 할 겨를이 있는가? 우리를 데려간 것은 법무장교시키려고 한 것이니까 장교지원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슨 지원여부의

자유가 있는가? 교관이라는 사람이 제 손도장을 찍어서 우리는 임관했다. 경력에 따라 육군대위 또는 중위로. 그 훈련받던 꼴을 누가 봤으면 정말로 우습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군대에 소집해간 데는 연유가 있다. 피난시절 부산에서 이른바 서민호(徐珉濤)사건이 났다. 국회의원 서민호가 서아무개 대위를 권총으로 쏘고 이것이 정당방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었다. 국회에서는 서범석(徐範錫) 의원이 서상권(徐相權)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서의원의 구속을 맹렬히 따지고 있어서 서씨들 판이었다. 서민호 의원은 계엄고등군법회의에 기소되어 재판관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군법회의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 군법회의의 심판관은 하나도 법률이 정한 법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으니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의가 변호인측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급하게 된 정부는 1952년 4월 24일 부라부라 군법무관 임용법을 제정하여 그 당시의 이른바 군법무장교는 앞으로 2년 내에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면 법조자격을 주기로 하고 그때까지 군법회의 심판관 노릇을 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는 법조자격 없는 자를 군법무관으로 임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군법무관 임용의 길이 막히자 편법으로 법조자격 있는 제2국민병을 소집하여 장교지원서를 강제로 받게 된 것이다. 그 통에 아직 법조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시보들까지 끌려왔다.

내가 처음 부임한 곳은 육군제2군단사령부였고 부임한 날짜는 1953년 7월 7일이었다. 그러니까 휴전되기 불과 20일 전이요, 요 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전사할 염려는 우선 없는 때였다. 그래서 나는 내 일생에 돈 주고 사고파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다. 우선, 전쟁하는 군대에는 법무장교가 전혀 필요치 않은 존재였다. 전쟁을 하는 마당에 자질구레한 죄는 문제를 안 삼으면 되고 중죄인은 즉결처분으로 쏘 죽여버리면 되고, 고급장교의 사건은 후방으로 이송해버리면 된다. 군법무관이라는 것은 전방에서는 쓸모가 없었다. 그렇다고 전투병과 장교로도 쓸모가 없다. 나 같은 것은 M1총 하나 쓸 줄을 모르니 그런 것 데려다 무엇에 쓰겠는가? 그런데도 그 전쟁하는 군대에서 내가 육군대위라고 주변사령(週番司令)까지 하라는 데는 딱 질색이었다. 무엇을 알아야 하지. 17번 루트라고 하면 그게 어떤 길인지를 아나, 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무선전화로 수시로 육군본부 작전국에 전황보고를 해야 한다는데, 할 줄을 아나. 다행히 제2군단 법무부 선임하사가 군번이

10,000 얼마짜리 일등상사였다. 전쟁터에서 자란 놈이라 전쟁 속은 어느 장군 못지 않게 도사였다. 다만 사고뭉치여서 여기저기 부서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법무부까지 굴러온 놈이었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놈자 붙이고 반말을 쓰는 것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장교는 사병에게 존대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으니까. 이 일등상사를 데리고 군단장실에서 주변 사령을 하니까 책임은 막중한 군단장의 직무(당시의 제2군단장은 정일권 중장이었다)였지만 무사히 해낼 수 있었다. 당시 6사단 전쟁해서 지는 일 없고, 8사단 전쟁해서 이기는 일 없다는 말이 군대 내에 있었는데 사람이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하는 마당이라 상당한 미신적 요소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예컨대 수도사단의 부대마크가 동그라미 안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는데 부사단장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후 호랑이가 울 안에 갇혀 있으니 그게 되겠는가 하여 동그라미를 없애고 우승기형(優勝旗形)을 그렸다. 8사단도 7전 8기,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뚝이를 그렸다. 우스운 것은 11사단 마크는 붉은 방패에 '이기자' 라고 썼는데 그것이 창설사단장 마누라의 이름이란 것이었고, 26사단은 이명재(李明載) 장군이 창설했는데 부대마크가 붉은 동그라미 옆에 노란 반달이 붙어 있어서 자기 이름 자 밝을 '명' 자라는 것이었다. 아무튼 전쟁터에서는 쓸모없는 법무장교하다가 휴전이 되었는데 휴전협정도 법이라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로 되어 있는 날 자정이 되니까 쌍방에서 그렇게도 쏘아대던 대포소리가 딱 그치고 적막이 밀려왔다. 전쟁이란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 그 처참한 꼴, 후송되는 전사자, 부상자, 며칠을 굶어가며 잠을 못 자 총을 거꾸로 메고 졸면서 비틀비틀 도망쳐오는 패잔병들, 왜 인류가, 아니 동족이 서로 부셔가며 죽여가며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제2군단에 가니까 사형집행명령이 나왔는데 전임자(한윤수 대위)가 미뤄놓고 간 것이었다. 미뤄놓고 갔다가보다 집행날짜를 후임장교가 부임할 이틀 후로 정해서 다 준비시켜 놓고 떠난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입회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하니 이걸 어쩐다? 그러나 내가 군대에 몸담은 처지에 어찌랴. 사형집행규정이란 것이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공부해가지고 아침 일찍 현장엘 갔다. 군의 사형집행은 총살이고 5명의 사수가 쏘되 한 사람은 공포이고 누군지 모르도록 되어 있다.

사형수는 간첩이라는 25세의 미혼여성이었다. 7월 달이라 춥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가보니 사형인을 발가벗겨 눈도 가리지 않고 나무에 묶어놓고 있

었다. 키는 작달막했지만 통통 예쁘게 살이 찌고, 유방이랑 피부색깔이랑 육체미는 볼 만하였다. 집행장교로 나온 헌병장교 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무라며 옷을 입히라고 하니 대답이 이년이 침을 뱉으며 욕지거리를 하였다. 금방 죽을 사람이라도 옷을 다시 입혀주니까 고맙다고 하는 데는 이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의 군법회의는 군법회의가 내린 판결을 군법회의 설치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부임해 보니까 절도죄를 범한 병사에게 법에도 없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놓고 설치장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는 사건이 있었다. 무슨 사건이기에 그런가 하고 기록을 읽어보니 그 병사가 담요 한 장을 도둑맞아서 내무검열에 걸리게 되어 있었다. 다른 병사 것을 슬쩍 해다 채워놓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러면 그 병사가 또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내무검열에 기합을 먹어야 하니 그럴 게 아니라 미군숙사에 가서 미군 것을 훔치자, 그러면 자기 부대사람은 아무도 기합먹지 않고 무사할 수 있다 생각하고 K MAG(미군사고문단) 사병숙소에 가서 담요 한 장을 훔쳐가지고 나오다 들킨 사건이었다. 판결이유인 즉 미군의 군용물을 절취함으로써 한국군의 명예를 국제적으로 손상시킨 죄과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중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판결을 한 법무사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 참모장으로부터 엄명이 내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부임신고를 할 때 참모장이 어느 부대에서 전속왔느냐고 묻기에 판사로 있다가 새로 임관해서 처음 왔다고 하니까 그러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훌륭한 장교가 와서 좋다고 칭찬까지 들었고 그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할 사람 같지 않았기에 이 사건 사후조치 의견을 '판결부인'으로 올리겠다고 법무부장(황철신 중령)에게 말했다더니 나는 결재말을 자신이 없으니 유대위가 결재말을 자신이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사후조치 건의서에 이렇게 썼다. "절도죄는 재산죄로서 재산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필요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소지(所持)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지를 설정한 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오로지 내무검열 때 기합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으므로 도무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판결은 이를 부인할 수밖에 없음"이라고. 참모장은 결재서류를 보더니 내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법적으로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고 멋있는 사인을 해주어서 돌아와 부장보고 말하니 부장은 이제

됐다며 다음부터는 결재는 나보고 맡으라고 하더니, 아닌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부탁받은 사건까지도 나보고 결재를 맡아오라 해서 참모장한테 구체적 위협설이 어머니 타격의 착오가 어머니 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도, 나도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두말 않고 결재해주곤 하는 형편이었다.

나중에 연합참모본부 총장과 장관까지 지낸 것으로 기억하는 김종환(金鍾煥) 장군이 대령으로 2군단 일반참모로 와 있을 때, 그때는 휴전된 후였는데 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떤 소령 하나가 강간을 하였다고 해서 기소되었다. 특무대(지금의 보안대쯤 될 것이다)의 문관이 좋아하는 여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도저히 강간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법정에 나온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집에 그 여자가 방 하나 세들어 사는데 특무대원이 들락거렸고, 그날은 저녁 어둑어둑할 때인데 여름이라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모깃불을 피우고 동네 아낙네들이 몇 명 잡담하고 있었고, 그 여자도 같이 있다가 피고인이 오니까 여자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등잔불을 켜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해서 그 방 문에 튼넨 데로 들여다보니 여자는 아랫도리만 벗고 남자는 군화를 신은 채 바지만 내리고 일을 치르고 있는데 여자의 다리가 남자의 허리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 하도 우습고 망칙해서 다른 여자에게 손짓해서 와보라고 하여 보았으니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휴전 전에는 그런 사건 자체가 군법회의에 등장하는 일이 없었으니 그날 법정에는 군단장에서부터 많은 고급장교들이 방청을 나왔다. 피해자인 여자는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들이닥치더니 잠깐 보자고 하여 방에 들어갔고 남자는 군화를 신은 채 방에 들어가 입에다 손가락을 세우며 낮은 소리로, 떠들면 죽인다고 하여 아무 소리 못하고 당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변명은 물론, 그 전에 다방에서 만나 맥주도 마신 일이 있는 여자이고(그때 춘천에서는 다방에서도 맥주를 팔았다) 그날도 약속하고 간 것이며 마당에 여자들이 있어서 방에 들어가 군화를 벗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하여 신은 채로 우선 그렇게 관계를 했다고 강간임을 부인하고 있었다. 세력이 좋은 특무대원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법무부장은 그 부탁을 받고 이런 사건을 기소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참모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것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강변하고 강간죄가 안된다고 하는 일반참모들과 논쟁까지 벌였다고 하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그 사건의 범무사인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여 다른 심판관의 찬성을 얻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무부장은 나를 불러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이냐고 힐책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우리

형법이 나오기 전이고 일본형법을 쓸 텐데 나는 일본말로 일본형법을 외었다.

第177條 暴行又ハ脅迫ヲ以テ三歲以上ノ婦女ヲ姦淫シタル者ハ 強姦ノ罪ト爲シ二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十三歳ニ滿タル婦女ヲ姦淫シタル者亦同シ

법률문제에 관하여 일반참모에게 수모를 당한 법무부장은 그 후 나에게 여러가지로 고약하게 굴었다.

휴전되고 1년쯤 지나서 관내에서 빨치산 하나가 잡혔다. 실은 그 지방 공산당원인데 국군이 복진할 때 미처 도망하지 못하고 처와 함께 입산하여 빨치산이 되었다가 처가 자꾸 자수하자고 하니가 처를 산 속에서 죽여서 묻고 혼자 숨어 있다가 들켜 토벌작전 끝에 잡힌 자였다. 그런데 특무대는 이것을 인민군 소위가 간첩행위 중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렇게 허위발표를 해도 발표대로 맞추어서 처벌하면 어차피 사형감은 되니까 문제가 없었음지도 모르는데, 이 발표가 신문에 나고 신문을 본 미군사령부가 인민군 정규군인을 체포했으면 IPW(포로심문반)에서 심문하여 정규군인이면 포로대우를 해야 하니가 내놓으란다.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거창한 발표를 한 특무대는 이것을 인도해주었다가는 허위발표가 탄로날 것이고 그대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주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부랴부랴 군법회의에 송치해놓고 절대 미군에게 인도해주지 말란다. 아닌게 아니라 군법회의에서는 불기소를 해서 석방하든가, 군법회의 판결로 형을 선고해서 육군형무소로 보내든가 해야지 미군에게 넘겨줄 근거도 절차도 없다. 그런데 미군측에서는 태도가 강경하여 군단장에게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이라고 대드니까 군단장도 할 수 없이 미군에게 인도해주란다. 그러나 그럴 근거가 없다고 하니가 그러면 특무대가 도로 사건을 갖다가 특무대에서 넘겨줘! 한다. 우리는 특무대와 합의하여 아예 사건을 송치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고 돌려주었다. 그러니까 송치 받을 때 해주었던 기록영수증, 신병인수증 등을 회수하였다. 그런데 부장은 왜 특무대에서 영수증, 인수증을 받지 않았느냐고 성화다. 우리가 받을 때 해준 영수증, 인수증을 회수하고 돌려주었으면 됐지 무슨 영수증을 또 받으냐고 해도 막무가내로 우긴다. “유대위는 형식주의도 몰라?” 물론변동에 형식주의가 있고 수학에 형식주의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영수증 받는 게 형식주의라는 말은 듣다 처음이다. 법무장교라는 사람의 자질이 이랬으니 더

논해 무엇하랴. 그러나 그도 고인이 된 마당에 그만해둔다.

내가 전방에서 육군본부 법무감실 검찰과로 전속된 것은 1954년 12월 31일이었다. 전쟁하는 군대는 법무장교가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휴전이 되고 나니까 법무장교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 군대가 전쟁을 안하니 술먹고 사고내고, 재물 탐하고 여자 탐내고 급기야는 정치에까지 손대고 총칼 들고 쿠데타하게 된다. 우리가 휴전이 아니고 종전이었다면, 그리고 강화조약이나 평화조약을 맺었다면 60만씩이나 할 일 없는 군대를 먹이고 무력으로 정권 빼앗을 생각이나 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놈의 38선만 아니었다더라면, 6·25전쟁에 양쪽에서 쓴 전비, 양쪽의 희생자와 하는 일 없이 먹고 지내는 저 젊은 인력을 생산현장에 투입하였다면 우리가 왜 선진국대열에 못 들었겠나?

어쨌든 휴전 후의 육군고등군법회의에는 사건이 밀어닥쳤다. 5명의 검찰관으로는 야근을 하지 않고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바빴다.

육군경리단에서 대형 횡령사건이 나고, 타군(해군, 공군)과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현역군인이 낀 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이 나고, 크고 유명한 사건들이 속발하였다. 김창룡(金昌龍) 장군(육군특무부대장) 살인사건이 난 것도 그 당시였다.

나는 검찰관으로 이들 사건에 거의 관여했다. 그런데 특이한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육군본부가 피난지 대구에서 아직 서울로 오기 전, 대구에서 육군본부 브리핑시간에 그 현장에 한국군 소령 하나가 느닷없이 창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듣고 있던 유엔군 사령관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댄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한국군 장군에 의하여 범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으나 그의 권총에는 실탄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현장에서 테일러 장군에게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말한 일이 없고 다만 미군이 진실로 한국을 도우려고 와 있는가?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와 있는가? 말하라고 별로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말하였을 뿐이다. 쉽게 말하면 죽일 의사도 없었고 죽인다는 말도 한 일이 없다. 그러나 권총을 남의 가슴에 갖다댔으니 그것이 협박죄가 될 것만은 분명하지만 특무부대는 이것을 국방경비법 제15조(상관에 대한 폭행)의 죄로 송치하여 왔다. 공무집행중인 상관에 대하여 무기로써 위협한 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다. 그런데 미군이 어째서 한국군의 상관이 되느냐? 안된다고 고집하였다. 결국 그 장교는 평소의 행동에 비정상적인

점이 있었다 하여 미국군의관과 한국군의관을 공동으로 정신감정을 시켜 정신분열증환자를 만들고 예편시켜 버렸다. 나로서는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을 느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일본의 오오쓰(大津)사건—노서아(露西亞) 황태자 위해사건—을 연상하기도 하고, 요즘의 정신보건법 제정반대 이유를 수긍하게도 된다.

내가 군법회의에서 다룬 사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군대에 들어갈 때 얘기를 했으니까 나올 때 얘기도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군에 입대하니 법원에서는 휴직발령을 해서 나는 휴직판사였다. 내가 군에 들어갈 때는 육군보충장교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었고, 그것에 의하여 보충장교로 임관한 것이다. 그래서 군번도 사관학교 출신은 다섯 자리 숫자였고 나는 보충장교니까 여섯 자리 220947이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보충장교령에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데 대위는 2년이고 소령은 1년이며 중령부터는 보충장교가 없었다. 그러니까 1955년 7월 6일이면 나는 임기만으로 예편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육군에서는 나를 예편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법령의 근거를 대며 예편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법무감에게 항의하니, 누가 진급시켜 달랬나? 소령으로 진급발령을 해놓고 또 1년을 복무해야 한다고 한다. 기존의 법무장교는 같은 대위라도 모두 나보다 선임자인데 내가 추월해 소령이 된 꼴이 되니 그것도 우습고, 지프차 한 대도 주지 않으면서 소령계급장 달고 전차(그때는 서울에 전차가 다녔다)타는 것은 대위달고 전차타는 것보다 더 창피한 노릇이니 난감했다. 그때는 헌법을 개정해서 군법회의의 최종심이 대법원으로 귀일(歸一)되었으나 군법회의법 등의 절차법이 나오기 전이라 법무감 등 고급장교는 장차를 위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과 교분을 갖기를 바라고 있을 때이다. 우리 휴직판사들은 김병로 대법원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신상에 관한 탄원과 동시에 육군에서 요청이 있으면 육군본부를 한번 방문하셔서 군사법의 실정을 시찰해주십사 청했다. 대법원장께서는 쾌락하시고 육군법무감도 좋은 기회다 생각했으므로 우리를 치하하면서 정중히 대법원에 시찰을 요청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대법관 일동과 법무감실 시찰을 오셨고 군대에서 브리핑이야 여부 잘하나 G1(인사)부터 시작하는데 대법원장이 그 급속성으로, 육군이 모두 몇 명인데 그렇게 많은 법무관이 필요해? 법원도 판사 모자라 큰일이야, 소집해온 우리 판사 임기도 지났으니 제대로 대시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소령 1년도 지나고 이제 진급도 할 수 없고 제대도 시키지 않던 우리는 1956년 8월 31일 예편되어 법원에 복직하

였다.

예편발령을 받고 즉시 대법원에 신고하여 1956년 9월 1일자로 복직되었다. 그런데 군에서 예편날짜를 1956년 10월 31일로 변경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군인연금법도 퇴직금 규정도 없을 때니까 두 달 뒤로 발령해 가지고 그것을 퇴직금 몫으로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두 달 동안 월급을 이중으로 탔다.

예편 인사차 갔을 때 같이 간 정태원(鄭台源) 판사가 공연히 시키지도 않은 말을 대법원장께 했다. “유판사는 충청도 사람이어서……”,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김병로 대법원장이 노발대발했다. “고향에 있으니까 사건부탁 들어온다. 이거지? 자기 아버지가 부탁해도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뭘 그래?” 공연한 야단을 맞고 나오면서 정판사보고 왜 시키지도 않은 소릴 해가지고 나만 야단맞게 하니? 코가 쑥 빠져 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비서관이 쫓아 내려왔다(그때는 대법원장 비서실장 그런 거는 없고 비서관도 하나뿐이었다). “가서 6개월만 기다리시래요.” 그 비서관 말만 믿고 나는 대전가서 6개월만 기다리면 서울로 간다 생각하고 누구보고도 말 않고 기다렸으나 대법원장은 정년으로 퇴임하시고 후임의 선출 때문에 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대법원이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2년 6개월이 지나서 1959년 1월 10일에야 제2대 조용순(趙容淳) 대법원장의 발령으로 나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전근하게 되었다. [변호사]

대우조선 파업사건

문 재 인

1. 머리말

최근 1~2년 동안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눈에 띄게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의 형량이 높아지고, 해고사건의 경우 절차의 엄격성이 완화되는 한편 정당성의 인정범위는 대폭 넓어져서 노동자의 승소율이 격감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사건 역시 과실 상계율이 높아지는 등 거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제6공화국 초기보다는 상당히 경직된 것으로서, 경제침체 국면과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이른바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책임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하면 제6공화국 초에는 노동운동이 생존권 차원에서 이해가 되었으나 이제는 지나친 것 같아서 밋게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그러한 인식을 판결문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표출한 일은 거의 없었으며, 대개 판결문의 행간이나 여백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전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의 한 가운데서 나온 대우조선 파업사건에 관한 항소심 판결(마산지방법원 91. 11. 22. 선고 91노 863판결 등)은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보수화경향을 양형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배경을

이루는 법원의 인식을 공식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하다.

물론 어느 한 판결만을 두고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을 논하는 것은 자칫 특수성을 일반화하는 무리가 될 수 있으나, 이 판결이 극명하게 드러내는 경향성은 최근의 전반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법원 상층부가 이 판결에 대하여 대단히 용기있는 판결이라고 칭찬하면서 회의에서 소개까지 하였다는 말도 들린다. 따라서 이 판결은 최근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즉 법원이 속으로 품고는 있었으나 감히 말하지 못하였던 생각을 어느 소신있고 용기있는 판사가 대담하게 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통하여 노동사건을 보는 법원의 인식과 시각을 살펴보고, 그 인식과 시각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판결 요지

위 판결에서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시각을 표출하는 부분은 양형판단 부분이다. 이 부분을 가감없이 그대로 옮겨본다.

헌법과 노동관계 기본법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실 근면하고 책임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덕분으로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온 반면 기업가 등 사용자는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였고 또한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외면하여 왔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시기에 는 근로자 스스로가 위와 같은 제권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 있어 다소의 폭력 등 과격행위가 수반되는 일이 있어도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측을 옹호하여 대체로 이를 용인 내지 용서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즉 임금 수준은 선진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또한 노사쌍방의 노동관계에 대한 의식수준도 상당한 정도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종래와 같이 폭력이나 집단적인 과격한 행동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노사문제를 충분히 타협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보자. 노동운동의 초기단계에서와 같은 경제호황은 지나간 꿈, 엄청난 적자가 계속되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 직접적인 원인이 과도한 임금인상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노동생산성의 현저한 저하에 있다고 한다.

노사간의 노동관계도 궁극적으로는 노동계약이니만큼 임금인상이 되면 그만큼 나은 양질의 노동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금은 상당 정도가 인상되었는데도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기이한 현상이 어찌서 나타나는가. 우리 근로자들의 성실 근면하고 책임감있던 근로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이것은 노동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임금인상만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폭력적이고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에서처럼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기업과 사회 나아가 국가경제를 파탄에 몰아넣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식의 노동운동은 대다수의 선량한 근로자의 뜻하는 바도 아니요, 헌법과 근로관계 기본법의 순수한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적어도 이제부터는 위와 같이 폭력에 호소하는 식의 노동운동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되어야 하고 그 수단방법 면에서 창조적인 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기본자세에 이 사건 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규모, 폭력성의 정도, 회사 및 사회에 미친 영향, 노동조합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직책, 영향력, 피고인들의 전력,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기록에 편철된 동종 유사사건에 관한 전국 각 법원에서의 양형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판시하에 위 판결은 10명의 피고인 중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게만 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하여는 집행유예(5명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던 충무지원의 1심판결을 파기하여, 실행자 2명의 징역을 1년 6월로 연장하고 집행유예자 8명 중 5명에 대하여 실행(2명 징역 10월, 3명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모두 법정 구속하였다.

같은 날 위 법원은 이 사건 외에 대우조선 노동자에 대한 다른 2건의 형사 항소심 판결을 이어서 선고하였는데 그 2건의 판결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즉 파업 관련자 구속에 대한 대우조선 노조의 항의·시위·농성사건에서 4명의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집행유예(3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던 1심 판결을 파기하여 그 중 2명에게 실형(1명 징역 10월, 1명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이적표현물 소지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였다.

3. 대우조선 파업사건의 경과와 공소사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가운데 노동사건의 항소심에서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연장하는 등 양형이 대폭 상향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전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대체 같은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가치판단이 이토록 다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면 1심 법원은 판사의 자질이 의심되고,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면 항소심 판결은 사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사안을 두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가장 책임이 무거운 노조위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① 대우조선 노조는 1989년도 단체협상시 대우조선의 근로조건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등 동종 업종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누적된 적자로 산업합리화 조치대상이 되었음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데 동의하여 임금이 2년간 동결되는 것을 감수하였다.

그러한 노조측의 양보는 노사화합과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대우조선은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흑자로 전환되면서 1991년 상반기 동안에만 73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획기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이룩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90년 12월 31일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노조는 1990년 7월경부터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치면서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협약안을 준비하고, 1990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그 안을 확정된 후, 같은 달 29일 회사에 교섭안을 제출하였다. 그리

하여 회사측의 검토기간이 끝난 1990년 11월 3일부터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타결된 조항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노조는 1990년 12월 26일 대의원 대회의 결의에 따라 쟁의발생신고를 하였다.

② 그런데 교섭이 시작되기 전부터 노사간에 여러가지 신경전이 벌어지다가 1990년 11월 2일 회사 소장이 반장에게 지시하여 노조원들의 탈의실 개시판에 부착된 노조기관지 철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노조기관지 철은 노조가 생긴 이래 발행한 1호부터 141호까지의 기관지를 모두 철해둔 것으로서 노조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노조는 회사의 최고책임자인 소장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노조를 부정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수차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그에 대한 항의방법으로 회사가 발행하여 노조원들에게 배포하는 사내회보 찢기운동을 전개하여, 각자에게 배포되는 사내회보를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 것을 노조원들에게 지시하였다.

노조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1991년 1월 31일까지 사이에 42회에 걸쳐 배포된 사내회보를 찢어버렸는데, 이것이 첫번째 공소사실로서 회사의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하여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다.

③ 쟁의 발생신고 후에도 교섭이 계속되었으나 난항이 거듭되자, 노조는 냉각기간이 지난 후인 1991년 1월 14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출근시간 전에 5개의 각 출입문마다 4~500명씩의 노조원들이 집결하여 구호와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하다가 출근시간 10분 전인 07:50에 일제히 출입문을 통과하여 출근하는 이른바 출근투쟁을 한 다음, 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노조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사는 위 총회를 승인하면서 개최시간을 15:00까지로 지정하였으나, 10,000여 명의 조합원이 한곳에 집결하여 토론 후 투·개표를 한 까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회사가 지정한 시간을 넘기고 퇴근시간인 17:00이 지난 17:30경에야 총회가 끝났다.

이것이 두번째 공소사실로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15:00부터 부서별 작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다.

④ 찬반투표 결과 82%가 파업에 찬성하였으나 노조는 가급적 파업을 피하기 위하여 중요한 쟁점사항을 철회한 가운데 평화적 교섭을 계속하였고, 끝내 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며칠 동안 하루 1~2시간씩 부분파업을 하다가

결국 1991년 2월 8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전면파업 돌입 이틀 전인 1991년 2월 6일의 부분파업시 노조는 부분파업 시간동안 조합원들이 할 프로그램으로서, 노조측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여 회사측에 대하여 마지막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조립용 너트를 고무줄에 걸어 쓸 수 있는 새총 제작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약 5,000여 개의 새총이 제작되었으나 파업이 끝날 때까지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세번째 공소사실로서 노조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게 했다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었다.

⑤ 전면파업 기간인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노조원들은 회사 내에서 농성을 하였는데, 절차를 준수한 합법적인 파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찰의 투입이 시사되었다. 이에 노조는 경찰의 투입을 염려하여 중장비로 회사의 각 출입문을 봉쇄하고 회사측의 청원경찰과 함께 출입문을 경비하였으나 회사측과의 사전합의에 따라 관리직원들의 출입은 허용하였다.

또한 위 기간동안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등 50여 명의 노조원이 110미터 높이의 폴리아트크레인 위로 올라가 농성하였고, 매일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폴리아트크레인 앞에 2~3,0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모여 집회를 하였다. 이것이 네번째 공소사실로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다.

⑥ 당시 대우조선은 특수선 사업부와 ILS 부서 등 2개 부서가 방위산업이었고, 전체 노조원 10,000여 명 중 600여 명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의 지시 또는 선동에 따라 특수선 사업부 소속 노조원 중 200여 명이 2월 8일부터 13일까지, ILS 부서 소속 노조원 중 130여 명이 2월 8일부터 9일까지 파업에 동참하였다. 이것이 다섯번째 공소사실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⑦ 한편 출근투쟁중이던 1월 16일경 회사 소장이 노조가 부착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다음날인 1월 17일 09:00경 그에 대한 항의차 60여 명의 노조원을 인솔하여 소장실로 찾아가서 면담을 요구하였고,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복도에서 20여 분간 연좌농성한 사실이 있었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대하여는 이 점도 공소사실로 추가되었고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다.

이상 7개항의 공소사실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전부이다.

전면파업과 폴리아트크레인 위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양보를 얻지 못하여 파업이 장기화할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김우중 회장과 담판조차 무위로 끝나자, 노조는 경찰 투입으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강경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 중요 쟁점사항을 대부분 양보한 가운데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서명하고 파업을 종결하였다.

그때 회사와 노조는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노조와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파업은 7일 만에 끝나고 정상조업으로 복귀하였으며, 2월 20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이어서 진행될 임금협상을 준비중에 있었는데, 파업이 끝난 지 한 달 보름가량 지난 3월 27일에 이르러 경찰은 돌연히 노조사무실을 급습하여 피고인들을 연행 구속하였다.

한편 회사는 파업 전과 파업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1년 6월 15일 임금협상이 타결되자 비로소 고소, 고발 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의 구속에 발목이 잡힌 노조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년 2월의 대우조선 파업은 부분적인 위법사실이 문제되었을 뿐 기본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한 합법파업이었고, 파업기간이 짧았으며 경찰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타협과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종결되었다. 또한 파업기간중 단 1건의 파괴나 폭력사태가 없었으며, 노사간의 물리적 충돌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최근 수년 동안 흔히 보아왔던 다른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에 비하여 오히려 모범적인 파업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가장 무거운 노조위원장의 공소사실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가운데는 과연 유죄인지 의심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사실관계나 법률론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대조적인 것만 간단히 살펴본다.

회사회보 찢기운동의 경우, 회보의 배부는 회사의 홍보업무라 할 것이나

이미 배부된 회사회보의 처분권은 배부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므로 읽지 않고 찢어버리는 것도 그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노조가 회보 배부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불법적인 노조기관지 파기에 대한 사과요구라는 상당한 이유하에 배부받은 회보를 보지 말고 찢어버리자라고 한 것이 과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인 절차이므로 설사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의 사용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투표를 위하여 회사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노조원 총회에 대하여 회사의 지정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소사실 중 가장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폴리앗크레인 점거농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파업기간 동안 노조원들은 관리직 사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작업장에서 농성함으로써 이른바 합법성이 인정되는 부분적, 병존적 직장 점거를 하였고, 폴리앗크레인 역시 평소 노조원들이 작업하는 작업장의 일부였다.

또한 당시 전면파업중이었을 뿐 아니라 폴리앗크레인 종사자 전원이 노조원으로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위법한 대체노동을 하지 않는 한 가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노조원들의 폴리앗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인한 회사의 구체적, 실제적 손해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파업 당시 폴리앗크레인 점거농성에 대한 위법성과 폭력성이 특히 강조되었으나 냉정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역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었고, 그러한 까닭에 검찰도 이 점만으로 자신있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출입문 통제 및 사내집회 등과 함께 싸잡아서 두루뭉수리한 내용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1심의 양형이 그나마 사안의 정도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지역에 소재하여 사건의 경과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1심 법원이 10명의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최저수준의 형을 선택하고 그 중 8명에게 단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사안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심에서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사안의 정도가 무거웠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의 비중으로 인하여 전원 석방하기는 어려웠던 분위기 때문에 그 석방을 항소심으로 미루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사정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자료가 추가 제출된 바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법정태도가 아주 나빴던 경우에 시국사건의 항소심에서 매우 드물게 형이 상향된 전례가 있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나 방청인들은 노래 한번, 구호 한번 외친 적이 없으며, 법원에 대하여 무례한 태도를 보인 일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은 모두 1심에서 석방되지 못한 2명의 석방을 얻어내기 위하여 최대한 온건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밝히는 한편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의 입증과 법률론의 개진에 치중하였고, 많은 유리한 정상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사안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읊긴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현실에 대한 지극히 편파적이고 부정적인 인식과 왜곡된 시각에 따라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양형을 도출한 것이다.

4. 판결 요지에 대한 비판

1)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임금인상만 요구한다는 편견

위 판결은 임금은 상당 정도 인상되었는데도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단정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성실근면하고 책임감있는 근로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개탄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일은 안하면서 임금만 올려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들에게서 흔히 듣던 이야기이다. 과연 그러한지 통계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자.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생산직 근로자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연도별 노동생산성 지수와 전년대비 증가율은 <표 1>과 같다.

한편 미노동성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여 같은 기간 동안 불변부가가치로 산출한 우리나라와 일본 및 대만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와 전년대비 증가율은 <표 2>와 같다.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결코 저하한 일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표 1〉 연도별 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가율

연도	물적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1985	100	7.1	100	8.0
1986	118.0	18.0	115.0	15.0
1987	135.1	14.5	128.2	11.5
1988	154.2	14.1	145.0	13.1
1989	173.0	12.2	156.7	8.1
1990	200.0	15.6	180.0	14.9
91.3/4	239.1	16.0	205.0	11.9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92. 2/4분기 노동동향분석」 196쪽

〈표 2〉 동양 3국 노동생산성 비교

연도	한 국		일 본		대 만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1985	100	7.1	100	7.1	100	3.7
1986	118.3	18.3	97.3	2.7	116.0	16.0
1987	140.5	18.7	104.4	7.3	130.8	12.8
1988	159.3	13.5	114.0	9.2	135.5	3.6
1989	165.3	3.7	121.4	6.4	140.5	3.7
1990	179.2	8.4	126.7	4.4	140.2	-0.2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1992년 KLI 해외 노동통계」 110쪽

는 것은 터무니없는 인식으로서 일부 기업가의 근거없는 악의적인 푸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기업가들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서도 그렇게는 말하지 않고, “근래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법원이 전경련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여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전경련의 주장은 맞는지 살펴보자.

〈표 3〉 임금과 노동생산성 상승률

(단위 : %)

연도	소비자물가	명목임금	실질임금	물적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1985	2.5	9.9	7.3	7.1	8.0
1986	2.8	9.2	6.2	18.0	15.0
1987	3.0	11.6	8.3	14.5	11.5
1988	7.1	19.6	11.7	14.1	13.1
1989	5.7	25.1	18.3	12.2	8.1
1990	8.6	20.2	10.7	15.6	14.9
91.2/4	10.0	17.1	6.5	16.0	13.5
지수	140.1	194.2	166.7	221.8	194

주 : ① 물가·임금은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 생산성은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 지수」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의함.

② 지수는 1985년을 100으로 할 때 1991년 상반기 현재의 지수임.

③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은 훨씬 높아 1991년 상반기 현재의 지수가 226.4임.

〈표 3〉은 1985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비교한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한 것은 1989년뿐이며, 지난 6년간을 합산하여 볼 때 실질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85년 이전까지는 통계자료를 인용할 필요조차 없이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턱없이 못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근년의 경쟁국에 비한 높은 임금인상률은 저임금구조의 청산을 통한 임금구조의 조정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위 판결은 과거 오랫동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구조의 혜택을 누리던 자본측이 그러한 구조의 청산과정에서 터뜨리는 일방적인 불만을 편파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더욱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제 근로자들도 먹고살 만하게 되었다는 편견

위 판결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즉 임금수준이 선진 세계각국과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노동운동의 활성화 및 경제구조의 조정에 힘입어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 수준이라 함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재계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진국 수준을 들먹이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다만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임금수준이 높아졌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다음 자료들을 보자.

〈표 4〉 주요국의 월임금 추이(제조업)

(단위 : 미국달러, %)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1980	241.48	1,253.43	1,078.77	223.21
81	258.69(7.1)	1,381.04(10.2)	1,177.56(9.2)	258.91(16.0)
82	276.46(6.9)	1,434.28(3.9)	1,082.38(-8.1)	267.64(3.4)
83	292.35(5.7)	1,537.73(7.2)	1,175.11(8.6)	277.89(3.8)
84	304.30(4.1)	1,624.37(5.6)	1,230.21(4.7)	307.73(10.7)
85	309.94(1.9)	1,677.95(3.3)	1,255.55(2.1)	318.80(3.6)
86	334.09(7.8)	1,719.82(2.5)	1,812.25(44.3)	369.64(15.9)
87	399.60(19.6)	1,764.55(2.6)	2,165.38(19.5)	482.70(30.6)
88	537.35(34.5)	1,817.04(3.0)	2,486.93(14.8)	596.36(23.5)
89	732.18(36.3)	1,864.26(2.6)	2,343.68(-5.8)	747.40(25.3)
1990 1/4	755.03(24.7)	1,880.67(1.4)	1,780.68(-5.8)	747.40(25.3)
2/4	780.65(10.4)	1,913.64(2.9)	2,217.26(-5.0)	749.57(9.1)

- 주: ① 괄호속은 전년 또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② 자료는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와 일본 노동성의 「노동백서」 등 각국 정부의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의 「1991년도 임금관련 통계자료집」, 35쪽에서 옮김.
 ③ 각국의 월임금은 단위시간당 임금률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에 따른 실지급 임금이므로 시간당 임금 수준과는 차이가 있음.
 ④ 달러화 기준 임금 추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표에 의한 월임금 증가율은 실제의 임금 상승률과 차이가 있음.

〈표 4〉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은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며, 대만에 근접하고 있으나 시간당 임금에서는 여전히 뒤떨어진다.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물가, 특히 생필품 물가와 부동산 가격, 사회보장제도 등에 의하여 큰 차이가 나므로 통화 가치로 환산한 임금액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요소들까지 중

〈표 5〉 주요국의 주간근로시간 추이(제조업)

(단위 : 시간)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1980	53.1	39.7	41.0	50.9
81	53.7	39.8	40.8	48.4
82	53.7	38.9	40.8	48.4
83	54.4	40.1	41.0	48.4
84	54.3	40.7	41.6	48.8
85	53.8	40.5	41.4	47.4
86	54.7	40.7	41.0	48.1
87	54.0	41.0	41.2	48.1
88	52.6	41.1	41.7	47.7
89	50.7	41.0	41.4	47.0
1990	49.8	40.8	40.8	46.6

출처 : 자료는 위와 같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1991년도 임금관련 통계자료집」, 35쪽 및 「1992년 KLI 해외노동통계」, 96쪽

합하여 비교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의 경쟁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통계 연감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49.8시간으로서 이집트, 수단에 이어 세계 3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경쟁국인 대만의 46.6시간, 싱가포르의 48.5시간, 홍콩의 44시간에 비하여 많은 것은 물론 후진 개발도상국들보다 많은 근로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이나 생활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는 우리나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하는 것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자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음에도 위 판결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과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3) 임금상승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편견

위 판결은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적자가 계속되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직접적인 원인이 과도한 임금인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의 약화와 노동생산성의 현저한 저하에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러화를 기준으로 할 때 1987년도 이후의 임금상승률이 급등한 점은 우리나라와 대만이 비슷하나 대만의 경우 경제위기는커녕 국제수지의 흑자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임금인상이 국제경쟁력 약화의 부분변수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본질적인 책임은 경제구조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근본원인을 호경기시절 기술개발 투자를 등한히한 사업자득적인 결과로 기술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한 과소비, 급격한 환율인상, 한계에 이른 재벌체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가 촉진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통계에 의하면 경제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꾸준한 안정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액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위기론을 부인하고 구조조정기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쨌든 성장과 수출증가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제수지가 악화된 것은 수출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소비성 수입의 증가가 주원인이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부동산투기와 과열된 내수경기로 과소비 심리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적 무능에 있다.

1992년도에 들어서서 과소비 심리가 진정되면서 수입증가세가 둔화되자 국제수지가 대폭 개선되기 시작하여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월간 수지의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증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의 높은 임금인상이 전적으로 노동쟁의의 산물만은 아니며 불가피한 저임금구조의 청산,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초과, 과열된 건설 경기에 의한 건설인건비의 급상승으로 인한 유발효과, 물가 및 부동산가격의 급등 등 제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된 책임을 임금인상에 두고 그 원인을 근로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과거 저임금구조에 안주하여 기술개발을 등한하였던 기업과 제6공화국 내내 경제정책의 무능을 노출하였던 정부측의 책임미루기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4) 노동운동이 폭력적이고 과격하며 이기적이라는 편견

위 판결에는 전체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짙게 깔려 있

다. 그 단적인 표현이 노동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임금인상만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기업과 사회 나아가 국가경제를 파탄에 몰아넣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지독한 매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노사분규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기업가가 울분에 차서 말하는 듯하다. 과연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그와 같이 폭력적이고 과격하며 이기적인가.

정부통계에 의하여 1987년 이후 노사분규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단위: 건, %)

연도	총발생건수	합법비율	불법비율
1987	3,749	5.9	94.1
1988	1,873	20.4	79.6
1989	1,616	31.5	68.5
1990	322	43.2	56.8
1991	234	60.3	39.7
1991.6	187	62.6	37.4
1992.6	146	65.1	34.9

주: ① 노동부 자료에 의함

② 불법비율은 적법절차를 거쳤으나 파업중의 행위로 폭력행위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된 경우를 포함한 것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권위주의 정치체제하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7년 하반기부터 1~2년간 노동운동이 대폭발하면서 질차를 준수할 여유도 갖지 못하였으나, 그 후 노사분규는 매년 격감하고 있으며 합법파업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나 경제적 손실액 역시 크게 줄었으며, 초기와 같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집단행동은 거의 없어졌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노사쌍방이 인내하면서 쟁의발생 자체를 가급적 피하고 교섭에 의한 타결률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임금상승률도 1990년을 고비로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 역시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면서 욕구를 자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쟁의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과격한 집단행동을 떠올리는 것은 적법절차를 준수할 여유가 없었던 1987년도 당시의 노동쟁의를 뇌리에 심어 둔 고정관념적인 선입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상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판결이 있었던 1991년은 그 전년부터 노사분규의 건수와 양상이 이미 크게 변모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위 판결이 그러한 변모에는 눈을 감은 채 고정관념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5) 사건에 대한 왜곡

위 판결은 대우조선 파업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게 한 것과 같은 경우라고 표현함으로써 파업에서 대단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수단이 사용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우조선 파업사건에서 다소나마 과격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면 새총 제작과 폴리아트크레인 점거농성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충돌이 전혀 없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였다는 표현은 참으로 악의적인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위 판결이 양형참작 사유로 삼았다는 '동종 유사사건에 관한 전국 각 법원에서의 양형'이란 1990년 4월 현대중공업의 폴리아트투쟁사건의 경우를 말하므로 전쟁터를 방불하였다는 것 역시 위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위 사건과 대우조선 파업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990년 2월 9일 노조위원장이 구속되고, 이어서 4월 20일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수석부위원장마저 구속되자, 4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비대위의 주도로 구속 노조간부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그날부터 4월 24일까지 태업한 후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면파업을 하였다. 위 태업 및 파업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파업시 노조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관리직 사원들을 배제한 가운데 회사 내에 150여 개의 텐트를 설치하여 철야농성하면서, 경찰 투입에 대비하여 사제 박격포, 엘피지 가스통,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준비하는 한편 경찰 투입시 비대위 의장 등 일부는 폴리아트크레인 점거농성을 하고 부의장 등 일부는 야전지휘부를 구성하여 폴리아트크레인 지휘부와 무전연

락을 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4월 28일 06:00경 경찰 병력이 회사 내로 진입하자 노조는 사제 박격포를 발사하고 화염병과 볼트, 너트 등을 투척하며 저항하였고, 저항이 무위로 끝나자 비대위 의장 등 70여 명은 사전계획에 따라 폴리아트크레인 위로 올라가 점거 시위, 농성을 5월 10일까지 계속하였고, 그동안 나머지는 야전지휘부의 주도하에 가두에서 또는 도로를 차단한 가운데 화염병 투척시위를 하였다.

폴리아트크레인 점거농성자는 점거기간 동안 회사를 장악한 경찰과 대치하면서 위에서 볼트 등을 투척하여 회사 경비대원에게 전치 2주의 뇌좌상 등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위 파업은 경찰의 진압에 의하여 종결되었고, 노사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 즉 1990년 4월의 현대중공업 폴리아트투쟁과 대우조선의 파업은 일부 노조원이 폴리아트크레인 위로 올라가 농성하였다는 점만 다를 뿐 그 나머지 점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므로 참작할 동종 유사사건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이 대우조선의 파업을 현대중공업의 사건과 비교하여 전쟁터를 방불하게 한다고 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현대중공업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모두 25명 가량이었는데 1심에서 이들 중 4명에게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을 뿐 나머지 전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비대위 의장을 제외한 실형자 3명의 형이 징역 1년으로 감경되고 집행유예자 중 일부도 형이 감경되었다. 물론 항소심에서 형의 상향은 전혀 없었다. 비대위 의장 등 실형자 중 일부는 위 사건뿐 아니라 그 이전의 위법 사실도 공소사실에 추가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위 판결은 사안의 정도가 훨씬 무거운 현대중공업사건의 양형보다 오히려 훨씬 무거운 양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대우조선의 노무 관련 기밀문서

대우조선 노조는 위 판결 선고 전인 1991년 9월 13일 회사 인력 2부가 작성한 5건의 노무관련 기밀문서를 입수하였다. 문서의 이름은 '91상반기 노사관계 동향분석', '91하반기 노사관계대책', '1~4대 대의원 현황분석', '5대

대의원 선거 기본전략', '대우조선 노무동향' 등이었다.

이들 서류는 회사가 노조대의원들의 개별성향과 동태를 감시 파악하고 있음은 물론 강성 대의원에 대한 낙선, 출마저지, 형사조치를 통한 축출 등을 도모하고, 1991년 9월로 예정된 5대 대의원선거에서 회사측 지지자들로 하여금 총원의 80%를 차지하게 한다는 목표하에 인력담당 임원을 책임자로 하는 담당별 선거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등의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실시하는 등 노조의 운영에 깊숙히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무지방 노동사무소는 이들 문서와 관련하여 회사측에 부당행위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이 문서들이 회사측의 문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문서들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우조선 노무동향'이다. 이 문서는 다른 문서들과 달리 제목 속에 대우조선이란 회사명이 들어 있고, 노민추의 회칙 및 강령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 용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노민추 핵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저촉여부 수사를 추진한다는 등 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외부의 정보기관이 보고용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작성하였다면 정보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는 특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두 가지 협조사항을 당부하고 있는데, 첫째는 1심에서 징역 1년씩의 실형을 선고받은 노조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대하여 1992년 입투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까지 수감이 필요하므로 형량을 1년 6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은 3명에 대하여 집행부의 강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실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는 대단위 사업장의 노동사건에서 법원의 태도와 무관하게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형사판결에 대한 협조요청이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위 협조사항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꼭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위 판결은 위 협조사항이 요구하는 5명에 대하여 위 협조사항이 요구하는 꼭 그대로 형량을 연장하고 실형으로 전환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공교롭기 짝이 없는 우연일까 아니면 협조가 이루어진 결과일까?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6. 맺는 말

사회적으로 가치판단이 크게 나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가치판단을 받아들여느냐가 양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판결은 사건의 동기, 경위, 사안의 정도, 사회적 영향 등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용어 속에 가치판단을 얼버무려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양형의 경중에 따라 법원의 가치판단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법원은 종종 가치판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집행유예와 같은 타협 판결로서 이쪽저쪽 모두로부터 비난받기를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사건에 대한 단순한 처리에 그쳐서는 안되며, 사회에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법의 적극적 기능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치판단이 미묘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수록 판결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판결은 어쨌든 가치판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면이 있다. 종래의 판결문이 서로 잡혀 있는 고식적인 표현방식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형식상 산뜻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모처럼 판결문에 담은 가치판단이 지극히 편파적이고 객관성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실망과 염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외에는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항소심 법원이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휘두를 때 형사사법의 정의는 회복할 길이 없고, 피고인의 인권 역시 보호받을 길이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다른 나라에서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경과를 불과 몇 년의 단기간 동안 압축하여 겪고 있으므로 문자 그대로 격변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격변과 짧은 자율의 경험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성숙속도는 오히려 대단히 놀랄 만한 일로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노동운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오랫동안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노동운동에 대한 터무니없는 적개심이었다. 사회구성원 전원의 고른 삶의 향상을 지향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자들과 노동운동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나

부정은 사회의 발전방향에 역행하는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

‘노가바’ 저작권법 위반사건

박 성 호

1. 판결 요지

1) 사건의 개요

허병섭 목사는 동월교회 목사 및 한국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의 소장대리로 재직하면서 기독교적 민중교육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원풍모방, 청계피복노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행사, 노동쟁의 등을 할 때 부르던 노래 중에서 <전우가 남긴 한마디>, <마음 약해서>, <풍당풍당> 등 기존 가요나 동요 등의 곡조에 노동현실에 대한 풍자 등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에 관하여 흥미를 갖게 되었다. 허목사는 구전되어 불리고 있는 이러한 가요들의 가사를 수집·정리·분석하여 당시 그가 관심을 갖고 연구중이던 민중교육운동의 전개방향에 대한 연구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아래 허목사는 1981년 3월경부터 노동자들을 통하여 60여 개의 가사들을 수집한 뒤 기존 가요의 곡명을 밝힌 가운데 그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노동자들에 의해 불리는 곡명 및 가사를 적어넣었다. 그리고 서문과 분류목차를 첨가, 정리한 다음 『노동과 노래』라는 제목의 연구자료집 100부를 인쇄 제본하여 그 중 70부를 박형규 목사 등 위 연구소 회원 및 목사들에게 연구자료로 배부하였다.¹⁾

이에 대하여 이른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허병섭 목사를 고소하였고 서울 지방 검찰청 '공안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허목사를 기소하였다.²⁾

2) 적용 법규

구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및 제3항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부정출판공연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5조에 의하면 부정출판공연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하도록 규정된 친고죄이다.

한편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여덟 가지 사유를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침해행위'로서, 일반 공중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발행할 의사 없이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제하는 것 ② 자기의 저작물 중에 정당한 범위 내에 있어서 절록인용(節錄引用)하는 것 ③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췌 수집하는 것 ④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문구를 자기 저작한 각본에 삽입하거나 악보에 총용하는 것 ⑤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삽입하는 것 ⑥ 회화를 조각물 모형으로 제작하고 또는 조각물 모형을 회화로 제작하는 것 ⑦ 각본 또는 악보를 교육의 목적으로 하여 공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방송하는 것 ⑧ 음반·녹음 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의 용(用)에 공(供)하는 것.

3) 문제의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 702판결³⁾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허병섭 목사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10. 14. 선고 85노 3363판결)은

1) 사건의 개요는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10. 14. 선고 85노 3363판결」과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 702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2) 『법률신문』, 1991년 9월 12일자, 1면 기사 참조

3)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1991. 제906호, 2461~2463쪽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책자 편찬의 동기, 위 가사들의 자연발생적인 노동민요적 성격 및 그 수집방법, 위 책자의 발간부수 및 그 배포의 상대방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위 책자의 발간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책자를 편찬 배포함에 있어 일반인으로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탈하여...가요의 작곡자 및 작사자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에 대한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항소심에 환송하였다.

.....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비침해행위(구저작권법 제64조 제1항-필자주)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고덕은 인용자). 그런데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낙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곡명 및 가사와 원곡의 곡명을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목차를 첨가 편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성명은 밝히지 아니한 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발행할 의사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한 것으로서 악곡의 전부와 가사를 그대로 편집한 것은 자기의 저작물의 종된 자료로서 이를 인용하거나 또는 학문적, 예술적 저작물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이를 삽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구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는 연구원 4명과 목사와 기독교청년들인 회원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인쇄된 책자 50부를 동월교회의 교사협의회에, 20부를 민중교육연구소의 목사 등에게 배부하고 30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연구소의 인적 구성과 회원의 수, 복제의 방법과 그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볼 때 실령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저작권법상의 합저작물인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출판한 것으로서 이는 부정출판공연의 죄에 해당한다.

2. 개사곡 모음집을 펴낸 것이 저작권법 위반행위인가

1) 문제 제기

(1) 개사곡이란 무엇인가?

흔히 노래의 매체적 장점으로 기동성과 집단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노래의 매체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것이 1980년대에 이루어진 노래운동이라 할 수 있다.⁴⁾ 그리고 1980년대에 접어들어 노래운동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은, 노래라는 문화적 기제가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해나가는 데 현실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이 공식적인 합의사항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⁵⁾

이와 같이 1980년대에 접어들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노래운동에서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노래가사 바꿔부르기(흔히 '노가바'로 약칭된다)라고 불리는 개사곡 유행현상이다. 여기서 개사곡이란 기존의 대중가요와 같은 잘 알려진 노래를 곡은 그대로 두고 가사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⁶⁾

(2) 왜 개사곡이 법적으로 문제되었는가?

암담한 1980년대의 상황 속에서 “출판도 연극도 미술도 금지되고 막혀버릴 때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매체는 노래”라는 인식이 싹트면서 노래는 이른바 문화유격전의 선도적 매체로 간주되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노래가 가진 기동성과 집단성이 노래의 매체적 강점으로 강조되었다.⁷⁾

즉 출판행위나 연극 또는 미술활동이 이른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문화,

4) 김창남, 『삶의 문화, 희망의 노래』, 한울, 1991, 100~101쪽

5) 문승현, 「노래운동의 몇 가지 문제들」,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97쪽

6) 개사곡의 유형은 ① 기존 가사의 부정적 차용 ② 기존 가사의 긍정적 차용 ③ 기존 가사와의 단절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상세한 것은 이영미, 「개사곡에 대하여」, 『공동체문화』, 제3집, 공동체, 1986, 207~227쪽). 한편 문화평론가 김창남은 위의 세 가지 유형 중 ①·②의 유형이 1980년대 대학가 노래문화에서 유행한 이른바 '노가바' 내지 '개사곡'이고, ③의 유형은 1970년대 노동현장 등에서 널리 불리던 '현장가요'라고 한다. 그리고 '현장가요'의 한 예로서 허병섭 목사가 채록하여 펴낸 『노동과 노래』에 실린 〈풍당풍당〉이라는 동요의 개사곡을 소개하고 있다(김창남, 앞의 책, 136~138쪽 참조).

7) 김창남, 앞의 책, 133쪽

출판, 방송 등을 규제하는 각종 악법에 의하여 금압될 때,⁸⁾ 기동성과 집단성이라는 매체적 강점을 발휘하면서 서슬퍼런(?) 악법의 틈을 헤집고, 운동의 대중성 확보라는 지상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현실적 무기로서 우뚝 선 것이 바로 '노래'인 것이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집회나 시위를 벌이지 않는 한, 노래 가사에서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술한 악법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노래'였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이 쳐놓은 악법의 범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노래 자체를 걸고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여기서 공안당국이 고심(?) 끝에 찾아낸 법적 도구가 바로 '저작권법'이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노래운동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던 개사곡인 것이다.⁹⁾

(3) 개사곡을 위한 법논리의 모색

제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허병섭 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당시 『한겨레신문』에는 이 무죄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실형에서 무죄로의 전환이 무슨 법이론적 해석의 차이이기보다는 역시 '세월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무죄이유란 것이 영 석연치 않다. ……여기에서는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격에 관한 인식은 조금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 배포의 양이 문제일 뿐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자체는 여전히 잠재적인 범죄행위로 남아있는 것이다. 저작권의 개념이나 법률적 원리 같은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노래가사 바꿔부르기가 어떤 의미에서건 절대로 『범죄적』인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딕은 인용자).¹⁰⁾

8)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연극, 미술활동의 탄압사태에 대해서는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국가보안법적용사』, 역사비평사, 1992, 181쪽 이하

9) 한승현 변호사는 허목사 사건이 경찰수사단계에서 1차 훈방되었다가 재조사되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골레가 씌워지기까지의 진상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은 정치적 탄압을 위한 흉계로서 꾸며졌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한국음반저작권협회의 고소를 유도하여 사적인 저작권분쟁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엉뚱한 죄명이 씌워졌다고 지적한다(한승현, 「울어라 열풍아와 노가바」, 『한겨레신문』, 1989년 2월 23일자).

10) 김창남,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한겨레신문』, 1988년 10월 19일자

그 후 역행하는 세월의 변화 탓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위에서 인용한 글에서의 우려대로 우리의 현명한(?) 대법원은 배포의 양을 문제삼아 '잠재적인 범죄행위'를 현실화시키고 말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대법원이 "노래가 사 바뀌부르기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격"에 관하여 눈을 감아버렸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성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개사곡이 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암울한 정치, 경제현실에 대한 폭로, 야유 그리고 풍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야유와 풍자는 예술상의 한 기법인 '패러디(parody)'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하는 것을 보통 도작(盜作) 또는 표절이라 한다.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패러디적 사용도 과연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할 것인가?

이하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의 이론' 속으로 뛰어들어가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사유 중의 하나로 취급할 수 있는 '패러디'에 관한 법리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하나의 태양(態樣)으로서의 '패러디'

(1) 패러디란 무엇인가?

순수한 문학작품 또는 문학장르의 내용이나 양식을 모작하되, 그 형식이나 양식과 내용 사이의 익살스러운 불균형으로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벌레스크(burlesque 해학, 희작(戲作))라 한다. 보통 이것은 풍자(satire)의 한 형식이다.¹¹⁾

풍자의 형식은 벌레스크, 패러디, 희화(戲化; travesty)로 분류할 수 있는데,¹²⁾ 이 세 용어는 때때로 같은 뜻으로 바뀌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한다. 즉, 벌레스크는 종(種)의 명칭으로 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벌레스크의 종류를 분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¹³⁾

11) M.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4th edition, 1981(최상규 옮김,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1, 27쪽)

12) Arthur polland, *Satire*, Methuen & Co Ltd., 1970(송낙헌 옮김, 『풍자』, 문학비평총서 8, 서울대출판부, 1978, 32쪽 참조)

패러디란 유명한 원작품을 풍자적으로 비평하거나 익살스럽게 하기 위하여 문체, 어구 등을 흉내내어 그 원작품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만든 작품을 말한다. 음악에서 곡조는 같고 가사만 바꾼 노래, 즉 개사곡의 경우도 패러디에 속하는 것이다.¹⁴⁾ 한마디로 요약하면 패러디란 '풍자적 개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패러디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논구하는 경우 패러디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조건은 패러디화된 원저작물의 존재이다. 이러한 원저작물에는 언어 저작물(광의의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의 저작물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둘째, 특정한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의 존재가 패러디 성립의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그 이용방법이 원저작물을 풍자적으로 비꼬아서 익살스럽게 또는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패러디의 목표는 원저작물이 표상하고 있는 사상, 감정 등을 풍자적으로 비판, 야유하는 것이지 원저작자의 작품, 문체, 사상 일반을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넷째, 그 대상이 되는 원저작물이 공표되어 있고, 가급적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패러디의 독자, 시청자인 대중은 패러디를 대하게 될 때 원저작물을 상기하게 되고 원저작물과 패러디와의 상이점을 깨닫게 됨으로써 비로소 감상(鑑賞)상의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섯째, 패러디는 원저작물에 의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저작물이 갖는 창작성과는 다른 창작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¹⁵⁾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이 패러디의 성립조건으로서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2) 각국의 입법례

미국에서는 패러디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공

13) 최상규 옮김, 앞의 책, 27쪽. 패러디는 고급 벌레스크에 속하고 희화는 저급 벌레스크에 속한다고 한다(위의 책, 28~30쪽 참조).

1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용어해설』, 1988, 289쪽 참조

15) 美作太郎, 『패러디와 저작권』, 『저작권과 출판권』, 일본 에디터스쿨출판부, 1981, 36~40쪽 참조. 이하 일본인 이름의 우리말 표기는 교육부 고시 「국어어문규정집」의 예에 따랐음을 밝혀둔다.

정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상 다루고 있다.¹⁶⁾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이라 함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을 일컫는다. 1976년 10월에 성립하고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신저작권법은 제106조에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든 다음 제107조에서 공정사용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다.¹⁷⁾ 이것은 미국 법원이 1841년 이래 약 150년간 판례이론으로 형성해온 '공정사용의 법리'를 조문화한 것(to restate the judicially evolved doctrine)이다. 즉 이것은 판례이론을 입법으로써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지 결코 판례이론을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¹⁸⁾

제107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공정사용」이라는 제목하에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① 이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사용의 목적 및 성질 ②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③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와의 관계에서 사용된 부분의 양 및 실질성 ④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주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설은 제107조에 의하여 명시된 네 가지 기준 이외에 적어도 두 가지 기준이 공정사용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저작물 이용자의 의도와 동기(the intent and motives)'이고 나머지 하나가 미국의 제1차 수정헌법(First Amendment)상의 '표현의 자유'이다.¹⁹⁾

독일(구서독)의 경우에도 패러디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다만 학설판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패러디를 자유이용(freie Benutzung) 또는 개작(Bearbeitung)의 문제로 파악하여 해결하였다.²⁰⁾ 즉 판례는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패러디는 패러디화된 모델을 '자유이용'함에 있어서 '독립된(selbständig)' 작품으로서 창조된 경우에

16) A.R. Miller & M.H. Davis, *Intellectual Property*, West Publishing Co., 1983., pp. 354~356 참조

17)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의 법리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박익환, 「미국저작권법상 FAIR USE DOCTRINE에 관한 소고」,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참조

18) H.G. Henn, *Copyright Law*, Practising Law Institute, 1988, pp. 179~181

19) A.R. Miller & M.H. Davis, op. cit., p. 344

20) 美作太郎, 앞의 책, 41쪽

만 허용된다"²¹⁾고 판시하고 있고, 학설은 "자유이용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된 작품의 특징이 퇴색되어(verblasen) 새로운 창작물 속에 이미 본질적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인정될 만큼, 창작의 독립성이 강하게 드러날 때 정당화된다"²²⁾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학설은 패러디를 반(反)테마적 수법이라 하면서, 이에 대한 통일적인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자유이용이 인정되는가의 여부는 새로운 작품의 독자성 및 그 독립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²³⁾ 또 작품의 목적에 중점을 두어 원작품과는 다른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독립된 신규(新規)의 작품이 창작된 때, 자유이용이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²⁴⁾

이에 반하여 프랑스에서는 패러디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프랑스의 1957년 저작권법 제41조는 "저작물의 사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호는 "풍자적 개작(parodie), 모사화(模寫畫; pastiche), 만화(漫畵; caricature), 다만 해당 장르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르의 규칙(lois du genre)'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는 그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²⁶⁾ 견해에 따라서는 "이것은 악의 또는 중상모략할 의도로 행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지만,²⁷⁾ 결국 구체적 사안별로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구저작권법의 경우는 물론이고 1986년 12월 31일 전문개정된 신저작권법의 경우에도 프랑스법에서 볼 수 있는 패러디에 관한 명문규정이나 미국 및 구서독의 예에서와 같이 직접, 간접적

21) B rmeiner E. Nikel v. Walt Disney Productions 사건에 관한 BGH, GRUR 1971, S. 589 참조

22) E. Ulmer, *Urheber-und Verlagsrecht*, 2. Aufl., S. 110

23) a.a.O., S. 224

24) Bussmann-Pietzcker-Kleine,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3. Aufl., S. 353. 이상 주 21)에서 주 24)까지는 染野啓子, 「패러디보호의 현대적 과제와 이론형성」, 『법률시보』, 1983. 7. 39쪽에서 재인용

25) 한국저작권법학회, 『저작권관계연구자료』 제1집, 1986, 35~36쪽 참조

26) 美作太郎, 앞의 책, 41쪽

27) H. Desbois, *Le droit d'auteur en France*, p. 290(染野啓子, 앞 논문, 39쪽의 주 20에서 재인용)

으로 패러디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일본 저작권법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일본의 판례나 학설은 패러디를 인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제2차적 저작물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3) 각국의 개사곡 관련 판례

미국의 판례 미국의 유명한 풍자잡지 매드 매거진(Mad Magazine)은 창간 4주년 특집호에 홀리건 유행가 가사를 풍자적으로 개작한 다수의 개사곡을 게재하였다. 각 개사곡의 제목 밑에는 예컨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유행가인 〈The Last Time I saw Paris〉를 〈The First Time I saw Maris〉로 제목을 바꿔줌으로써 지정된 유행가의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일러주고, 그 개사곡이 풍자하고자 하는 현대의 일상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시하는 문구도 적어놓았다. 그러나 유행가의 원래의 가사와 악보는 신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Irving Berlin)는 위 잡지발행 회사(E.C. Publication, In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저작물은 원고의 저작물과 같지 않으며, 나아가 양 저작물간에는 경쟁관계가 없고 피고는 패러디 작품을 원고의 저작물인 것처럼 오인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인 제2 순회법원(The Second Circuit)은, 이 사건 패러디는 원저작물에 대한 본질적 부분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패러디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패러디가 원작의 수요를 충족시킬 의도나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패러디스트가 풍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상기(想起)'시키는 데 필요한(necessary to 'recall or conjure up' the object of his satire) 양을 초과하여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²⁸⁾

그리고 법원은 위에서 말한 "본질적 부분의 이용"이란 융통성없이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아니라 그 이용이 합리적인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8) Berlin v. E.C. Publications, Inc., 329 F. 2d 541(2d Cir), cert. denied, 379 U.S. 822(1964)(W. F. Patry, *The Fair Use Privilege in Copyright Law*,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Inc., 1985, pp. 160~161에서 재인용)

설정된 상대적인 판단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⁹⁾

또다른 개사곡 관련사건으로는, 미국의 NBC 방송국이 "Saturday Night Live"란 텔레비전 프로에서, 시(市) 재정의 파산위기 속에서도 시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만 급급하는 뉴욕시를 비꼬는 풍자극을 방영하였는데, 극(劇) 중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문제된 풍자극에서도 개사곡이 활용되었는데, 앞의 사건(Berlin 케이스)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소돔시의 지도자로 분장한 배우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I Love New York〉이란 노래를 개작한 〈I Love Sodom〉을 직접 불렀다.

법원은, 앞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패러디는 원작에 대한 본질적 부분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³⁰⁾

독일(구서독)의 판례(BGH GRUR 1958.,S.402 ; Lili Marleen 사건)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한스 레이프(Hans Leip, 1893~?)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사(歌詞) 〈Lili Marleen〉을 작사하여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1954년 어느 출판사가 이 작품을 풍자적으로 비꼬아서 〈마르레니여, 잘 있거라〉라는 제목의 행진곡을 발표하였다. 원작 〈리리 마르레니〉를 펴낸 출판사는 이미 출판한 원가사를 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행진곡을 출판한 출판사를 제소하였다.

피고 출판사는 문제된 〈마르레니여, 잘 있거라〉는 시세의 변천에 따라 군비, 군비금지, 재군비로 변화해가는 이 세상을 풍자하는 패러디로서, 원작과는 비슷하지도 관계도 없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재판소는 "쌍방의 작품을 비교 검토한바, 표현의 방법, 내용이 주는 인상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피고가 출판한 행진곡(패러디)은 원작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덧붙여 "신작(新作)의 후렴은

29) Id. at 545. A.R. Miller & M.H. Davis, op. cit., p. 355에서 재인용

30) *Elsmere Music, Inc., v. National Broadcasting Co.*, 482 F. Supp. 741(S.D. N.Y. 1980), aff'd, 623 F. 2d 252(2d Cir, 1980)(W.F. Patry, op. cit., pp. 163~165에서 재인용), 김문환, 「미국저작권법 개관」, 『미국법 연구』 1, 국민대 출판부, 1988, 302쪽 참조

정말로 <리리 마르렌>의 형상과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작이 갖고 있는 사상·기분의 내용을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패러디화·풍자화의 방법으로 이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³¹⁾

프랑스의 판례 개사곡과 관련한 첫번째 사건은, 프랑스 저작권법상에 전술한 바 있는 패러디 조항이 규정되기 훨씬 이전인 1934년에 발생하였다. 당시 A라는 출판사가 출판한 『상송』 2절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의 투우사의 노래를 패러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비제의 저작권 계승자인 B출판사가 A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파리의 상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결을 하였다. 즉, “문제의 상송 <짚으로 만든 침상(寢床)>을 제작할 때 작자는 원작을 이용함에 있어서 영리적 의도를 갖고서 행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작에 손해를 주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어구, 하모니, 리듬은 원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작자는 『카르멘』의 구절을 알고 있는 자에게만 패러디의 효과를 환기시키려고 의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청구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저작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³²⁾

최근의 사건으로는 샤를르 트레네(Charles Trenet)가 작사, 작곡한 노래 <부드러운 프랑스(Douce France)>를 베르나 마비오가 <부드러운 공포(Douce Trances)>라는 노래로 풍자적으로 개작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하여 샤를르 트레네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살라베르 출판사는, 위의 풍자적 개작이 <부드러운 프랑스>의 불법적 변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개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에르 르뤼옹, 베르나 마비오, WEA 필리파키 음악협회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판결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과 제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부드러운 공포>가 1957년 3월 11일 법률 제41조 4호에 의해 규율되는 풍자적 개작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개작화된 노래작품은 즉시 고유한 작품으로 인정되고 한편 가사(歌詞)만의 변형은 전체적인 작품의 변형을 이루는 데 충분하여 어떠한 혼동도 피하는 데 충분하다. 또한 그 노래작가나 모방자가 경우에 따라서 모방된 사람의 결점을 비웃는 것도 금지되

31) 美作太郎, 앞의 책, 53~54쪽

32) 위의 책, 54~55쪽

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³³⁾

(4) 우리나라 저작권법 해석상 패러디의 위치

전술한 바와 같이 구저작권법이나 신저작권법은 프랑스법에서 볼 수 있는 패러디에 관한 명문규정이거나 미국 및 구서독의 예에서와 같이 직접, 간접적으로 패러디 문제를 포섭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신·구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패러디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나 뚜렷한 학설 전개는 눈에 띄지 않는다. 패러디문제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는 일본 저작권법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소위 ‘몽타주 사진’ 사건에 관한 일련의 판결³⁴⁾을 둘러싸고 저작권법상 패러디문제가 법학계 및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술한 연구논문과 판례평석도 발견된다.³⁵⁾

이하에서는 패러디문제에 대해 일본의 판례와 학설이 전개한 해석론을, 우리나라의 신·구저작권법 해당조문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패러디를 인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이 허용된다고 보거나(구법 제64조 1항 2호, 5호; 신법 제25조) 아니면 패러디를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으로 보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구법 제5조 1항; 신법 제21조)고 볼 수 있겠다. 같은 패러디라고 하더라도 문학, 음악, 미술 등 해당하는 각각의 장르에 따라 저작권법상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개사곡에서부터 문학작품의 패러디 또는 회화나 영상작품의 패러디 나아가 장르를 변경하여 시도하는 패러디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기법 여하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어떠한 패러디를 단순한 인용의 범주 내에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러디란 원저작물의 일부를 그대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에 변경을 가한다는 점에서 인용의 경우

3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2)』, 저작권관계자료집 5, 1989, 181~183쪽

34) 제1심 도쿄지방법판소 1972년 11월 20일(『판례시보』 제689호, 58쪽); 항소심 도쿄고등재판소 1976년 5월 19일(『판례시보』 제815호, 20쪽); 상고심 최고재판소 1980년 3월 28일 민집 34권, 244쪽

35) 대표적인 논자로는 半田正夫, 『패러디=몽타주 사진 사건』, 『매스컴 판례백선』(제2판), 유비각, 1985, 182~183쪽 참조

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인용에서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요약 등에 의하여 인용할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의도가 곡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 인용에 따른 공정한 관행이라고 해석되고 있는데, 패러디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가 드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³⁶⁾

한편, 패러디를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만이 패러디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진지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희화화(戲畵化)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희화화하도록 허락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따라서 패러디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한 합법적인 패러디 창작의 길이 봉쇄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³⁷⁾

그러나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신·구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 특히 '인용'의 법리에 의하여 파악하는 경우 — 패러디적 이용이 '저작권 제한사유'의 하나로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³⁸⁾ 정작 심각한 문제는 '진지한 해석론'을 펼치려고 노력조차 않는 우리나라 법담당자들의 복무자세에 있는 것이 아닐까?³⁹⁾

36) 광경직,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46쪽 참조

37) 위 논문, 46~47쪽

38) 필자의 주장과 같이 '인용'의 법리에 의하여 패러디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 통상의 패러디적 사용은 그 양(量)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용의 '정당한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다. 확실히 '인용'의 전통적인 개념에 의할 경우, 인용하는 양의 많고 적음은 '정당한 인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러디의 성립조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원저작물을 패러디의 작성에 이용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패러디 작품을 접할 때 원저작물을 상기하게 되고, 원저작물과 패러디와의 상이점을 깨닫게 됨으로써, 비로소 감상상(鑑賞上)의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즉 원저작물을 상기시키는 데 필요한 양만큼 원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패러디의宿命적 전제인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다소 확대시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해 패러디적 '인용'에 관한 한, 원저작물을 상기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9) 법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정태욱, 「법 획득의 의의와 법담당자들의 과제」, 『민주법학』 5, 한울, 1992, 10쪽 이하

3. 대법원의 사건 판결 검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본질적 문제점은 동요나 유행가의 가사를 풍자적으로 개작한 '개사곡'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허병섭 목사를 저작권법 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판결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허목사가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락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사(轉寫)하였으며, 그 결과로써 원곡의 악곡 전부와 가사를 그대로 편집하였으니, 이는 결국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즉 이 사건 개사곡 문제, 다시 말해 '패러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허목사가 개사곡 모음집을 만들면서 원곡의 악곡과 가사를 그대로 베꼈으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교육운동의 전개방향에 대한 연구자료로 삼고자 허목사가 관심을 갖고 수집, 정리한 것은 노동현실을 풍자하는 60여 곡의 '개사곡' 뿐이었고, 연구목적으로 노래모음집을 발행한 것도 오로지 '개사곡'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허목사에게 원곡의 악곡과 가사 자체(예컨대 <전우가 남긴 한마디>, <풍당풍당> 등)는 애시당초 관심 밖이었다.

따라서 개사곡을 수집·정리하게 된 연구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대법원 판결이 문제삼고 있는 허목사의 원곡의 악보(=악곡+가사)에 대한 전사 행위는 '개사곡'과 원곡 가사와의 대비를 통하여, 그것이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설명자료로써 부수적으로 활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원곡의 악보를 전사한 허목사의 행위는 구저작권법상 '비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주된 저작물인 '개사곡'을 원곡의 가락에 맞추어 노래부르는 방법을 지시하기 위한 설명자료로 삼기 위해 종된 저작물인 악보(=악곡+가사)를 삽입한 것으로서, 이는 구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 원곡의 가사는 사회일반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개사곡과의 극명한 대비를 통하여 그것이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원곡의 가사를 인용한 것이므로 위 같은 항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구저작권법의 해석상 — 특히 '인용'의 법리

에 의하여 —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패러디문제를 도외시한 채, 원곡의 악보 전사행위에만 집착하여 형식논리로만 일관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우리 헌법이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헌법 제9조 참조), 패러디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창작의 자유, 비평의 자유, 표현의 자유⁴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나아가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반(反)문화적 판결로서 그 오명을 길이 남기게 되었다.⁴¹⁾ [변호사]

40)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할 것인가하는 점에 대하여는 미국의 P. Goldstein 교수와 M. Nimmer 교수가 1970년 발표한 두 개의 논문을 계기로 미국의 법원과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형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저작권의 상충과 조정」, 『헌법논총』 제2집, 헌법재판소, 1991, 279~320쪽 참조

41)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굳이 찾는다면 자본주의 법질서에 내포되어 있는 '법의 계급성'이라는 속마음을 가장 교묘하고 '구체적인 실례'로서 드러내보였다는 점이 아닐까? 참고로 '법의 계급성'에 대해 구체적인 실례가 아닌 법본질론적 측면에서 논구한 것으로는 沼田 稻次郎, 「법의 계급성」, 조국 편역, 『실천법학 입문』, 학민사, 1991, 29쪽 이하

‘기독교와 민족통일의 전망’ 강연으로 구속되고 나서

박 순 경

1. 시작하는 말

민변 기관지 창간호에 한 편의 글을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보안법 위반 피고로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재판의 민족사적인 변증법적 의의, 재판의 구조와 형식문제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간략하게 말해보려고 한다. 민족사의 변증법이란 단적으로 말하자면 분단체제세력과 이에 대립하는 민족적 양심의 소리와 의 갈등관계를 의미한다. 역사사회에서 정립된 기존의 것이 이에 반립하는 비판투쟁세력에 부딪쳐서 변혁되지 않으면 역사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모든 보안법 위반 재판은 그러한 민족사적 변증법이 벌어지는 사건의 단면들이라고 나는 늘 생각해왔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감방에서 첫 재판을 위한 모두진술을 쓰면서, 판·검·변이라는 법관들과 피고·방청객이 만나는 장면이 민족사의 변증법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과 세계가 만나는 변증법적 관계에 비유될 수 있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2. 피고인석에 서기까지의 경위

나는 1991년 8월 9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옥인동 보안1과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다가 12일 구속되었고, 13~29일간 종로서유치장에 갇혀있으면서 계속 보안1과에서 수사받았다. 수사받을 일이 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 만기인 20일을 채우느라고, 불결하기 짝이 없고 짐통 같은 유치장에서 18일간 지내는 사이에 내 노력의 건강은 결정적으로 악화되어버렸다.

내가 구속된 것은 1991년 7월 9~12일 동안 제일대한국교회 주최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동경회의”에서 발표한 「기독교와 민족통일의 전망」이라는 나의 주제강연이 주체사상 찬양이라는, 참석자 반공목사들간의 논란과 검찰에서의 증언, 안기부요원들과 언론보도에 의해서 발단되었다. 그러한 논란과 보도는 물론 신학에 대한 무지와 분단·냉전체제 논리에서 비롯된 곡해이다. 1990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를 위시해서 1991년 1월 23일 구성된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에 관계했던 활동이 그 강연의 구속조건 강화를 위하여 반년 이상이나 지난 다음 뒤늦게 들춰내어진 것이다.

경찰수사 20일을 채우고 나는 1991년 8월 29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었다. 검찰수사는 동경강연에 집중되었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설명과 해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나는 검사실에 혼자 앉아서 설명·해명 진술서를 쓰고 또 쓰고, 쓰다 지치면 그만두고, 대체로 30일 수사 만기는 그렇게 채워졌다. 기력도 건디기 어려웠지만 귀한 날들이 그렇게 박탈당하는 데 대한 울분이 한번 폭발하고 만 적이 있다.

내가 구속되자 강철선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했으나 추진되지 않았으니, 추측컨대 안기부와 검찰이 나를 무겁게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인 듯하다. 검찰수사기간 변호인단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역시 허락되지 않았다. 보안법 위반 피의자에게는 구속적부심도 보석도 통용되지 않는다는데, 악법이라서 그렇게 철통 같은 것인가 싶다.

검찰에서 나는, 동경강연은 주체사상을 하나님 혹은 신학에 관련시켜 재해석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길을 열어놓고 그것을 상대화시켰으니, 이것은 결코 주체사상 찬양이라고 규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선교신학적 시도임을 거듭 진술했다. 또 19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범민련준비위에 대한 합법성을 진술하여 제출했다. 즉 그해의 범민족대회는 그 직전 7월 20

일 노대통령의 “한민족대교류”라는 담화발표로 정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공인되었다는 사실과, 1991년 1월 23일 구성된 범민련준비위는 그 대회의 상설기구화이므로 합법적이라는 것, 그리고 구성 당시 이적단체라고 정부가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게다가 나는 대전 목원대 출강과 수다한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지도, 해외학술회의 참가와 강연, 집필 등 과중한 일거리와 건강문제로 범민련준비위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기는 했으나 그 구성이나 활동에 거의 참가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공식 합법화되었던 1990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 전 이외에는 내 객관적인 사실진술을 모두 도외시해버리고, 동경강연은 주체사상을 찬양한 것이고, 범민련준비위라는 이적단체 조직과 활동에 참가했음으로써 북한의 대남적화선전·선동활동에 동조하고 남한정부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나를 고발했다. 검찰은 동경강연에서 발표한 나의 선교신학을 전혀 몰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범민련준비위에 대한 합법성 주장과 나 자신의 객관적 상황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를 구속했으니 보안법 위반으로 얹어매어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보안법 위반의 경우에는 양심수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공안정국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정평이 세삼 회상되었다. 그러한 사법처리란 주어진 특정한 정권에 종사하는 것이지 민주적 법의 처리가 아니다. 공안정치는 민주헌법이라는 이름 아래서 노신학자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다. 1991년 9월 27일 나는 (구)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 제7조 제3항, 제1항, 제14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라는 조항들에 묶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에 회부되었다.

제1심 재판은 1991년 11월 1일, 8월, 22일에 열렸으며, 11월 8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라는 구형이 내려졌고, 11월 22일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일단 석방되었다. 내가 106일 만에 석방된 것은 내 구속을 비난하는 국내외 여론과 항의서명·탄원서들의 덕택인 듯하다. 그때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내 건강은 위태롭게 되었을 것이다. 1992년 7월 13일과 9월 21일 항소심재판이 있었고 10월 26일 선고재판은 원심으로라는 선고를 내렸다. 사람들은 내게 상고하고 또 동경강연에 관해서는 국제사법부에 제소하고, 끝까지 투쟁하라고 권고한다. 그렇다. 동경강연문제는 국제사법계와 세계신학계에 호소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내 정신과 시간의 소모를 고려해서 주저했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동경강연의 요지는

확대되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바라는 바이다.

3. 분단냉전체제의 재판 : 민족사의 변증법

법정에 선다는 일이 어찌 내 평생에 일어날 수 있는가. 꿈결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건이다. 나는 불안했고 거듭 용기를 가다듬어야만 했다. 그것은 공안정치의 커다란 실책에서 빚어진 사건이고, 분단된 민족사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또한 하늘의 섭리가 역사한다고 생각되었다. 나는 하늘의 섭리라는 신앙과 민족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진술을 썼으며 재판의 날을 기다리기까지 했다.

1) 대법정 417호, 통일신학의 강연장(1991년 11월 1일)

불안감과 기쁨이 엇갈리는 감정을 누르고 법정에서 방청객의 애정 어린 환호성을 들었을 때 나는 먼저 그들 앞에서 큰절하고 울고 싶었다. 변호인석의 백승헌, 홍성우, 강철선, 한승헌 변호사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한승헌 변호사까지 합석한 변호인석은 화려하게 보였다. 나는 당연히 법정을 내 통일신학 강연장으로 생각했고 방청객도 우울한 수의복 차림의 노신학자의 강연을 기대하고 있었다. 내 평생에 그렇게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강연장, 민족사의 드라마, 민족사의 무대가 주어질 수 있다니! 그 모든 장면은 실로 내게 분에 넘치는 은혜로운 것이다. 어느 틈에 나는 흐트러진 머리와 수의복 차림의 초췌한 몰골에 대한 자격지심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강연으로서 준비한 모두진술을 다 읽자면 세 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요약해서 1시간 45분 동안 진술했다. 진술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동경강연 직후부터 가장 많이 곡해되었던 수령론의 신학적 재해석에 대한 재설명이다. 여기서 요약해 말하자면,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불가결한 요소이니, 수령은 바로 인민주체들의 사회성을 성립시키는 통일적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체사상은 수령통치자의 이데올로기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비판되기도 하나, 수령의 존재 이유는 그가 오로지 인민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의 통치권력은 인민집단에게로 돌려질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수령의 유일성과 독재는 궁극적인 혁명이념에 직결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공산당독재이념과 동일하다. 공산당독재가 상대적인 역사의 과정에서 성립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당독재가 문제화되고 해체되었다고 해도, 궁극적인 혁명이념과 과업이 일단 설정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독재는 불가피하다는 논리적 근거에서 나는 수령의 유일성과 독재의 사상적 유래를 설명했다.

이것이 수령찬양이라는 안기부와 검찰의 단정은 분단·냉전체제라는 틀 속에 갇힌, 그래서 어떤 사상이든 그 사상에 접근 분석하는 학문적 자유와 방법을 몰각하는 신경과민이다. 수령론에 대한 내 신학적인 재해석의 요지는 수령의 주체성 개념이 성서적인 하나님 신앙에 접근한다는 통찰에 근거해 있다. 즉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인류의 궁극적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하나님나라의 도래(到來)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내에서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役事)하심에 대한 성서적 신앙이 하나님의 주체되심을 기독교 신앙은 고백한다. 독재자 수령의 유일성은, 이것이 궁극적인 역사혁명이라는 이념에 관계해서 필연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인간은 유한하고 혁명이념도 유한하며 그 독재성 혹은 유일성은 유한한 인간, 오류를 행할 수 있는 인간 이상이며, 궁극적인 수령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므로 하나님에게로 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수령론 재해석의 요지이다. 양도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계해서 수령·주체사상이 상대화된다는 것, 수령의 유일성과 독재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또 한다고 해도 절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수령론을 재해석함으로써 나는 주체사상이 하나님을 고려할 수 있는 길, 즉 선교의 물꼬를 열어놓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선교신학적 시도가 수령·주체사상 찬양이라고 곡해되어 종교재판을 연출했다는 것은 공안정치의 큰 오류이다.

방청객은 대단히 고요하게 내 진술을 듣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그렇게 엄숙한 강연장을 목도한 적이 없었다. 차후에 들으니, 검사와 판사의 심문과 내 대답에 의하여 방청객은 내 강연요지를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기독교계 방청객은 동경강연을 읽으면서 내가 지나치게 주체사상 편으로 돌아버리지 않았나하는 기우와 불안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내 진술을 듣고 의구심을 풀었다고도 하며, 내 진술이 은혜로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반기독교계 통일인사들은 동경강연을 읽고 또 내 진술을 듣고, 기독교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기뻐했다. 홍성우 변호사는 처음 구치소에 찾아왔을

때 왜 그런 강연을 했느냐고 말했는데, 첫 재판 다음날 찾아와서 “내가 박선생님의 강연을 그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하고 말을 끝맺지 않았다. 이번에 감명깊게 또 들었다는 뜻임에 틀림없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므로 내 신학적 설명을 관심있게 들은 것이다.

재판부는 그날의 재판을 검사의 구형과 내 최후진술까지 진행시키려고 했으나, 검사의 제동으로 재판은 두번째 휴정 다음에 더 진척되지 않았다. 1991년 1월 23일 범민련준비위 구성을 위한 주요한 두 회의, 즉 1월 5일과 1월 10일 실무회의에 내가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위 부위원장단에 속한다는 것 때문인지 공소장에는 내가 그 두 회의에 참석했고 또 이적단체 조직에 가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점이 내 진술과 달랐으므로, 검사는 증거자료 채택을 판사에게 제의했고,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태는 분명히 검찰 수사기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의적인 오류인지 착오인지 판별할 수는 없다. 날 보석시키기 위하여 힘쓴다던, 그렇게도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던 검사에 대한 의심덩어리가 비로소 내 마음 속에 생겨났다. 그가 자신의 공소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든, 그것은 진실과 사실이 아니다. 아마도 이창복, 김희택, 권형택 등의 수사자료 중에서 어떤 것을 제출했을 것이다. 그러한 증거자료 제시가 사실에 근거했든 아니든 그것이 공안당국의 짜여진 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니, 검사는 공소장의 타당한 형식이나 갖추면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11월 8일 두번째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홍성우 변호사는 변론하기를 내가 구약성서의 예언자적 신앙에 입각해서 “역사의 전경”(Frontier, 이 표현은 내가 쓴 것이다)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증언하는 예언자적 신학자라고 했으니, 피고에 대하여 그보다 더한 찬사가 또 있을 수 있을까. 보안법과 재판에 대한 그보다 더 큰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두번째 자진출두하여 변론하기를, 보안법이 북한에 잦다왔다 하는 특수층에게 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정부수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재야 통일인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보안법 자체의 모순을 나타낸다고, 남북의 유엔가입,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남북총리회담 진행이 벌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적성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구형과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강

철선 변호사는 학술강연인 내 동경강연이 민주헌법상 구속조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강연의 구속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사법처리가 마무리되지 수개월이 지난 범민련준비위 관련문제를 뒤늦게 논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피고의 건강을 고려하여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변론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변론실무를 담당했으며, 첫 재판시 검사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담당했으며, 다음과 같은 변호인 전체의 변론요지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같다. 여기에서 그 변론요지를 요약하자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보안법의 대전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① 이승만정권의 적대적 북진통일정책 이외에는 한국헌법이 평화통일을 기초로 삼고 있다는 것(헌법 제4조), 이 평화통일 조항은 반국가단체라는 북한규정에 어긋난다는 것, ② 1970년 8·15경축사에서 발표한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평화통일 구상과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에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 ③ 1973년 남한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상호 내정불간섭, 호혜평등과 대화가 제안되었으니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 대전제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 ④ 노대통령은 1988년 7·7선언에서 남·북을 동반자관계·민족공동체로 보고, 교류·교역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으니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보안법의 기초가 부정되었다는 것, ⑤ 현정권이 1989년 9월 11일에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등을 제안했으니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 ⑥ 남·북이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가입했으니 국제법에 따라 주권평등의 원칙이 남·북에 공히 해당되며, 유엔 회원국은 유엔헌장 제4조에 따라 평화애호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북한은 국제법상 반국가단체라고 규정될 수 없게 된 셈이라는 것이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직후인 9월 27일 노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의 ‘형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을 ‘축하한다’고 말했으니, 북한은 더이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변론은 그와 같이 보안법의 기초 자체의 법적 불합당성을 철저히 지적한 다음, 현행 보안법 적용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위험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하려고 목적하지도 해치지도 않았으며, 범민련준비위 당사자들도 북한의 대남적화선전·선동활동에 동조한다거나 우리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리

고 피고는 동경강연에서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선교신학적 입장에서 민족화해와 북한이해를 위하여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더구나 피고는 북한을 이롭게 하고 남한을 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강연하지 않았으니, 피고의 건강악화를 고려하여 또 피고의 학문적 작업을 위하여 석방해줄 것을 호소했다. 위와 같은 변론요지는 내 모두진술 요지와 일치하며 그 변론은 완벽하다. 울음 섞인 내 최후진술은 방청객을 많이 울렸다고 한다. 69세의 노인학자에 대한 공안당국의 잔인하고 부도덕한 처사에 대한 억눌린 분노가 애절한 진술로 표현된 것이다. 또 항일민족운동과 민족분단의 상황에서 피홀리고 고통당해온 우리 근·현대사의 슬픔이 내 애절한 진술 속에 깃들여 있었다.

1991년 11월 22일 선고재판에서 나는 초조하게 선고를 기다렸다. 정호영 판사는 내 말을 인용하여, 즉 동경강연에서 피고는 주체사상을 신학에 관계해서 '상대화' 시켰다고 주장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지 않았다고 하나…… 범민련준비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으므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나는 2년 형집행을 정지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저것들이 나를 정말 죽이려는구나” 생각하고 피고석에서 일어설 줄을 몰랐다. 교도관들이 집행유예나 석방된다고 알려주어서 그제서야 나는 제정신이 들었다.

피고와 검사는 항소했다. 1992년 초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아 읽고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해야 했다. 그에 대해서는 내 애증이 엇갈리곤 했다. 그의 항소이유서는 범민련준비위가 북을 축으로 하는, 북의 대남적화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전위조직'이라면서, 피고는 준비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고 동경강연을 행함으로써 정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으므로, 원심선고 형량이 부족하며 3년 징역 3년 자격정지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검사가 항소한다면 어찌 달리 이유를 내세울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와 같이 철저하게 공안당국을 대변하는 그의 처사가 내 분노를 자아내곤 했다. 항소심은 7월 13일 열렸고, 9월 21일 항소심의 모두진술 겸 최후진술에서 나는 검사의 공소장·항소이유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제1심의 모두진술은 강연을 위주로 했으며, 공소장에 대하여 반론하면서도 방청객이—보통 보안법 위반 재판에서 방청객들이 검사를 미워하고 야유하듯이—내 담당 검사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는 어조를 쓰려고 노력했다. 검사에 대한 그러한 심정과 배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가 언젠가는 회개하고 민변 변호사로 바뀔지 모른다는 환상을 가졌으며, 또 “우리는 악연으로 만났으나 악연

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검사실에서 여러 번 토로한 적이 있었다. 내 심정과 환상은 허사였을까? 민족분단의 역사가 청산되는 날 그는 깨닫게 되리라. 항소심 선고재판은 10월 26일 있을 것이다. 9월 21일 백승헌 변호사는 내가 무죄임을 주장했으나, 공안당국의 지배 아래 있는 재판이 무죄를 선고할 리 만무하다.

보안법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란 정권유지를 위한 공안정국의 의도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자기변호적 진술이나 변호사의 변론이란 별실효없는 허식에 불가하다는 것을 나는 특히 항소심 재판들에서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진술과 변호사의 변론은 그러한 잘못된 법질서에 대항하는 증언들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항소심 재판들은 제 1심 재판들보다 훨씬 더 성의없는 허식으로 보였다.

2) 심판받은 자가 심판자로 바뀌는 재판¹⁾

민족분단냉전체제를 유지시키려는 보안법은 이 체제를 넘어서서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에 의한 통일과 새로운 민족사회 창출을 외치는 민족의 양심들을 심판하는 공안정치의 도구이나, 도리어 이들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이다. 민족분단의 멍에와 세계의 죄악을 짊어지고 10여 년, 20여 년, 30여 년, 40여 년을 철창 속에서 생존하는, 그러면서도 신념과 긍지를 간직해온 민족의 지는 눈물겹고 뼈아프다. 이들은 민족사와 세계에 대한 심판자들이다. 기존하는 세상과, 불의와 멍에를 짊어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새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예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바로 그의 죽으심에서 그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궁극적 심판자가 되신 것이다. 그가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의 승리와 새 나라의 주체를 의미한다. 나는 우리 현대사에서 변증법적 갈등과 고통, 분단체제와 이것을 넘어서려는 민족의 지의 반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래되는 고통을 그러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에 비추어보아왔다. 나는 서울구치소 감방에서 밤이면 밤마다 십자가를 눈앞에 떠올리고 울었다. 법정에서 재판받고 철창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긍지를

1) 이 표현은 20세기의 대신학자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V/1 §59, 2. Der Richter als der an unserer Stelle Gerichtete(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자로서의 심판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에 비유된다(IV/1, 231~311쪽).

가지는 민족양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민족사와 세계사에 대한 정의의식을 나타내며, 새로운 정의로운 민족사회와 새 세계에 대한 희망의 표시이요 변증법적 역사행진의 동력이다.

나는 감방에서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당당한 기개를 목격했다. 나이 어린 그들은 김밥, 슈크림을 먹고 싶어하고 커피를 생각하고 엄마생각에 시름지으면서도 아침투쟁 저녁투쟁 단식투쟁을 외쳐대곤 했다. 그들의 그 당당함과 자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보안법과 기존세력에 대한 변증법적 비판의 동력이다. 왜 청년들이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보안법의 타당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비록 철창에서 괴로워했으나, 늦게라도 모래알만큼이라도 우리 현대사의 고통의 반열에 삽입된 것을 하늘의 섭리라고 감사했으며, 법정에서의 내 강연을 민족사적 증언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는 법정에서 심판받았으나, 보안법-냉전체제라는 우리 현대사의 암초에 대한 심판자들이 된 것이다. 보안법의 탄압 아래 묵인 민족사의 심판자들을 변호하는 변론인들은 잘못된 법질서와 집행에 대한 심판자들이다.

4. 신학적으로 본 재판의 형식과 문제

나는 모두진술을 쓰면서, 사법부를 대표하는 판·검·변과 피고의 편에서는 변호사의 역할과 피고·방청자가 만나는 재판의 형식구조를 처음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재판 형식구조는 하나님과 세계 관계의 축소판이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법의 근원이며 역사의 궁극적인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의 공의(公義)가 바로 법의 근원이며, 그의 공의로운 법은 피조물 세계의 정의로운 질서를 기초하고 세계의 불의를 심판하고 세계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게 하는 동력이다.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이란 성서에서 보자면,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세계의 반립, 이러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반립과 심판, 이 심판을 증언하면서 새로운 미래의 구원 즉 정의로운 새 세계질서 창출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신앙이 역사변증법의 원형이다. 신약성서에서 보자면, 법의 근원이신 지엄한 심판자 하나님이 미천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역사에 오신다. 그가 바로 세계를 전적으로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다가 세상법정의 심판을 받고 죄인 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다.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법과

정의의 승리를 선포하는바 역사의 궁극적 미래이다.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받았다는 그의 죽으심의 사건 자체가 역사에 대한 심판이다. 예컨대 법이 신적인 근원을 가지나, 의로운 자, 새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자, 예수를 처형한 세계의 법으로서 왜곡되어버린 로마의 실정법은 그의 죽으심에서 악법으로 판정되어버린 것이다. 판·검·변의 법관들과 피고·방청자가 만나는 재판의 형식구조를 나는 심판자 하나님과 세계 혹은 예수와 로마세계의 관계에 비추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판·검·변이라는 법의 담당구역이 심판자 하나님·아들 예수 그리스도·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비유될 수 있으며 피고·방청자는 인간세계의 축소판이다. 판·검·변과 피고·방청자는 물론 다 인간세계를 대표하지만, 재판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역할기능에서 저러한 구별과 특정한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 재판 형식구조와 절차가 아주 흥미롭다. 높은 판사석도 판사의 가운도 존엄하게 보인다. 법의 심판자 판사는 입법자 하나님의 대행자요 형상이다. 판사입정시 모든 사람들의 기립형식도 좋다. 내가 죄수복 차림의 초췌한 꼴로 판사석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의 심정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다음 순간 왜 보안법 위반 재판사례에서 판사가 법의 존엄성을 상실하곤 하는지, 그 상황이 나를 슬프게 했다. 보안법은 분단·냉전체제 유지를 위한 정권의 도구이며, 통일의지를 억눌러온 반민주 악법이라는 것을, 그 법에 의한 희생자들과 법조계와 정치계 양심들이 증언해 온 바이다. 그러한 실정법 아래 매여있는 판사는 법의 자유와 신적 근원을 상실하고 만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법의 자유를 의미하며, 법의 자유는 근원적으로 자유한 정의로운 입법자 하나님을 가리킨다.²⁾ 사법부의 독립 즉 법의 자유와 존엄성을 상실한 법관은 그가 재판하는 민족양심들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된다.

법의 본래적 의미에서 판사가 창조자·입법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검사는 인간세계의 범죄를 노출시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역할에서 예언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될 수 있다. 범죄자에게는 검사가 원수이지만, 그는 법질서 보존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에서 법 정의의 담당자이

2)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이성비판 -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에서 혹은 『종교철학 *Die Religion*』에서 법의 자율성 혹은 도덕법을 양심의 자유에서부터 도출하며, 법의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자유한 입법자 하나님에 정초시킨다. 그의 그러한 도덕·법·종교철학의 연원은 구약성서의 창조자·입법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한다고 생각된다.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Logos) 혹은 하나님의 말씀(요한 복음 1장 14절)이라는 것은 세계의 질서를 함축한다. 전대미문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새 질서 하나님나라를 선포한 그는 결국 낡은 질서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이 그는 낡은 기존질서의 죄악의 멍에를 짊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 법이 잘못된 질서를 유지시키거나 잘못된 질서를 옹호한다면 그 본래적 자유와 공의를 상실하고 악법으로 되어버린다. 그러한 법 아래 매인 검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왜곡시켜버린다. 검사가 철저하게 법정신에 충실하고 철저하게 기존질서의 죄악을 밝혀내려면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기희생을 걸어야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벌어진다.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존질서에 반립하여 새로운 질서창출의 계기를 열어놓아야 한다. 이 경우에 그의 역할은 존엄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비유될 수 있다. 나는 검찰에서 쇠고랑·포승을 풀어주고 내게 친근하고 겸손한 검사를 대하면, 그가 내 고발자임을 잊게 하고 친구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가 법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내 막내아들뻘되는 아이라고 해도, 나는 그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고 최대한의 겸손한 어조를 사용했다. 옛날 임금의 모후가 자신의 어린 아들 왕에게 존어를 쓰는 장면을 연상하곤 했다. 첫 재판 모두진술에서 나는 검사를 친구라고 호칭했다. 말하자면 순간순간 그는 신적 친구의 형상으로 여겨졌다. 나는 그가 정치권력의 시너 보안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다. 그가 보안법에 철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했으나, 그에 대한 내 환상을 내버리지 못한다.

판·검·변은 동등하게 법을 대표하면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판사는 인간적 한계상 피고의 실제적 처지와 동떨어져 있고, 검사는 피고의 실제적 범죄를 밝혀내지만 인간적 한계상 법 적용에서 오류와 편견을 범할 수 있고, 변호사는 법을 잘 모르는 피고의 실제적 처지에 파고 들어가 법 적용의 문제를 밝히면서 변론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로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보안법 위반 재판에서는 피고를 변호함으로써, 변호사는 법의 양심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법의 변혁과 새 질서의 도래를 암시한다. 그와 같이 나는 죄된 세상의 법 아래서 피로워하는 피고를 위로하고 피고와 더불어 새 질서의 도래를 재촉하는 법관 변호사를 법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비유한 것이다. 성령은 인간역사 내에서 역사하시면서 인

간역사를 새롭게 하고 의로운 하나님나라의 도래로 이끄신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죄인을 정죄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죄인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허용하는데, 변호사의 역할이 이 계기에 비유된다. 보안법 위반 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판사와 검사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법질서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열어놓는다. 변호사의 이러한 역할은 보안법 위반자 피고가 심판자가 되는 역할전도의 법적 근거를 대변하는 역할이다. 민족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을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앙에서 이해한다.

판·검·변이 하나님의 법을 위시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에 비유된다면, 피고와 방청자는 세계의 축소형이다. 보안법 위반 재판의 경우 방청자는 피고의 지지세력이며, 피고와 방청자는 민족사 행진의 대열에서 있으며, 방청자는 잘못 행사되는 법에 대하여 눈망울을 부릅뜨고 귀를 곤두세우고 법관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이다. 흥분과 분노를 가늠하지 못하면, 방청자는 야유와 호통을 치다가 법정소란죄로 쇠고랑을 차기도 한다. 다행히 내 재판에서는 그러한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았다. 보안법 위반 재판은 참 이상한 구경거리이며 방청객들의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기이한 재판이 세상 어디에서 또 일어나겠는가?

나는 보안법 아래서 재판받음으로써 우리 현대사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민족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보안법 위반이라는 내 재판에 대한 이 해석적 기록이 다른 보안법 위반 재판 기록들과 함께 민족통일의 방향과 새로운 민족사회 창출을 위한 증언들로서 기억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전 목원대 대학원 초빙교수]